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

2022. 10.

정재호 · 노영예 · 박지우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

2022. 10.

정재호 · 노영예 · 박지우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노 영 예 선임연구원

박 지 우 선임연구원

목 차

I. 서론	1
II.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5
1. 개요	5
2.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	9
가. 중간재심사	9
나. 종료재심사	11
3. 중간 및 종료재심 관련 분쟁사례	13
가. 중간재심사 관련 분쟁사례	13
나. 종료재심사 관련 분쟁사례	16
III.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24
1. 우리나라	24
가. 개요	24
나. 중간재심사	29
다. 종료재심사	36
2. 미국	40
가. 개요	40
나. 상황변동재심사(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46
다. 연례재심사(Periodic Reviews)	50

라. 일몰재심사(Sunset Reviews)	56
3. 중국	72
가. 개요	72
나. 중간재심사	76
다. 종료재심사	83
4. EU	87
가. 개요	87
나. 중간재심사	92
다. 종료재심사	102
5. 인도	115
가. 개요	115
나. 중간재심사	118
다. 일몰재심사	126
IV. 결론	139
1. 무역구제 지원 강화	139
2. 중간재심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	143
3. 노동 및 환경 관련 재심사 규정의 보완	148
4. 미소마진에 대한 변칙적 관행 검토	150
참고문헌	152

표 목차

〈표 I-1〉 반덤핑관세 제소 및 피소국 순위	3
〈표 II-1〉 WTO 반덤핑협정 체계	6
〈표 II-2〉 WTO 반덤핑협정 제6조	8
〈표 II-3〉 WTO 반덤핑협정 제12조	9
〈표 III-1〉 우리나라 반덤핑재심사 관련 법령	24
〈표 III-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재심 관련 신설 조항	27
〈표 III-3〉 무역구제 예산안 내역(2021)	29
〈표 III-4〉 「관세법」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전문	30
〈표 III-5〉 중간재심사 일정(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사례)	34
〈표 III-6〉 종료재심사 일정(플로트 판유리 사례)	39
〈표 III-7〉 미 연방법(USC) 및 연방규정(CFR)상 반덤핑 재심 관련 법령 체계	41
〈표 III-8〉 ITC 인력 운용 현황	44
〈표 III-9〉 ITC 예산(2020-2022)	45
〈표 III-10〉 연례재심사 일정표	55
〈표 III-11〉 일몰재심사 유형과 특징	58
〈표 III-12〉 덤핑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정 기준	61
〈표 III-13〉 산업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정 기준	63
〈표 III-14〉 90일 재심사 일정표	65

〈표 III-15〉 신속재심사(Expedited Review) 일정표	66
〈표 III-16〉 정식재심사(Full Review) 일정표	68
〈표 III-17〉 미국의 반덤핑재심과 원심 비교	70
〈표 III-18〉 중국 반덤핑 관련 법령 연혁(1994~2019)	74
〈표 III-19〉 EU 반덤핑규정 체계	88
〈표 III-20〉 덤핑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요소	107
〈표 III-21〉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요소	110
〈표 III-22〉 인도 무역구제 관련법 체계	115
〈표 III-23〉 인도 반덤핑시행령 체계	116
〈표 III-24〉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평가를 위한 검토 지표	135
〈표 III-25〉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평가를 위한 검토 지표	136
〈표 IV-1〉 QV 질의서 제출 여부를 통해 본 중소기업의 재심 대응 현황	140
〈표 IV-2〉 우리나라 재심 현황(종결 건 기준, 2008~2021)	144
〈표 IV-3〉 미국 연례재심 덤핑률 변화(일진전기 변압기 고율관세 부과 사례)	146

그림 목차

[그림 III-1] ITC 운영실 조직도	43
[그림 III-2] 상황변동재심사 절차도	50
[그림 III-3] 중국 종료재심사 절차도	86
[그림 III-4] EU 중간재심사 절차도	101
[그림 III-5] EU 종료재심사 절차도	113
[그림 III-6] 인도 중간재심사 절차도	125
[그림 III-7] 인도 일몰재심사 절차도	138

I. 서론

- 선진국이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며 글로벌리즘이 쇠퇴하여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특히 경제 안보의 개념이 미국에 의해 수입정책에 도입되면서 각국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반덤핑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반덤핑협정)이 체결된 후 WTO 회원국들이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제도임
 - 해외 수출자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199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개시된 반덤핑조사 건수는 6,422건에 이를 정도로 (상계관세 조사 건수 644건,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 408건) WTO 체제하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반덤핑제도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¹⁾

- 그러나 WTO 협정의 특성상 모든 규정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1)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2021년 12월 겨울호(통권 제75호), p. 136, 2021. 12.

2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WTO 회원국들은 자의적인 해석을 적용하여 자국의 반덤핑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조에서는 반덤핑조치의 적법성 및 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적정한 운영을 보장할 목적에서 재심사(review) 규정을 두고 있음²⁾
 - 재심사의 경우 기존의 판정 후 상황이 변동되었거나 기존 조치가 종료되었을 시, 기간의 연장이나 조치 내용의 변경 또는 환급을 위하여 행하는 심사절차를 의미함
- 재심사는 중간재심사와 조치 부과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하는 종료재심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중간재심사와 종료재심사의 경우 산업피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본 보고서에서는 반덤핑협정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수출자재심사(제9.5조)와 관세평가재심사(제9.3조)는 제외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4조에서는 반덤핑 원심에 적용되는 제6조의 증거와 관련한 내용을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제6조 증거를 제외한 제2조~제5조 등 대부분의 덤핑판정에 관한 원심의 내용은 배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WTO 반덤핑협정 제2조~제5조에서는 덤핑의 판정, 피해의 판정, 국내산업의 정의,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 등 반덤핑의 대부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 제6조에서는 조사개시 시 제출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증거 제출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11.4조에 따른 중간 및 종료재심사에 적용 가능한 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
 - WTO 회원국들은 중간 및 종료재심사의 유형에 따라 덤핑 및 산업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한 독자적인 판정 기준을 관련 법규로 도입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2) 고준성, 「반덤핑조사에 있어 재심사 기능의 합리적 운영 방안」, 산업연구원, 2009. 9., p. 1.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중간재심 및 종료재심과 관련한 주요국의 반덤핑규정과 사례 등을 검토하고자 함
- 특히 반덤핑조치의 부과 이후 중간재심사나 종료재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국가 중 해당 제도를 선진적으로 이용하는 미국, EU를 비롯하여 반덤핑 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중국, 인도를 조사국으로 선정하였음
 - 미국은 별도의 반덤핑법령을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판정기준 및 절차를 도입하고 있음
 - 중국은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반덤핑 제소 건수 7위로 개편을 통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던 무역구제 기능을 상무부로 통합하였음
 - EU는 재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국가이나 반덤핑 관련 규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신사례를 선정하여 적용 내용을 살펴보았음
 - 인도는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반덤핑 제소 건수 1위로³⁾ 무역구제 조직을 일원화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에서 무역구제 실무지침서를 발행하였음

〈표 1-1〉 반덤핑관세 제소 및 피소국 순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제소국 (건수)	인도 (1100)	미국 (841)	EU (544)	브라질 (438)	아르헨티나 (409)	호주 (375)	중국 (292)	캐나다 (277)	남아공 (251)	튀르키예 (241)
피소국 (건수)	중국 (1526)	한국 (483)	대만 (333)	미국 (317)	인도 (261)	태국 (256)	인니 (242)	일본 (238)	러시아 (195)	말레이시아 (189)

자료: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월간 통계(22. 9월말 기준)

-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 중간재심 및 종료재심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최신 개정 규정을 비롯하여 가능한 경우 관련 적용사례를 조사하였음

3)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2021년 12월 겨울호(통권 제75호), 2021. 12., p. 136.

4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고준성(2009)에서는 주요국의 재심사제도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가격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주체를 무역위원회로 변경할 것, 최소부과원칙의 적용 여부 검토, 산업피해 상황변동 판정 시 지속성의 검토 등에 대해 서술하였음
 - 마광(2007)에서는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심사제도에 관해 규정과 적용사례를 절차적 규정 및 실체적 규정으로 분류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서술하였음
 - 유향란(2006)에서는 미국 및 EU의 중간 및 재심사제도에 관한 규정과 적용사례를 절차적 규정 및 실체적 규정으로 분류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서술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덤핑이나 덤핑 재발로부터 국내산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반덤핑재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 본 연구는 제 I 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IV 장으로 구성되었음
- 제 II 장에서는 WTO 반덤핑협정상 재심사 규정에 관한 내용, 해당 규정을 적용한 중간재심사 및 종료재심사 사례에 관해 조사하였음
 - 제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미국, 중국, EU, 인도)의 중간재심사 및 종료재심사의 규정 및 내용에 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중간재심사 및 종료재심사의 근거 법령, 무역구제 담당 기관, 재심사 신청주체 및 개시요건, 원심절차의 적용 여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재심사 기간 등에 관해 조사하였음
 - 제 IV 장에서는 제 II 장과 제 III 장에서 살펴본 WTO 반덤핑협정 및 주요국의 재심사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기술하였음

II.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1. 개요

-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WTO 반덤핑협정) 제11조에서 반덤핑재심사(review) 규정을 두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조에서 중간재심(또는 상황변동재심) 및 종료재심(또는 일몰재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재심사에 대한 용어는 통일되어있지 않아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본문에서는 각 국가에서 적용하는 명칭을 사용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제도는 반덤핑조치의 적용 이후 기존 조치의 종료, 기간의 연장, 조치 내용의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적 재심사(administrative review)를 의미함
 - 따라서 반덤핑조사 당국에 의해 내려진 조치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당해 국가의 관할 법원(관할 사법기관, 중재기관 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와 구별됨

6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표 II-1〉 WTO 반덤핑협정 체계

조문	내용
제1조	원칙
제2조	덤핑의 판정
제3조	피해의 판정
제4조	국내산업의 정의
제5조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
제6조	증거
제7조	잠정조치
제8조	가격인상약속
제9조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제10조	소급
제11조	반덤핑관세 및 가격인상약속의 기간과 심사
제12조	공고 및 판정내용에 대한 설명
제13조	위법심사
제14조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
제15조	개발도상국
제16조	반덤핑관행위원회
제17조	협의 및 분쟁해결
제18조	최종조항
부속서 1	제6조 제7항에 따른 현장조사 절차
부속서 2	제6조 제8항에 따른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

자료: WTO 반덤핑협정

- 재심사는 반덤핑조치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반덤핑조치 부과 후 조치 발동의 원인이 되었던 덤핑의 존재와 국내산업에의 피해 발생 상황을 파악하여 반덤핑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는 기능이 있음⁴⁾
- 상황 변화에 따라 조치의 내용 변경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며 반덤핑제도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4) 마광,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Vol. 52, No.1, p. 68.

-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반덤핑관세의 존속기간에 대해 일반적인 원칙으로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정도 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증거 및 절차와 관련한 제6조의 규정⁵⁾이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검토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조를 제외한 다른 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재심사 시 WTO 반덤핑협정의 제6조를 제외한 조항의 배제가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WTO 반덤핑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덤핑의 판정요건과 제3조에서 규정하는 피해의 판정요건은 회원국이 종료재심사 시 덤핑이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정에 적용배제가 가능함
 - 그 뿐만 아니라 WTO 반덤핑협정 제4조 국내산업의 정의, 제5조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 등 또한 적용배제가 가능함
 - 기타 WTO 반덤핑협정 제11조의 규정은 제8조에 따라 수락된 가격약속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약속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⁶⁾
 - 당국이 수출자로부터 가격을 수정하거나 당해지역에 대한 덤핑가격으로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덤핑의 피해효과가 제거되었다고 납득하는 경우, 조사는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의 부과 없이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음
 - 약속에 따른 가격인상은 덤핑마진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가격인상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면 인상 폭은 덤핑마진 이하가 되어야 함
 - 당국이 수출자에게 가격약속의 수락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해당 이유를 제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5) WTO 반덤핑협정 제11.4조.

6) WTO 반덤핑협정 제11.5조, WTO 반덤핑협정 제8조.

8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가격약속이 수락되는 경우라도 수출자의 희망 또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 덤핑과 피해에 대한 조사는 완결됨
- 당국은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기간에 가격약속이 유지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덤핑 및 피해에 대한 긍정 판정이 내려진 경우 가격약속은 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하게 지속됨
- 수입회원국 당국은 가격약속을 제안할 수 있으나 어떠한 수출자도 동 약속을 강요받지 않아야 함
- 수입회원국 당국은 가격약속을 수락한 모든 수출자에게 이러한 약속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의 허용을 요구할 수 있음

〈표 II-2〉 WTO 반덤핑협정 제6조

	조항	내용
WTO 반덤핑 협정 제6조 (증거)	제6.1조	- 정보 통보 및 서면증거 제출 -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요건 고려 - 질의서 응답기간
	제6.2조	- 회합 참여를 통한 의견 제기
	제6.3조	- 구두정보 서면 제출
	제6.4조	- 정보 열람 및 입장 표명
	제6.5조	- 비밀정보 취급 - 정보요약문 제출 - 무시할 수 있는 정보
	제6.6조	- 정보의 정확성
	제6.7조	- 정보 검증을 위한 조사
	제6.8조	-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한 예비 및 최종판정
	제6.9조	- 핵심적 고려사항 통보
	제6.10조	-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
	제6.11조	- 이해당사자의 정의
	제6.12조	- 조사대상 상품의 산업적 이용자와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
	제6.13조	- 소규모 기업 지원
	제6.14조	- 예비판정 또는 최종판정 절차 진행 및 판정 방해 금지

자료: WTO 반덤핑협정

- WTO 반덤핑협정 제12조 판정에 관한 공고 및 설명에서는 본 조의 내용이 제11조에 따른 검토의 개시 및 종결과 제10조에 따른 관세의 소급적용에 관한 결정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⁷⁾
- 따라서 중간 및 종료재심의 개시 및 판정 공고 시 WTO 반덤핑협정 제12조의 내용을 준수해야함

〈표 II-3〉 WTO 반덤핑협정 제12조

	조항	내용
WTO 반덤핑협정 제12조 (판정에 관한 공고 및 설명)	제12.1조	조사개시에 대한 공고
	제12.1.1조	공고 시 필요한 정보 및 보고서의 제출
	제12.2조	반덤핑조치 공고
	제12.2.1조	잠정조치 공고 시 필요한 사항
	제12.2.2조	확정관세 부과 또는 가격약속의 수락
	제12.2.3조	확정관세 부과 또는 가격약속이 수락된 이후의 조사의 종결 또는 중지의 공고
	제12.3조	제11조에 따른 검토의 개시 및 종결과 제10조에 따른 관세의 소급적용에 관한 결정 준용

자료: WTO 반덤핑협정

2.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

가. 중간재심사

- WTO에서 공식적인 명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중간재심을 상황변동재심사(Changed Circumstances Review)로 표현하고 있으며, EU, 중국은 중간재심사(Interim Review 또는 Mid-Term Review)라고 표현함

7) WTO 반덤핑협정 제11.4조.

10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조사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재심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지속적인 부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함⁸⁾
 - 이해당사자 요청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당국이 필요할 시 검토 가능하므로 직권에 따른 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간재심에서는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덤핑과 피해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9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반덤핑관세의 최종 지불 책임에 관한 결정(관세평가재심사)은 그 자체로서 중간재심사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조사기관이 직권으로 재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으며 재심사 직권 개시 요건 및 합리적인 기한에 대한 명확한 요건은 두고 있지 않음
-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당사자는 다음의 두 가지를 조사할 권리를 가짐⁹⁾
 -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덤핑 재심사)에 대해 조사할 권리가 있음
 -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피해 재심사)에 대해 조사할 권리가 있음
 - 해당 규정에 따라 중간재심의 판정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세율이 변경되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앞서 언급한 두 가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검토 결과 반덤핑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즉시 종결됨¹⁰⁾

8) WTO 반덤핑협정 제11.2조.

9) WTO 반덤핑협정 제11.2조.

10) WTO 반덤핑협정 제11.2조.

- 증거 및 절차와 관련한 WTO 반덤핑협정 제6조의 규정은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검토에 적용되고, 이러한 모든 검토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검토 개시 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종결됨
 - 일반적으로 12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해당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협정 위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나. 종료재심사

- WTO에서 공식적인 명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료재심에 대해 미국과 인도의 경우 일몰재심사(Sunset Review)로 표현하고 있으며, EU, 중국 및 한국 등은 종료재심사(Expiry Review)로 표현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모든 반덤핑관세는 부과일(혹은 중간재심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중간재심의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종료재심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¹¹⁾
 - 따라서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후 5년의 만료기한 내에 재심사가 개시되어야 하며, 5년의 기한산정일은 원심에서 확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시점 혹은 추후에 종료재심사가 이루어졌거나 덤핑과 피해를 모두 검토한 중간재심사가 이루어졌을 시 해당 판정이 내려진 시점이 기한산정일이 됨
- 조사당국에서 관세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초래할 것으로 판정한다면 5년을 초과하여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연장할 수 있음¹²⁾
 - 이해당사자 요청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당국이 필요할 시 검토 가능하므로 직권에 따른 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재조사기관이 반덤핑관세의 종료 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11)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12)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12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판정해야 하는데, 지속 가능성 또는 재발 가능성 중 한 가지만 만족하더라도 부과를 연장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재심사에서 조사기관이 반덤핑관세의 종료 시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할 시에도, 피해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발 가능성 중 한 가지만 만족하더라도 부과를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재발 가능성의 경우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심사 기간에 덤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부과 연장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
 - 현재의 덤핑 및 피해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에 대해서만 판정하므로, 가능성에 대한 판단 조건은 각국의 조사당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종료재심사는 조사기관의 직권에 의하거나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신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개시됨¹³⁾
-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신청에 의한 종료재심사의 개시의 경우 신청인의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을 요구하고 있으며, 직권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중간재심사의 경우 이해당사자(해외의 수출 및 생산업체 및 국내수입업체 등) 신청인의 범위가 넓지만, 종료재심사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신한 신청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종료재심사 시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5년 이내에 종료되지 않음¹⁴⁾
-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에도 덤핑이 계속되고 있거나, 덤핑이 중단되었음에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다시 덤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반덤핑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 덤핑과 피해 및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고 반덤핑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 가능함

13)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14)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 WTO 반덤핑협정의 증거 및 절차와 관련한 제6조(증거)의 규정은 중간재심사뿐 아니라 종료재심사에도 적용되어 검토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검토 개시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⁵⁾
 - 일반적으로 12월 이내라고 규정하여 강제성은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협정 위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신속한 진행에 대해 언급하지만 원심에 비해 어느 정도로 빨리 수행되어야 하는지 종료재심사가 해당기간을 초과할 경우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음

-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검토기준 및 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중간 및 종료재심 관련 분쟁사례¹⁶⁾

가. 중간재심사 관련 분쟁사례

1) 일반원칙 및 조사당국

- WTO 반덤핑협정 제11.1조에서는 덤핑관세는 ‘필요한 기간’ 그리고 ‘필요한 범위에 서만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원칙으로 중간재심 및 종료재심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임
 - 반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과 같은 요건 충족 시, 반덤핑조치의 필요성이 작동하며 연장의 필요성은 증거에 근거하여 입증되어야 함

15)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16) WTO, 『WTO ANALYTICAL INDEX Anti-Dumping Agreement-Article 11(Jurisprudence)』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14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US-Shrimp II 사건의 패널은 WTO 반덤핑협정 제11.2조에 따라 수행된 검토에서 조사 당국 결정의 성격이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에 따라 수행된 일몰 검토와 같다고 보았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와 같이, 제11.2조가 관세의 계속적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당국이 고려해야 할 특정 방법이나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국의 능동적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2) 개시 요건 관련 용어 해석

- US - DRAMS 사례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11.2조는 현재의 반덤핑 존재 여부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널은 재발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2조에서는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며, 제11.3조와는 다르게 덤핑이 재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관세의 계속적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당국이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계속적(continued)이라는 용어는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향후 조사당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 피해 조사 시, 조사 당국은 피해와 덤핑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맥락에서 조사 중인 피해가 재발할 수 있는 피해에 해당할 경우 조사 당국은 반드시 예상기간에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함
- 따라서 WTO 패널은 WTO 반덤핑협정 제11조 제2항이 현재 덤핑의 존재 여부에 한해 반덤핑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 피해의 재발 가능성(likely)과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not likely)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US - DRAMS 사건에서 WTO 패널은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음
 - 해당 사건에서 한국은 미국이 피해의 지속성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미국법에 따라 향후 덤핑이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future dumping is not likely)을 조사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음
 - WTO 패널은 긍정적인 결과로 설정하는 것과 부정적인 결과로 설정하지 못하는 것의 개념적 차이를 고려하였으며,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을 만족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을 만족하지 못할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음

- EC - Tube or Pipe 사례에서 WTO 패널은 WTO 반덤핑협정 제11.2조에서 언급하는 정당한(Warranted)이라는 문구가 자체 검토 개시를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거나 정당화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음
 - 조사 기관이 정당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조사 기관은 자체 검토를 시작해야 하며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모두에 대해 검토해야 함
 - 따라서 WTO 반덤핑협정 제11.2조는 구성원이 제11.1조에 포함된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토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결정함

- WTO 패널은 US - Shrimp II 사례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11.2조에 사용된 관세의 의미에 대해 기업 특정적 관세 또는 조사대상 전반에 대한 관세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제11.3조에서와 동일하게 전반에 적용되는 의미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함
 -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관세의 지속적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인 경우 조사당국은 기업별로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덤핑 및 피해에 대한 관세의 지속적인 부과에 대한 모든 덤핑에 대해 검토해야 함

16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WTO 패널은 WTO 반덤핑협정 제11.2조에서는 기업별 조사인지 또는 요청에 따른 전반적인 조사 여부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조사당국이 권한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렸음

나. 종료재심사 관련 분쟁사례

1) 일반원칙 및 조사당국

- US - Oil Country Tubular Goods 사례에서 WTO 패널은 종료재심은 의무가 아니라 반덤핑관세 조치 5년 후 종료에 대한 예외로 본다고 판단함
- 조사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US - Corrosion-Resistant Steel 사례에서는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가 수동적인 의사 결정보다 조사와 판정 두 측면이 결합한 능동적인 의사 결정 역할을 당국에 부여한다고 판단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에서 ‘검토(review)’와 ‘결정(determine)’이라는 단어는 조사당국이 일몰 심사를 수행할 때 재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에 기반하여 성실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제11.3조에 사용된 ‘초래할(likely)’이라는 단어에 대해 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이 발생할 개연성(probable)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가능할 것(possible)’ 같거나 ‘그럴듯한(plausible)’ 증거로는 확정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 가능성에 관한 결정(determination)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조사당국이 단순하게 가능성이 있다(likelihood exists)고 가정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것임
 - 따라서 조사당국은 실증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여 조치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해야 함

2)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 판단 요건

- Korea-Stainless Steel Bars 사건에서 일본은 한국이 피해 재발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지 않은 채,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의 종료가 피해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함
 - 세 가지 요인은 제3국의 저가 수입 물량이 대거 유입된 영향, 원자재 가격, 내수 및 수출시장 수요 약세이며, 한국은 원자재 가격 및 내수 및 수출시장 수요 약세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WTO 패널은 일본이 특정 피해 요인으로 인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해제가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요소를 고려해야 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WTO 패널은 원자재 가격, 내수 및 수출시장 수요 약세 등에 대해 조사기간에 일본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해제가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과 연관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해당 요소의 영향에 대해 반대되는 설명이나 증거가 없다면, 사람들은 원자재의 비용과 약한 수요가 한국 시장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의 수입물품 및 국내 유사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EU - Cost Adjustment Methodologies II(EU의 러시아산 질산암모늄에 대한 원가 조정 방법론) 사례에서 WTO 패널은 원심과 재심의 차이에 대해 덤핑 및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의 가능성 여부라고 밝혔음
 - 원심의 경우 조사당국은 조사기간의 덤핑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하나, 재심의 경우 원심조사 결과 적용된 조치의 종료가 덤핑의 지속이나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함
 - 또한 조사당국은 '새로운 분석(fresh analysis)'에 기초하여 그 조치의 만료가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함

18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해당 측면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3조의(피해의 판정)이 원심 조사의 맥락에서 피해 판정에 적용되더라도, 종료재심의 맥락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패널은 US - Oil Country Tubular Goods 일몰재심에서 조사 당국은 피해 가능성을 결정할 때 제3조(피해의 판정)의 조항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음
 - 다만,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결정에 있어 WTO 반덤핑협정 제3조에 명시된 관련 요소를 검토하지 않으면 조사 당국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필요성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힘
- US - Oil Country Tubular Goods 사례에서 WTO 패널은 종료재심에서 덤핑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 사이의 인과관계(causal link)를 재설정할 필요는 없으나, 덤핑과 피해 간의 관계가 일몰재심에서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는 표면상 조사 당국이 덤핑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세 부과 조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함
 - 국내산업에 대한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는 반덤핑협정에 따른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유지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나, 재심에서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의 재심은 원심과 다른 목적을 가진 구체적 과정으로 해석함
 - 일몰재심은 5년의 조치 부과기간이 끝난 후 예외적인 절차로 간주하므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는 한 유지해야 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재심에서 덤핑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 사이의 인과관계 설정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1994년 GATT 제6조와 반덤핑협정에서 상정한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종료재심 시 단절된다는 것이 아니며, 일몰재심에서 인과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 WTO 패널은 US-Corrosion-Resistant Steel 사례에서 조사개시에 관한 요건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 제5.6조17)에 따라 원심의 직권조사에 적용되는 동일한 증거 기준이 제11.3조에 따른 일몰 검토의 직권개시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을 기각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에서는 일몰 검토에 적용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어떤 표준(기준)에 명시적으로 혹은 참조하는 방식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는 ‘또는’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통해 명백하게 두 가지 대안적인 방법으로 일몰 검토의 개시를 규정하고 있음
 - 당국은 직권으로 또는 국내산업에 의해 또는 대리로 정당하게 입증된 요청(duly substantiated request)에 따라 일몰재심을 개시함
 - 따라서 WTO 패널은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에서 국내산업계가 제기한 불만 사항에 근거한 조사개시에 관한 특정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직권 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다른 단락에 제5.6조의 내용에 대해 상호 참조를 포함하지 않거나, 반대로 상호 참조를 하지 않은 것은 제5.6조의 증거 표준을 일몰 심사에 적용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US - Oil Country Tubular Goods 사례에서 WTO 패널은 WTO 반덤핑협정이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명시적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함
 - WTO 패널은 수출업자들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덤핑 수입의 가능한 양에 대한 조사 당국의 평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국내산업의 현금 흐름이나 생산성에 대한 분석은 더 긴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함

17) WTO 반덤핑협정 제5.6조: 특별한 상황에서 관계당국이 조사개시를 위하여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서면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제2항에 기술된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함.

20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WTO 반덤핑협정 제3.7조¹⁸⁾에 명시된 물질적 피해 위협이 임박(imminent)하다는 요건을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시간적 제한의 형태로 제11.3조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는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관한 결정에 대해 조사 당국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사실에 근거할 것만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에 대한 기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피해판정은 적절하게 추론되고 충분한 사실관계에 근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3) 조사기간 및 누적요건

- Pakistan-BOPP Film(UAE) 사례에서 12개월의 조사기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WTO 패널은 특정 조건에 따른 기간 초과는 인정하나 특정조건이 반덤핑협정 제13조¹⁹⁾에 따른 사법절차에 해당한다면, 상대국이 동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4조에서는 일반적으로(normally) 조사가 검토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기간 초과에 대한 여지

-
- 18) WTO 반덤핑협정 제3.7조: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해서는 안 됨. 덤핑이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측되어야 하며 급박한 것이어야 함. 실질적 피해 우려의 존재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당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함: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내시장으로의 덤핑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 추가적인 수출을 흡수하는 다른 수출시장의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입회원국의 시장으로 덤핑수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또는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증가, 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추가수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 그리고 조사대상 상품의 재고현황
-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서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으나, 고려된 요소 전체는 덤핑수출품이 추가로 임박하고,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해야 함.
- 19) WTO 반덤핑협정 제13조: 자기나라의 국내법이 반덤핑조치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각 회원국은 특히 최종판정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의 신속한 검토 및 제11조의 의미내의 판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절차를 유지하며, 이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는 당해판정 또는 검토를 책임지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를 두고 있으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Pakistan-BOPP Film(UAE) 사건에서 UAE는 파키스탄 조사당국이 비정상적인 (not normal) 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 일몰재심 조사에 12개월의 기간을 초과하였으며, 조사가 신속하게(expeditiously) 진행되어야 한다는 WTO 반덤핑협정 제1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파키스탄은 WTO 반덤핑협정 제5.10조에서 조사는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18개월을 최종 제한기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WTO 패널은 제한기간의 문제가 12개월 시한 초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다루지 못한다고 판단함
 - WTO 패널은 파키스탄의 사법부 절차를 조사기간을 초과할 만큼 예외적이거나 통제를 벗어난 특별한 행위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법심사 시 특정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에 상대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 US - Oil Country Tubular Goods 사례에서 WTO 패널은 일몰재심에서 누적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 제3.3조²⁰⁾와 제11.3조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몰재심에서 누적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판결함
 - EC - Tube or Tube or Pipe Fittings 사례에서의 피해 조사 누적 관행을 인정한 판결을 통해 종료재심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음
- WTO 패널은 US-Corrosion-Resistant Steel 및 US-Oil Country Tubular Goods 사례에서 일몰재심의 누적을 인정하지만, WTO 반덤핑협정 제3.3조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는 일몰재심에서 피해 판정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20) WTO 반덤핑협정 제3.3조: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a)각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하여 확정된 덤핑마진이 제5조제8항에 정의된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며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b)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당국은 이러한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22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판단 시 무시 가능한 수준에(negligibility standards)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음

- WTO 반덤핑협정 제11.4조에서는 제6조(증거) 및 제8조(가격약속)에 대해 상호 참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참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4) 미소마진

- 미소마진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질산암모늄 사례(Ukraine-Anti-Dumping Measures on Ammonium nitrate)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업체에 대해 미소 판정을 내렸음에도 종료재심 시 재심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WTO 패널은 WTO 반덤핑협정 제5.8조²¹⁾ 위반이라고 결정하였음
- 특히 협정 위반에 대해 WTO 상소기구는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생산자는 조치에서 제외하며, 0%를 포함한 모든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정한 Mexico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Beef and Rice 사례를 사용하였음²²⁾
- Mexico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Beef and Rice(2005) 사례에서 WTO 패널은 원심에서 조사가 종결된 대상은 종료재심²³⁾ 또는 상황변동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음
- WTO는 최근 판정과 과거 판정 사이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1년 재심사에 대한 WTO 분석보고서(『WTO ANALYTICAL INDEX Anti-Dumping Agreement-

21) WTO 반덤핑협정 제5.8조: 관계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됨. 덤핑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마진은 최소허용수준인 것으로 간주됨.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물량이 수입 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 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 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 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됨.

22) WTO, 『UKRAINE - ANTI-DUMPING MEASURES ON AMMONIUM NITRATE REPORT OF THE PANEL』, 2018. 7. 20., p. 49.

23) 본문에서는 'administrative reviews or reviews on account of changed circumstances'라고 사용하나 문맥상 종료재심사와 상황변동재심사로 해석하였음.

Article 11(Jurisprudence)』에서는 해당 예시를 미소마진에 관한 대표적 사례로 사용하고 있음

- 다만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자체는 제5.8조의 미소마진 기준이 일몰 심사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요건이 함축적으로 포함되도록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 2004년 US - Corrosion-Resistant Steel 사례에서는 제5.8조 본문에서 미소마진에 관한 조사 종료만 다를 뿐 일몰재심의 관련성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일몰재심에 미소마진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Ⅲ.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1. 우리나라

가. 개요

1) 근거 법령

〈표 Ⅲ-1〉 우리나라 반덤핑재심사 관련 법령

해당법	해당조항	내용
「관세법」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무역위원회 고시」	제4절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제4절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무역위원회 예규」	제1편 제8절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자료: 국내법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법률은 「관세법」에서 규정하며, 반덤핑재심 관련 기본법률은 동 법 제56조에 근거함²⁴⁾

○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는 1963년 「관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

24) 덤핑방지관세와 반덤핑관세는 혼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관세법」 상 사용하는 용어는 덤핑방지관세임.

가 GATT에 가입한 직후 1968년 「관세법」 제10조에서 부당염매방지관세라고 하여 덤핑방지관세 성격의 규정을 도입하였으며²⁵⁾ 1984년 개정된 「관세법」부터 본격적인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법규체계가 갖추어짐²⁶⁾

- 덤핑방지관세의 주요 내용은 저가 물품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저가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동 제도는 1988년에 최초로 운용되기 시작했으며, 반덤핑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덤핑재심 관련 법령은 「관세법」에서 규정함²⁷⁾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통해 재심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WTO 반덤핑협정과 매우 흡사함

- 중간재심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종료재심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
- 우리나라 반덤핑법은 WTO 협정을 기본으로 미국, EC의 반덤핑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짐²⁸⁾

□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 외에, 「무역위원회 고시」 및 「무역위원회 예규」에서도 반덤핑재심사 원칙과 절차에 관해 규정함

- 「무역위원회 고시」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 조사 판정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에서 재심사의 범위, 조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 「무역위원회 예규」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실무지침 제3편 재심사에서 재심사의 신청, 개시, 실시에 관해 규정함

25) 안덕근,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2012. 6. 7., p. 3.

26)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9., p. 103.

27) 덤핑상계관세 관련은 「관세법」에서 규정하므로 불공정무역행위 및 세이프가드 등의 조사가 포함된 무역구제법은 제외하기로 함.

28) 장근호,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9. 12., p. 167.

26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특히, 「무역위원회 고시」는 최근 신설(4개 조항)·개정(1개 조항) 사항을 담아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²⁹⁾
 - 신설된 조항은 4개로 제26조 2항, 제27조, 제31조, 제70조임
 - 제26조 2항은 덤핑률중간재심사의 포함 범위와 재심대상공급자의 정의에 관한 내용임
 - 제27조는 종료재심사 관련 규정으로 재심사요청 대상, 산업피해 조사 판정 시 누적 평가 여부 및 검토 규정 등에 관한 내용임
 - 제31조 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과 관련한 투자, 연구·개발 및 혁신 등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에 대한 검토사항, 환경에 관련된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국내산업이 부담하였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의 이행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검토사항,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에 대한 검토사항임
 - 제70조 제4항은 재검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재심사 중 덤핑률중간재심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 제30조 재심사 요청 자격에 대한 내용은 재심 유형에 따라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됨

29)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

〈표 III-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재심 관련 신설 조항

제26조 ② 덤핑률중간재심사는 공급자의 실제적 연속성과 덤핑률 승계여부를 판단하는 상황변동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③ 중간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공급자는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공급자에 한정된다. 원심의 결과로서 덤핑방지도치 또는 약속의 대상이 된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중간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중간재심사 기간 중에도 시행중인 덤핑방지도치는 계속 유효하다.

제27조 ② 종료재심사에 있어 재심사대상공급국은 재심사요청서에 적시된 공급국에 한정된다. 재심사요청서에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덤핑방지도치는 당해 조치의 종료일에 종료된다. ③ 위원회는 종료재심사에서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재심사대상물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누적적 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덤핑방지관세 조치 종료 시 재심사 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미래의 경쟁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경쟁조건도 덤핑방지관세 조치 종료 시 예상되는 미래의 경쟁조건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70조 제4항 재검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재심사 중 덤핑률중간재심사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①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산업의 이익률과 관련한 검토사항: 1. 조사개시 시점 직전 3년 또는 그 이전의 기간 중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었던 기간의 이익률 2. 덤핑수입의 피해가 없었던 기간 중에서 가장 최근 연도의 실제 이익률 3. 조사신청인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달리 요청하는 이익률 4. 자료를 제출한 둘 이상의 국내생산자의 이익률이 상이한 경우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의 이익률 ② 투자, 연구·개발 및 혁신 등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에 대한 검토사항: 1. 국내산업이 덤핑수입품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면 실현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종물품에 관련된 투자, 연구·개발, 혁신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률 2. 동종물품의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연구·개발, 혁신 등이 계획되었으나 덤핑수입에 의한 피해로 인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덤핑수입품의 영향으로 인하여 국내생산자가 투자, 연구·개발 등 계획의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실행된 경우에는 동종물품이 아닌 자료

③ 환경에 관련된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국내산업이 부담하였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의 이행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검토사항: 1.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환경 분야의 국제협정, 환경에 관련된 현행 법령 또는 향후 국내산업에 적용될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법령에 따른 환경 관련 비용 2. 실제 환경관련 비용의 발생자료와 환경비용 지출의 원인 또는 근거가 된 법규 또는 정책 내용 3. 탄소배출권 할당제도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 미세먼지·폐기물·오폐수 등 환경규제의 준수를 위한 투자, 기타 환경 관련 부담금 등이 지출되었거나 향후 덤핑방지도치의 적용기간(최대 5년) 동안 지출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비용

④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률에 대한 검토사항: 1. 조사신청인이 합리적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의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량 등을 회복하기 위한 이익률

2) 무역구제기관

-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재심과 관련한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 판정, 무역구제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최종 조치를 결정함
 - 즉, 무역위원회에서 최종 덤핑방지관세율, 부과기간, 덤핑방지관세율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건의사항을 최종 검토해 부과 및 연장 여부를 결정함

- 무역위원회는 1987년 최초 설립되었으며, 2022년 7월 기준 56명의 인원으로 운영 중임³⁰⁾
 -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47명의 무역조사실로 이루어져 있음
 - 덤핑 및 보조금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는 1987년 「불공정무역조사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으로 최초 설치됨
 - 사무기구로써 무역조사실을 두어 위원회의 각종 조사와 업무처리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³¹⁾

- 무역위원회 중 반덤핑재심과 관련한 조사·판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피해조사과와 덤핑조사과임³²⁾
 - 산업피해조사과의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 유무
 -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조사개시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판정, 구제조치 및 구제조치의 재검토, 재심사에 관한 사항임

30)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introduce/postwork>, 검색일자: 2022. 7. 20.

31)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9., p. 42.

32)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introduce/postwork>, 검색일자: 2022. 7. 20.

- 덤핑조사과의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반덤핑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 조사
 -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 조사
- 무역위원회 2021년 기준 무역구제 배정 예산 합계액은 16억 6,300만원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에 5억 4,800만원, 무역구제진흥에 2억 4,900만원,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연구에 4억 5,000만원,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에 3억 8,600만원이 할당됨

〈표 Ⅲ-3〉 무역구제 예산안 내역(2021)

(단위: 백만원)

비목	2021
합계	1,633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	548
무역구제진흥	249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연구	450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38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2. 1, p. 85.

나. 중간재심사³³⁾

1) 신청주체 및 개시요건

- 재심 신청은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외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됨³⁴⁾

3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관련 재심사 중 상황변동재심사를 중간재심사로 명칭을 변경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744호에서 확인 가능.

34) 「관세법」 제56조 제1항의 1호.

30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신청주체인 이해관계자는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당해 반덤핑조치 대상 상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 또는 그 단체,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임³⁵⁾
 - 동종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함³⁶⁾
- 즉,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해 재심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³⁷⁾
-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표 III-4〉 「관세법」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전문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 ③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1. 12. 2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35)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6)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37) 「관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며 1984년, 1995년, 2006년, 2009년, 2021년 총 5차례에 걸쳐 개정됨. 내용은 이해관계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재정경제원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사 개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인 중간재심과 종료재심에 모두 해당됨.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등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음³⁸⁾
- 또한 「무역위원회 예규」에서 재심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이해 관계인이나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³⁹⁾
- 중간재심의 개시 요건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임⁴⁰⁾
 - 상황변동은 덤핑행위의 증가, 덤핑행위의 재개, 가격약속의 위반, 덤핑 및 피해의 부재, 피해 제거에 불충분한 조치 등 재심사의 결과 반덤핑관세가 사실상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함⁴¹⁾
- 또한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가 이를 조사함⁴²⁾
 -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함. 기재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중간재심의 경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시행 1년 이후로 재심 요청기한이 정해져 있음

38) 2021. 12. 21. 신설.

39)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제1편 제8절의 2. 요청주체에서 확인할 수 있음.

40) 「관세법」 제56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제1호.

41) 고준성, 「반덤핑조사에 있어 재심사 기능의 합리적 운영 방안」, 산업연구원, 2009. 9., p. 26.

42)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2) 덤핑 및 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⁴³⁾

- 중간재심사의 주요 검토사항인 피해의 재발이나 지속 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한 검토 요소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는 상태임
 - 다만 재심사에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이나 절차 등에 관해 원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재심 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 우려와 관련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시장 상황분석을 거쳐 피해 가능성을 판단함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중간재심 사례를 통해 중간재심사의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동 사례는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재심 중 유일한 중간재심 사례임

- 국내업체의 요청으로 중간재심이 개시되어 제소자의 요청대로 대상물품에 대해 덤핑 방지관세 부과가 철회되도록 판정됨
 - 중간재심이 개시된 것은 국내업체의 요청 때문이었으며,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중 문구류(볼펜팁) 제조용 원형강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업체의 완성품 제조를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
 -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는 2004년 원심 조치가 개시된 이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이며, 이 중 중간재심사 대상물품은 일본산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SF20T, SF20E)임⁴⁴⁾

- 요청인은 당초 볼펜팁용 원재료를 조치 비대상인 와이어 형태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43) 무역위원회예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제1편 제8절, 2010.

44) HSK 7222.20.0000에 해당하며 15.39%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원가절감 등을 위해 와이어를 절단해서 바 형태로 수입함에 따라 조치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됨

- 국내업체는 스테인리스 스틸 바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국내 중간재심 요청업체는 해당 제품이 세관 품목분류상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관련 관세를 납부해 왔음
- 업체의 중간재심 요청으로 인해 무역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고, 국내 수요량이 적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정함

□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간재심 판정을 위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재심대상물품의 수입현황
- 국내소비(수요)량, 국내공급량, 수출량, (총)수입량, (총)판매량, 내수(판매)량,
- 타계정대체량, 재고, 생산량, 생산능력
- 국내소비금액, 국내공급금액, 판매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총)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투자자산총액, 현금흐름, 비용 등의 가산 및 자산부채의 변동, 임금, 총부가가치,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 톤당 판매가격, 톤당 제조원가, 톤당 (원)재료비·노무비·경비, 톤당 수출가격
- 고용인원, 1인당 생산량·매출액·부가가치

3) 재심사 기간

- 재심사 요청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함⁴⁵⁾

45)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34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조사개시 요청부터 최종판결까지의 기간은 1년 이내임
 - <표 Ⅲ-5>를 보면, 2019년 4월 3일에 이해관계인이 중간재심사를 요청했으며, 개시 여부 검토, 질의서 송부, 의견서 접수, 답변서 접수, 의견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서 11개월만인 2020년 3월 5일에 최종판결함

- 최종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심사 결과 조치를 취해야 함
 -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간재심 조사를 종결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사기관은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⁴⁶⁾

<표 Ⅲ-5> 중간재심사 일정(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사례)

일자	내용
2019. 4. 3.	- 국내 이해관계인 상황변동재심사 요청
2019. 5. 16.	- 상황변동재심사 개시 여부 검토 내부보고
2019. 5. 21.	- 상황변동재심사 개시 여부 검토의견 기획재정부 통보
2019. 5. 23.	- 상황변동재심사 개시 여부 검토 보고서 무역위 검토
2019. 6. 5.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개시 - 국내생산자, 일본생산자 등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19. 6. 21.)
2019. 6. 19.	- 일본 수출자 의견서 접수
2019. 6. 21.	- 국내생산자 답변서 접수
2019. 6. 24.	- 이해관계인회의 불참 통보(해외전시의 이유) 및 서면의견서 제출
2019. 6. 27.	- 부과외 여부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2019. 7. 3.	- 부과외 여부 관련 검토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요청 (의견제출 기한 '19. 7. 8.)
2019. 11. 22.	- 재심사 기간 연장
2020. 3. 5.	- 최종판결

자료: 무역위원회, <https://www.ktc.go.kr/comInvestList.do>, 검색일자: 2022.07.14.

46)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

4) 기타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에는 덤핑가격에 대해 매년 재검토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중간재심사, 종료재심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고, 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해 재검토함⁴⁷⁾
- 동 법은 재심사 관련 보고서에서 매년 덤핑가격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례 재심사와 비견된다는 선행연구도 있음⁴⁸⁾
 - 미국의 연례재심사는 매년 덤핑마진을 다시 산정하고 있으며, 종료재심은 연례 재심에서 판정된 덤핑마진율을 토대로 판단함
- 하지만, 덤핑가격 검토 외에 관련 재심사에 대한 운영규정이 없어 정기적인 재심 성격을 가진 연례재심과 동일하다고 보긴 어려움
 - 동 법은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고만 규정할 뿐 조항에 근거해 재심사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연례재심사처럼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또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간재심제도는 덤핑률중간재심사, 산업피해중간재심사, 종합재심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이나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⁴⁹⁾
 - 덤핑률중간재심사는 덤핑방지관세율 수준의 변경 여부만을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산업피해중간재심사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유무를 재심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종합재심사는 덤핑률중간재심사 및 산업피해중간재심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함
 - 덤핑률중간재심사는 공급자의 실제적 연속성과 덤핑률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상 황변동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함

47) 2008년 2월부터 시행됨.

48) 고준성, 「반덤핑조사에 있어 재심사 기능의 합리적 운영 방안」, 산업연구원, 2009. 9., p. 29.

49)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다. 종료재심사

1) 신청주체 및 개시요건

- 재심의 개시를 결정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재심이 결정된 후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맡음
- 종료재심은 반덤핑관세 또는 가격약속의 종료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시된다고 규정함⁵⁰⁾
 - 무역위원회가 국내생산자에게 발송한 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한 기업 중 재심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관계를 고려해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함
- 종료재심 요청기한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종료 6개월 이전임

2) 덤핑 및 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 종료재심에서 산업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시장 상황분석과 국내 산업의 피해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됨
- 먼저 시장 상황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관련 산업의 특징 및 수급현황,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효과검토,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판단함
 -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의 효과는 수입물량에 미친 효과, 가격에 미친 효과, 국내산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
- 다음으로 국내산업의 피해 가능성은 덤핑방지관세 조치 종료 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증대 가능성과 수입이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에 미칠 영향,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으

50)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로 구분해 검토함

- 수입물량의 변동은 관세청 통관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증대 가능성을 검토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의 4가지임
 -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 세계시장에서의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 수출여력의 흡수 가능성
 -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제3국의 반덤핑조치 등 수입장벽 현황
 -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수입자, 수요자의 구매 변화 가능성
 -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수입이 국내상산물 판매가격에 미칠 영향은 다음을 고려해 검토됨
 - 재심사대상물품의 저가판매 가능성 및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 가격을 인하 또는 상승 억제할 가능성
 -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은 다음을 고려해 검토됨
 -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 및 재고, 시장점유율, 국내판매가격 및 제조원가,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성장성,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자본조달 능력 등
- <표 Ⅲ-6> 중국 판유리 사례에서 수출물량, 제3국의 중국산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조치, 중국 해당업체의 제3국 수출가격 및 공급국의 생산능력을 덤핑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고려 요소로 삼음
- 최종판정의결서에 따라 중국산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이 감소한 점, 제3국의 덤핑방지조치로 인해 수출이 감소된 중국산 재심사대상물품이 한국으로 덤핑 수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중국업체의 대한국 수출가격은 반덤핑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3국 수출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제3국 수출가격으로 한국에 수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덤핑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함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 시장점유율 등을 검토해서 판정함⁵¹⁾
 - 조사대상기간 국내산업의 매출, 판매량, 제고, 시장점유율, 생산량, 가동률, 가격 및 제조원가, 이윤, 생산성, 고용 및 임금,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의 경영 지표에 대하여 검토하여 산업피해 여부를 판단함⁵²⁾

- 그 외, 종료재심사에서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재심사대상물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⁵³⁾
 - 이 경우 위원회는 누적적 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덤핑방지관세 조치 종료 시 재심사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미래의 경쟁 조건을 검토할 수 있음

3) 재심사기간

-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 필요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요청부터 최종판정까지의 총 소요 기간은 1년 이내임
 - 재심조치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시행됨
 - 본 조사는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종결하며 4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현지실사검증, 공청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은 원심과 동일 절차에 따름

51) 무역위원회,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서, 2018. 4. 26., pp. 14~16.

52) 무역위원회,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서, 2018. 4. 26., p. 7.

53)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7조 제3항.

- 판유리 사례에서 조사개시부터 최종판정까지 약 11개월이 소요됨
 - 동 사례는 국내생산업체의 재심 요청으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17년 7월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질의서, 답변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4월 최종 판정됨

〈표 Ⅲ-6〉 종료재심사 일정(플로트 판유리 사례)

일자	산업피해조사 경과	일자	덤핑조사 경과
17. 7. 5.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이 덤핑 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요청	17. 7. 5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덤핑 방지조치기간 연장 요청
17. 9.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결정(기획재정부 공고)	17. 9.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개시 결정
17. 9. 7	국내생산자 및 수입·수요자 등 질의서 송부	17. 9. 4.	조사개시 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
17. 9. 28.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	17. 10. 12.	조사대상 공급자 요청에 따른 답변기한 연장
17. 9. 28.	국내생산자 답변기한 연장 결정	17. 10. 30.	답변서 접수
17. 10. 11	국내수요자 답변서 제출	18. 1. 3.	조사대상 공급자 보충질의서 송부
17. 10. 18.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	18. 1. 9.	보충답변서 접수
17. 12. 28.	국내생산자 수정 답변서 제출	18. 2. 26.	차이나글라스그룹 가격약속제외서 접수
18. 1. 16. ~ 1. 19.	생산자 현지 실사	18. 2. 27.	가격약속제외서 기획재정부 송부
18. 2. 22.	공청회 개최	18. 3. 8.	기획재정부, 가격약속제외서에 대한 의견요청
18. 2. 23.	조사기간 연장	18. 3. 15. ~ 3. 16.	차이나글라스그룹 현지실사
18. 4. 10.	수입자 측 면담 요청으로 면담 실시	18. 3. 30.	가격약속제외서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18. 4. 6.	이해관계인 의견제출(2차 재심의 가격약속 수준에 동의)
		18. 4. 26	최종판정

자료: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 무역구제 > 무역구제조사종결 > 최종판정보고, <https://www.ktc.go.kr/viewInvest.do>, 검색일자: 2022. 7. 16.

2. 미국

가. 개요

1) 근거 법령

- 반덤핑재심 관련 주요 법령은 미국 19 연방법(U.S. Code, 이하 USC) 제1675조와 19 연방규정(Consolidated Federal Regulation, 이하 CFR) 제351조임⁵⁴⁾
 - 19 USC 1675조는 「관세법」 제751조로 병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19 USC 1675조와 1930년 「관세법」 751조가 같은 법령이기 때문임
 - 1930년 「관세법」은 6개 절(Subtitle)로 구성되어 있고, 반덤핑재심 관련법은 제4절 (Subtitle IV) 4부에 해당함
- 19 USC 제1675조는 반덤핑 결정에 관한 일반조항, 상황변동재심, 연례재심, 일몰재심, 반덤핑 부과명령 철회 및 조사종료 등 반덤핑재심 관련 전반에 관해 규정함⁵⁵⁾
 - 제1675조는 1675, 1675a, 1675b 총 3개 항으로 구성되며, 그중 1675, 1675a가 반덤핑재심 관련 규정임
 - 1675b는 상계관세 부과 및 조사에 관한 특별규칙에 관한 규정임
 - 1675c항은 2006년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임
- 19 CFR 351에는 반덤핑재심의 신청인, 개시요건, 절차, 기한, 조사, 판정 등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임⁵⁶⁾
 - 동 법의 B관(Subpart B)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그중 반덤핑재심과 관련된 조항은 제213항~제218항, 제221항임

54) 미 헌법 제6조에 따라 CFR은 USC의 하위법령이며, 법령 충돌 시 USC를 우선함.

55)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5>, 검색일자: 2022. 7. 5.

56)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351>, 검색일자: 2022. 7. 6.

〈표 III-7〉 미 연방법(USC) 및 연방규정(CFR)상 반덤핑재심 관련 법령 체계

19 USC 1675					
편	장	절	부	관	조항
19	IV	IV	III	A	§ 1675. 재심 판정
					§ 1675a. 1675(b) 및 1675(c) 재심 특별규칙
					§ 1675b. 상계관세명령과 조사를 위한 피해조사 특별규칙
					§ 1675c. 폐지(Pub. L. 109-171, title VII,
19 CFR 351					
편	절	부	관	조항	
19	III	351	B	§ 351.213 부과명령 및 중지 협정의 재심 규정	
				§ 351.214 신규수출자 재심 규정	
				§ 351.215 신속 반덤핑재심 규정	
				§ 351.216 상황변동 재심 규정	
				§ 351.217 보조금 집행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재심 규정	
				§ 351.218 일몰재심 규정	
				§ 351.221 재심 절차	

주: 연방법 체계는 편(Title) > 장(Subtitle) > 절(Chapter) > 부(Part) > 관(Sub-part) 순서로, 연방규정 체계는 편(Title) > 절(Chapter) > 부(Part) > 관(Sub-part) 순서로 정렬됨
 자료: 관련법령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chapter-4>,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part-351/subpart-B>, 검색일자: 2022. 7. 6

2) 무역구제 담당기관

- 반덤핑조치와 관련된 무역구제기관은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임
 - 상무부는 국제무역을 증대시키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중앙 행정기관임
 - ITC는 1916년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제무역과 관세에 대한 정보 제공과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연방독립기관임⁵⁷⁾

57)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지만 위원 임명에 상원 동의를 필요(민주당 3, 공화당 3)하다는 점에서 준사법적 기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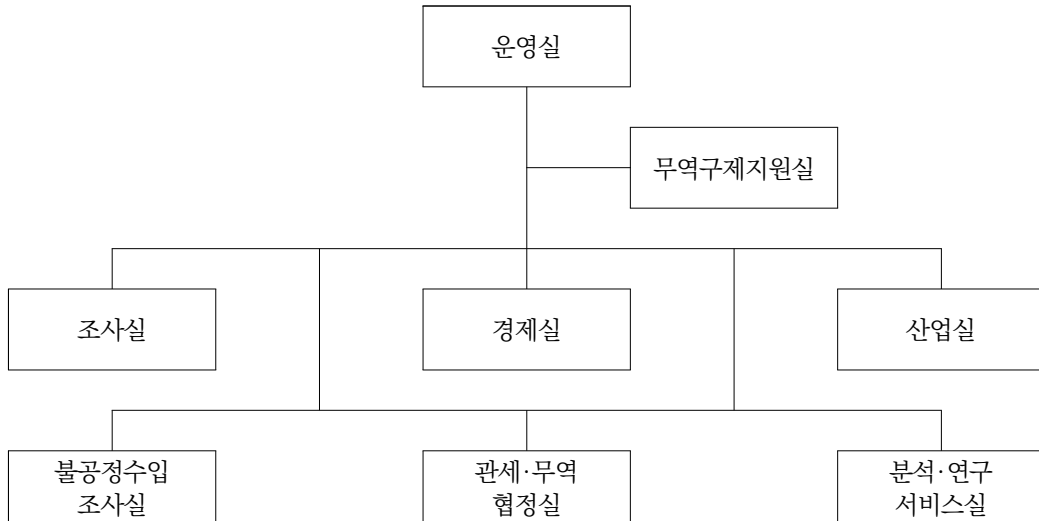
42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미국 상무부 중에서도 무역구제와 관련된 실무는 상무부의 차관 책임하에 있는 국제 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이하 ITA)에서 담당함⁵⁸⁾
 - ITA의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국(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y Operations)의 주요업무는 반덤핑조사 및 덤핑률 산정 등임
 - 구체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업무, 덤핑 및 보조금의 존재 유무 조사, 관세율 산정, 국내산업에 대한 지원 업무 국내산업(특히 중소기업) 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위한 조사 신청 시 증거의 충분성 등 법적 제소요건과 관련한 업무 지원, 국제무역규범에 관한 협상 과정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ITC에서 반덤핑재심과 관련한 산업피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운영실임
 - 운영실의 업무 범위는 법이 정하는 모든 조사업무, 연구업무 및 위원회에 부과된 특정의 사업을 개시·감독하며, 완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간행물을 발간함
 - 운영실은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대외관계실에 있던 무역구제지원실이 운영실로 이관됨
 - 운영실은 무역구제지원실(Trade Remedy Assistance Office), 조사실(Office of Investigations), 경제실(Office of Economics), 산업실(Office of Industries), 불공정수입조사실(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 관세·무역협정실(Office of Tariff Affairs and Trade Agreements), 분석·연구서비스실(Office of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로 구성됨

58) 미 상무부는 장관, 부장관 각 1명, 차관 5명으로 구성됨.

[그림 III-1] ITC 운영실 조직도



자료: ITC 홈페이지, https://www.usitc.gov/press_room/documents/usitc_organization_chart.pdf,
 검색일자: 2022. 7. 29.

- 미국의 ITC 예산보고서(Budget Justification 2022)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전체 운용인력은 403명이며, 피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실이 전체인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ITC 전체인력 403명 중 193명이 운영실에서 근무함
 - ITC는 전체인력을 460명까지 증원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 인력 역시 225명으로 증원할 계획을 세움

- 예산 측면에서 2021년 기준 ITC 전체 예산은 103,350,000달러이며, 그중 62.9%인 64,999,000달러가 무역구제 조사에 배정됨
 - 64,999,000달러는 2022년 8월 23일 고시환율(약 1,339.8원) 적용 시 약 870억 정도임

〈표 III-8〉 ITC 인력 운용 현황

(단위: 명)

부서	운용인력(2021)	계획 인력(2022)
위원(Commissioners)	29	38
대외관계(External Relations)	4	4
감사(Inspector General)	3	4
법률고문(General Counsel)	46	53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s)	24	26
평등고용추진위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2	2
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34	38
합계	142	165
운영(Operations)	5	6
분석·연구 서비스실 (Office of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	23	28
조사실(Investigations)	28	31
불공정수입조사실(Unfair Import Investigations)	24	25
경제실(Economics)	36	44
관세·무역협정실 (Tariff Affairs and Trade Agreements)	14	14
산업실(Industries)	63	77
합계(운영)	193	225
최고재무책임자 및 내부통제 (Chief Financial Officer & Internal Controls)	8	7
예산(Budget)	3	3
재무(Finance)	6	6
조달(Procurement)	6	6
합계(재무)	23	22
행정(Administrative Services)	5	5
인사(Human Resource)	10	12
보안지원(Security and Support Services)	10	11
비서(Secretary and Dockets)	20	20
합계(행정지원)	45	48
총합계	403	460

자료: USITC 예산보고서(2022), https://www.usitc.gov/documents/fy_2022_congressional_budget_justification.pdf, p. 58

〈표 Ⅲ-9〉 ITC 예산(2020-2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무역구제조사						
수입피해	32,391	31.9%	34,496	33.4%	41,389	34.8%
불공정수입	29,277	28.8%	30,503	29.5%	35,744	30.1%
관세, 무역, 경쟁력 관련 분석과 정보						
산업 및 경제 분석	23,395	23.0%	29,545	28.6%	32,319	27.2%
관세, 무역, 정보 서비스	12,414	12.2%	3,227	3.1%	3,468	2.9%
무역정책지원	4,148	4.1%	5,579	5.4%	5,922	5.0%
합계	101,625	100.0%	103,350	100.0%	118,842	100.0%

자료: USITC 예산보고서(2022), https://www.usitc.gov/documents/fy_2022_congressional_budget_justification.pdf, p. 58

- 반덤핑 부과조치에 대한 재심 시 덤핑 또는 산업피해가 지속·발생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양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판정함

- 두 기관 모두 무역구제를 위한 기관이나 ITC가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한다면, 피해 조사를 통한 덤핑판정 및 마진율 산정은 상무부 권한이라는 차이가 있음
 - 반덤핑재심을 위한 조사개시는 상무부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ITC가 산업피해 판정, 상무부가 덤핑 여부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은 상호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무부와 ITC가 덤핑과 산업피해에 대해 모두 긍정 판정을 내리는 경우 반덤핑명령은 유지되며 한 기관이라도 부정 판정을 내릴 때는 반덤핑명령이 철회됨

나. 상황변동재심사(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1) 신청주체 및 개시요건

- 상황변동재심의 신청주체는 조사대상자와 그가 속한 나라의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조사대상물품 제조자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임⁵⁹⁾
- 상황변동재심 개시요건은 이해관계자가 반덤핑 최종 판정 또는 조사 정지에 대해 재심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동을 제시한 경우임⁶⁰⁾
- 상무부는 기존 판정을 종료할 충분한 상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심을 개시할 수 있음
 - 단, 상무부는 원심조사 종료 후 24개월 내에는 덤핑 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한 상황변동재심 신청이 제한됨
 - 상황변동재심조사 신청기한이 제한되는 이유는 원심조사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자동 개시되는 연례재심사를 통해 조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임
- 재심신청자는 충분히 변화된 상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⁶¹⁾
 - 재심신청자는 반덤핑관세 명령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기 때문에 입증 책임 역시 재심신청자가 부담함
 - 단, 변화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최종판정이나 조사정지 공고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상황변동재심사를 개시하지 못함⁶²⁾

59) 19 USC 1675(b)(1).

60) 19 USC 1675(b)(3).

61) 19 USC 1675(b)(3).

62) 19 USC 1675(b)(4).

2) 원심절차의 적용 여부

- 상황변동재심의 경우 조사를 위한 입증 증거 제출의 종류는 원심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원심과 달리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⁶³⁾
 - 원심조사와 비교해 조사개시 시점, 제출 자료의 기한이 다름
 - 단, 입증 증거의 종류는 원심과 상황변동재심사에 동일하게 적용됨

- 상황변동재심 관련 규정은 조사와 입증에 관해 설명하고 있지만, 상황변동재심을 적용할 유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음
 - 재심은 상황변동을 신청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상황변동재심은 원심과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있고, 그러한 상황변동이 반덤핑 관세 명령의 부과로 인한 자연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며 반덤핑명령 철회 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이 불가능함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진행된다고 규정함

- 상황변동재심사의 목적은 덤핑률의 변경보다는 반덤핑조치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덤핑률이 변경해 재산정하는 것은 연례재심사에서 이뤄짐

3) 덤핑 및 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 우선 상무부가 관할하는 덤핑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정 요건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하지만 상황변동재심 사례를 통해 상황변동재심 유형과 재심에 적용되는 덤핑판정 요소에 대해 추정할 수 있음⁶⁴⁾

63) 19 CFR 351.216.

- 구체적으로 상황변동이 인정되는 상황은 수출자의 덤핑 수출 중단, 시장변화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제거되었거나 회사명의 변경, 신기술개발로 제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음
- [사례1] 다른 수출국의 반덤핑조치 비적용으로 인한 상황변동재심⁶⁵⁾
 - 미 상무부는 2020년 5월 인도와 그리스산 대형구경강관 중 특정 4개 품목을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한국산 대형구경강관 반덤핑 부과 명령에 4개 동일품목이 있어 반덤핑관세 조치를 철회하고자 국내업체가 상황변동재심을 요청함
 - 판정 시 고려 요소는 국내 및 수출국 산업의 상황 및 추세, 해당 산업의 가격 추세, 외국업체가 덤핑 없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 현금흐름, 재고수준, 3년간 덤핑마진 부재, 향후 덤핑을 하지 않겠다는 증명, 덤핑행위 발생 시 반덤핑명령 재부과에 동의한다는 증명 등이었음
- [사례2] 상호변경이라는 변동사항으로 인한 상황변동재심⁶⁶⁾
 - 동종업에 있는 우리나라 A업체, B업체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조사 결과 각각 다른 관세 마진이 부과(A<B)됨. 이후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업체는 상호명을 변경함. 이에 A 업체는 B에 적용되었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위험에 처했고, A업체는 상황변동재심을 신청하였음
 - 상황변동재심의 주요 판정기준은 승계로 인한 동일인 여부와 조사대상물품의 변동이었으며, 구체적으로 경영진의 변동(Change in Management), 생산설비의 변동(Change in Production Facilities), 공급자 관계의 변동(Change in Supplier

64) 상무부 ITA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ACCESS 사이트는 미국의 반덤핑재심 사례 제공. 무료회원 가입 후 제소장, 조사개시문, 질문서, 예비판정문, 최종판정문 등 조회 및 자료 열람이 가능함. <https://access.trade.gov/login.aspx?ReturnUrl=%2fpublic%2fhome.aspx>.

65) 사건번호 A-580-897, <https://access.trade.gov/public/searchresults.aspx?btn=qs> 또는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7/10/2020-14920/large-diameter-welded-pipe-from-the-republic-of-korea-initiation-and-expedited-preliminary-results>, 세아제강: 27.42%(AFA 적용), 현대제철: 0.4%(미소마진), 휴스틸: 0.01%(미소마진), 기타: 9.29%.

66)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and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사건번호 A-580-878), <https://access.trade.gov/public/searchresults.aspx?btn=qs>, 검색일자: 2022. 7. 22.

Relationships), 소비자 관계의 변동(Change in Customer Base)을 검토해 동일인이라 판정됨

- 판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무부와 달리, 상황변동재심 시 ITC가 판단하는 피해 가능성에 대한 판정 기준은 규정되어 있음
 - ITC는 상황변동재심사를 위한 덤핑판정 시 반덤핑명령이 철회됐을 때 다음 사항을 판정 기준으로 함⁶⁷⁾
 -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가격약속이 대상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종식하고 있는지
 - 조사를 하지 않을 때 실질적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 구체적으로 판정을 위한 고려 요소는 물량, 가격효과, 반덤핑명령의 폐지 또는 조사정지의 종료 시 대상상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임⁶⁸⁾
 - 물량, 가격효과, 반덤핑명령의 부과 또는 조사정지 전 대상상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포함한 피해 판정
 - 반덤핑명령 또는 조사정지와 관련된 산업의 상황이 개선되었는지 여부
 - 반덤핑명령의 폐지 또는 조사정지의 종료 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기 쉬운지 여부
 - 종료재심사 절차에서 관세 흡수에 대한 상무부의 판정이 있음

4) 재심사기간

- 상황변동재심은 반덤핑조치가 종료되기 전인, 반덤핑판정 후 5년 안에 반덤핑조치를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재심사 대상 조치는 지속·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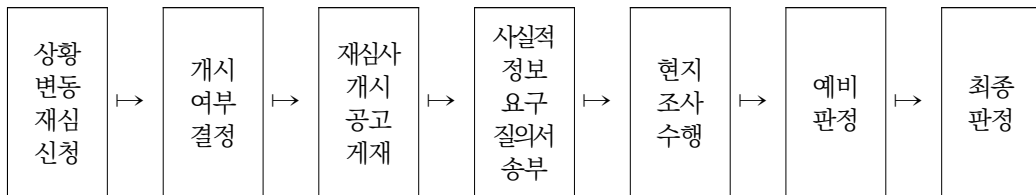
67) 19 USC 1675(b)(2).

68) 1675a(a)(1).

50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상무부는 상황변동재심사 신청서가 제출된 후 45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
- 상무부의 경우 270일 내에, ITC의 경우 120일 내에 상황변동재심사를 종료해야 함
- 상황변동재심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270일 내에 최종판정을 내리며, 만약 당해 절차에 참가한 모든 당사자가 재심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45일 내 최종판정을 내림⁶⁹⁾

[그림 III-2] 상황변동재심사 절차도



자료: 19 CFR 351.216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다. 연례재심사(Periodic Reviews)⁷⁰⁾

1) 신청주체 및 개시요건

- 연례재심의 신청주체는 원심 제소자, 대응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자이며 상무부 직권으로도 개시 가능함⁷¹⁾
 - 연례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미국 국내의 이해관계자와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 명령을 받은 자 및 해당 국가의 정부 등이 포함됨⁷²⁾

69) 19 CFR 351.216(e).

70) 법령에 기재된 공식 명칭은 주기재심(periodic review)이지만, 매년 한 차례씩 실시되므로 통상 연례재심으로 부름.

71) The Act Section 751(a)(1).

72) 19 CFR 351.213(b).

- 개시요건과 관련해서 상황변동재심이 반덤핑관세 조치 중 상황이 변동되어 덤핑을 판단하는 것과 달리, 연례재심은 미국의 소급적 관세 부과방식에서 기인해 덤핑마진을 재산정한다는 특징이 있음
 - 미국의 관세 예치 시스템은 수출기업이 일반적인 관세를 책정해 미국 국경관리청(우리나라 관세청)에 수출계약기간만큼의 관세를 미리 예치해 두는 것으로, 이는 미국만의 독특한 관세 정산법임
 - 연례재심은 매년 관세를 조정하고 정산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반덤핑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있음

- 연례재심은 신청인 또는 직권에 따른 조사개시가 있었다라도 재심사대상기간에 조사대상상품의 통관, 판매가 없다고 판단되면 연례재심사를 철회할 수 있음⁷³⁾
 - 연방관보에 반덤핑 연례재심 전부 혹은 부분 철회 공고를 게시함

2) 원심절차의 적용 여부

- 원심은 상무부와 ITC 양 기관의 조사가 있지만, 연례재심은 ITC의 산업피해조사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임
 - 원심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현지실사가 이루어지지만, 연례재심의 경우에는 매년 실사를 수행하지는 않음
 - 원심 현지실사 시 특별한 상황은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창궐 등임
 - 단, 최근 2년간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제소자측의 요구가 있으면 실사가 시행됨
 - 원심의 경우 예비판정 이후에 실사를 수행하지만, 재심의 경우에는 예비판정 이전에 수행하는 때도 있음

- 또한 원심이 제소 측 이해관계자나 담당기관이 심사를 신청하는 것과 달리, 재심은 수출자와 제소자 양측 모두 신청 가능함

73) 19 CFR 351.213(d).

52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재심은 제소 측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며, 수출자 측에서는 덤핑률을 수정할 기회가 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연례재심에 조사개시 절차와 요건 및 미소마진 등은 협정에 규정한 바 없다고 간주해 재심에서는 미소마진을 0.5% 적용함
 - 원심 상 미소마진은 2%지만, 연례재심에서 0.5%로 그 기준을 강화함
 - 다른 국가들은 모두 원심에서 마찬가지로 2%의 마진을 미소마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첫 연례재심 조사대상기간은 일반적으로 예비판정과 반덤핑관세 명령의 1주년 사이의 기간을 포함해 16~18개월임
 - 두 번째 및 이후의 모든 재심은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반덤핑명령이 내려진 날 (Anniversary Month)의 직전 12개월임
 - 재심 명령이 2003년 2월에 공보에 올랐다면 2차 재심기간은 2004년 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임⁷⁴⁾
 - 반면, 원심은 청원 접수 한 달 전을 기준으로 직전 4분기 동안 판매된 상품을 조사함⁷⁵⁾
 - 예를 들어 청원이 2022년 2월 20일에 접수된 경우, 2021년 4분기를 조사함
 - 단, 비시장경제 조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완료된 2분기를 조사함
- 또한 재심에서는 부과액이 재산정되기 때문에 재심 시점에서 비용변동사항을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음
 - 재심에서 부과액을 산정할 때 조사대상 기간의 변동된 사항들이 반덤핑관세 부과액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심 시점에서의 판정 또한 조사개시 시점에서의 판정 못지않게 중요함

74) 19 CFR 351.213(e).

75) 19 CFR 351.204(a), (b).

3) 덤핑 및 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 연례재심의 덤핑판정상 가장 큰 특징은 산업피해조사가 없다는 점이며, 연례재심의 목적이 덤핑의 재발 가능성을 판단해 덤핑률을 재산정한다는 점임
 - 원심은 상무부와 ITC에서 각각 덤핑과 산업피해 판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례재심은 덤핑 조사를 통해 덤핑률을 재산정하는 것이 목적임

- 상무부는 반덤핑명령의 적용 대상 물품의 모든 수출업자나 생산자가 당해 상품을 최소 3년간 연속적으로 정상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였는지를 고려함⁷⁶⁾
 - 연례재심은 피해조사가 없으며, 상무부가 덤핑 재발 및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를 지속하거나 철회시킴
 - 3년 연속으로 0.5% 미만의 미소 덤핑마진 판정을 받고 앞으로 덤핑 수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무부가 판단하는 경우 연례재심사를 종결시킴

- 연례재심에서 상무부가 관할하는 덤핑의 지속이나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정은 덤핑 부과대상인 다른 수출자들의 덤핑 지속 비율에 따라 결정됨
 - 연례재심은 덤핑마진 산정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피해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임

- 연례재심은 조사를 요청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진행되며, 연례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재심 없이 원심 때 결정된 현금예치율로 확정됨
 - 상무부는 의무답변자를 선정할 때 통상 조사가 요청된 수출자 중 물량이 가장 많은 두 업체를 의무답변자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정산율을 계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⁷⁷⁾
 - 조사요청이 들어온 나머지 수출자는 물품에 대해 의무답변자의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정산율을 계산함

76) 19 CFR 351.222(b).

77) 미 상무부, 「Less-Than-Fair-Value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Selection of Respondents for Individual Examination」, 2020, 7., pp. 4~5.

4) 재심사기간

- 연례재심 상 반덤핑조사 대상기간(POR; Period of Review)은 반덤핑명령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임⁷⁸⁾
 - 만약 반덤핑명령이 2022년 8월에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다면, 재심의 조사대상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임
 - 1차 연례재심 조사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신청하기 바로 전달 마지막 날까지임
 - 1차 연례재심이 개시된 후 1년 후 2차 연례재심이 개시되는데 조사대상기간은 1차 조사대상기간 이후의 1년임

- 연례재심은 일반적으로 재심사개시 공고 게재 이후부터 최종판정까지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됨
 -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은 재심이 요청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45일 이내에 결정됨
 - 관리 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검토가 요청된 명령, 발견 또는 정지 계약의 공표일 기념일이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45일 이내에 제1항의 (A), (B) 또는 (C)항에 따라 예비 결정을 내림
 - 예비 결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최종 결정을 내림
 - 상기 시간 내에 검토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관리 당국은 그 245일의 기간을 365일로 연장할 수 있음
 - 관리 당국은 예비 결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러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예비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결과가 관보에 게재되면 관세청은 원심으로 인해 정산 중지된 물품을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정산함

78) 19 USC 1675(a)(1).

- 정산율이 원심 현금 예치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반환하고, 정산율이 원심 현금 예치율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함
 - 반환 또는 징수되는 차액에는 이자가 붙는데, 미국 국세청이 발표하는 단기금리를 적용함
 - 1차 연례재심 때 계산된 정산율은 새로운 현금 예치율이 되는데, 이 현금 예치율은 해당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됨
- 최종판정 이후에는 변경된 관세율로 예치해야 함
- 당해 연례재심의 재심대상기간 기존에 예치했던 관세액은 최종판정 시 결정된 관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뒤 차액을 정산함
 - 예비판정단계에서 관세 예치율, 정산율은 변동 없음

〈표 Ⅲ-10〉 연례재심사 일정표

일자	일정	규정
0	재심요청	351.213(b) (반덤핑명령이 내려진 달의 마지막 날)
30	재심사개시 공고 게재	351.221 (c)(1)(i)
37	행정보호명령	351.305(b)(3)
60	반덤핑관세 흡수 조사요청	351.213(j) (조사개시공고를 게재한 후 30일 내)
66	불충분한 응답	351.301(c)(2)(iv) (최초 질문지를 영수한 날로부터 14일 후)
66	Section A 응답	None
85	응답의 충분성 논의	351.301(d)(1) (40 days after date of transmittal of initial questionnaire)
90	Sections B, C, D, E 응답	351.301(c)(2)(iii) (최초 질문지 영수일로부터 최소 30일 뒤)
110	가격 협의	351.301(d)(2)(i)(B) (관련 섹션 제출 20일 뒤)
120	재심요청 철회	351.213(d)(1) (조사개시공고를 게재일로부터 90일 뒤)

〈표 III-10〉의 계속

일자	일정	규정
130	실사요청	351.307(b)(1)(v) (조사개시공고를 게재일로부터 100일 뒤)
140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 제출	351.301(b)(2)
245 (연장 가능)	예비판정	351.213(h)(1)
272	공개적 이용 가능 정보 제출(NME's)	351.301(c)(3)(ii)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20일 뒤)
282	청문회 요청	351.310(c); 351.310(f)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30일 뒤)
282	서면 제출	351.309(c)(1)(ii)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30일 뒤)
287	반박서면 제출	351.309(d)(1) (서면제출 마감일 5일 뒤)
289	공청회	351.310(d)(1) (반박서면 제출일로부터 2일 뒤)
372 (연장가능)	최종판정	351.213(h)(1) (예비판정일로부터 120일 뒤)

주: 행정보호명령: 미국 상무부나 ITC가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에 대하여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법적 제도[출처] [용어] AD/CVD 관련 용어
 자료: 19 CFR 351,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appendix-Annex_IV_to_part_351,
 검색일자: 2022. 8. 1.

라. 일몰재심사(Sunset Reviews)

1) 신청주체 및 개시요건

- 미국은 종료재심사를 일몰재심이라고 부르는데, 일몰재심은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이 발동된 후 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적인 재심사임⁷⁹⁾
 - 일몰재심이란 반덤핑조치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동 명령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심사를 의미함

79) Section 751(c)(1).

- 일몰재심은 상무부와 ITC의 종료재심사 개시공고 후,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시작되므로, 이해관계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재심이 개시되는 것임⁸⁰⁾
- 상무부는 반덤핑명령 또는 조사정지의 부과 후 5년이 지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연방관보에 재심사개시공고를 게재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출서류를 요구함
 - 이해관계자는 미국 내의 국내 동종상품 제조업체, 생산업체 또는 도매업체, 미국 내의 국내 동종상품 제조, 생산 또는 도매에 종사하는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 또는 노동자그룹, 다수 회원들이 미국 내의 국내 동종상품 제조, 생산 또는 도매에 종사하는 무역 또는 경영협회, 다수 회원들이 국내 동종상품과 관련하여 위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회 등임⁸¹⁾
 - 제출서류는 상무부와 위원회에서 요구한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재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한 입장, 반덤핑명령의 폐지 또는 조사정지의 종료 시 발생 가능한 효과와 관련된 입장, 상무부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기타 정보 또는 산업데이터 임⁸²⁾
- 상무부의 개시공고와 ITC의 필요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재심사가 개시됨
 - 일몰재심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반덤핑명령은 자동 종료됨
- 미국은 일몰재심사를 개시할 때 이해관계자의 제출 자료 충분성 여부에 따라 신속 일몰재심과 정식 일몰재심으로 구분해 운영 중임
 -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신속 일몰재심(expedited sunset review)이 적용되며, 충분한 수의 수출자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정식 일몰재심이 이뤄짐

80) 진성백, 「최근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조사 재심 시 산업피해 여부 주요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Vol. 57, 2016, p. 134.

81) 19 USC 1677(9)(C)-(F), 19 USC 1677(9), 마광, 「미국 반덤핑법상의 행정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월간법제』, 2006권 12호, 2006, p. 75.

82) 19 USC 1675(c)(2), 19 CFR 351.218(c)(1).

- 개시공고의 게재 전 5년에 거쳐 대상상품의 대미수출이 전반 수출물량 중 평균 50% 이상을 차지하는 피소 이해관계자로부터 완전하고 실질적인 응답을 받았다면, 피소 이해관계자가 개시공고에 대해 충분한 응답을 한 것으로 간주함⁸³⁾
 - 긴급일몰재심을 시행한다는 것은 조사 참여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답변이 부적절 (inadequate)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결국 반덤핑 판정을 내린다는 의미임
- 만약, 피소 이해관계자가 재심사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명령의 폐지 또는 조사정지의 종료 시 당해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해야 함⁸⁴⁾
- 상무부가 전반적 명령 차원에 기반해 종료재심사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생산자들의 경우 반덤핑명령의 부과기간 중 덤핑을 종식하지 않았을 것이라 예측되며, 따라서 상무부는 반덤핑명령의 폐지 시 덤핑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함

〈표 III-11〉 일몰재심사 유형과 특징

	유형	판정 기간
일 몰 재 심	자료 제출이 없을 경우	심사 시작일로부터 90일 내 판정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신속일몰재심(Expedited Review) 시작 상무부 심사 시작일로부터 120일, 위원회 심사 시작일로부터 150일 내 판정
	자료가 충분한 경우 상무부 정식재심사의 최종 판정	정식일몰재심(Full Review) 시작 정식일몰재심사 심사 시작일로부터 240일 (120일 추가 연장 가능)

자료: KITA,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countryProcedureDetail.do?proNo=217>, 검색일자: 2022. 7. 13. 및 19 USC 1675(c)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83)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관련 WTO 분쟁사례 분석』, 2010, p. 172.

84) 19 USC 1675(c)(4), 19 CRF 351.218(d)(2)(i).

2) 원심절차의 적용 여부

- 반덤핑조사를 최초로 개시할 때 조사개시 신청은 수입국 직권이나 수입국 제소자가 하지만, 재심은 제소자와 수출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 수출자는 반덤핑관세율을 갱신하거나 종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심 조사를 신청함
- 원심과 달리, 일몰재심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반덤핑명령은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미국은 법으로 일몰재심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함
 - 종료재심사 자동 개시는 미국에만 해당하며, 다른 국가들은 종료재심사의 개시에 대한 요청이나 직권을 행사할 때 이루어짐
 - 일몰재심이 생겨난 배경은 반덤핑제도가 지속되면서 수출기업의 피해가 지속되자 반덤핑 부과명령이 내려진 후 5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협정이 생기면서부터임⁸⁵⁾
- 원심에서는 ITC에서 발생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만, 일몰재심사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조사한다는 차이가 있음
 - 원심은 최초의 심사로 현지실사, 심사 범위 등에서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재심은 원심보다 비교적 완화된 심사가 이루어짐
- 원심에서는 개별 회사들에 대해 각각 판정을 내리지만, 일몰재심에서는 전체 회사들에 대해 연장 여부 판정을 내림
- 화폐변환(currency conversion)에 있어 재심에서 지속적인 환율변동(sustained movement)을 인정하지 않음⁸⁶⁾
 - 반면, 원심 조사기간에 환율변동은 원칙적으로 무시되어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차

85) 미국의 일몰재심과 관련한 법령은 1995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됨.

86) 19 CFR 351.415(d).

60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이는 덤핑마진에 반영되지 않으나, 지속적인 환율변동(sustained movement)일 경우에는 수출자가 환율조정기 내에 수정 요청할 시 덤핑마진 산정에 포함됨⁸⁷⁾

3) 덤핑 및 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⁸⁸⁾

- 연방법에 따라, 덤핑 및 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판단할 때 철회나 종료에 따른 영향이 임박하지 않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⁸⁹⁾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관한 법률 행정조치문(SAA)에서 가능성 기준(Likelihood standard)에 따라 예측 가능한 미래에 현재의 중요 변화의 영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능성 기준은 미래에 대한 판정임
-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부과 후 미소마진 이상의 덤핑이 지속되는 경우, 대상상품의 수입이 정지된 경우, 대상상품의 수입물량이 상당히 감소하면 덤핑이 존재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함⁹⁰⁾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정 시 수입량, 가격,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며 한국산 유정용강관 사례에서 재심 시 수입량 감소를 이유로 덤핑지속 판정함
 - 구체적으로 (i) 반덤핑명령 또는 중지 합의가 있기 전의 물량, 가격 및 산업에 대한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의 영향을 포함한 이전 조사 결과와 (ii) 산업의 어떤 개선이 명

87) 화폐변환이란 반덤핑 마진은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공통의 화폐 단위에서 비교하여 얻은 차이를 말한다. WTO 반덤핑협정은 가격 비교의 목적으로 화폐가치의 변환이 필요할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 당국이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화폐변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덤핑마진 계산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덤핑마진 판정이 WTO 반덤핑협정 2.4항의 위반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 특히, 반덤핑 마진의 왜곡된 계산은 환율변동이 심할 경우에 더욱 크게 발생함. 김종범,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4.

88) 19 USC 1675a(c).

89) 19 USC 1675a(a)(5).

90) 19 USC 1675(c)(1), Sunset Review Policies>II. Sunset Reviews in Antidumping Proceedings> A. Determination of Likelihood of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2. Basis for likelihood determination, Consistent with the SAA at 879, and the House Report at 56, the Department will make its determination of likelihood on an order-wide basis.

령 또는 중지 합의에 의한 것인지 (iii) 명령 또는 중지 합의가 취소 또는 종료되었을 때 산업이 실질적 위험에 대해 취약한지 여부 및 (iv) 반덤핑 사건의 경우 관세 흡수에 대한 상무부의 판정을 검토함

- (한국산 유정용강관 사례)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반덤핑명령 또는 중지 합의가 있기 전의 물량, 가격 및 산업에 대한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영향을 포함한 이전 조사 결과에 따라, 원심 이후 미소마진 이상의 덤핑이 유지되었고 수입량이 감소한 것을 이유로 덤핑이 지속 또는 재발할 것이라고 판정함

〈표 III-12〉 덤핑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정 기준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정 Determination of likelihood of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
(c)	(1) 일반조항(In general)
	(2) 기타요소의 고려(Consideration of other factors)
	(3) 덤핑마진의 크기(Magnitude of the margin of dumping)
	(4) 특별규칙(Special rule)

자료: 19 USC 1675a(c),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5a>, 검색일자: 2022. 7. 19

-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해 판정할 때 수입물량, 가격효과, 산업에 대한 영향, 경쟁조건과 산업주기를 검토함⁹¹⁾
 - 수입물량의 경우 수입물량의 수준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⁹²⁾
 - 수출국에서 생산능력의 증가 가능성 또는 현존 유희생산능력의 증가 가능성
 - 대상상품의 현재 재고상황 또는 예상되는 재고의 증가 가능성
 -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수입장벽
 - 현재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설비의 대상제품으로의 생산전용능력

91) 19 USC 1675a(a)(1).

92) 19 USC 1675a(a)(2).

62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 대상수입품에 대한 가격효과의 발생 가능성은 미국 내 동종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대상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어 미국 내 동종상품의 큰 가격하락을 가져오거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함⁹³⁾
 - 다음은 대상상품 수입으로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성 평가 시 고려 요소임⁹⁴⁾
 - 생산, 판매,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률, 설비가동률 등의 감소 가능성
 - 현금흐름,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력에 있어 발생 가능한 부정적 효과
 - 생산량, 매출, 시장점유율, 이익, 생산성, 투자 수익의 감소 가능성, 현금흐름,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조달 능력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경쟁조건과 산업주기는 국내 유사제품의 파생상품 또는 그 이상의 고급형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포함한 업계의 기존 개발 및 생산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경제적 요인 등임
- 중국산 Hand Trucks 사례를 살펴보면, 2차 일몰재심사에서 수입량 변동을 근거로 산업피해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덤핑이 지속된다고 판정함
- 구체적으로는 중국산 물품의 물량이 원심 이후로 상당히 증가한 후 유지되고 있는 점, 중국의 대상 산업의 생산능력을 고려해 봤을 때 생산을 빨리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 미국이 중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서 매력적인 점 등을 들어 명령이 철회될 경우, 중국 생산자들이 미국으로 상당한 추가 물량을 수출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긍정 판정을 내림⁹⁵⁾

93) 19 USC 1675a(a)(3).

94) 19 USC 1675a(a)(4).

95) 주현수·진성백,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조사 종료재심 시 산업피해 재발 가능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공정무역연구』 통권 56호, 2018. 12., p. 47.

〈표 III-13〉 산업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정 기준

실질적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정 Determination of likelihood of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material injury	
(1) 일반조항(In general)	
(2) 수입량(Volume)	수출국에서 생산능력의 증가 가능성 또는 현존 유휴생산능력의 증가 가능성
	대상상품의 현재 재고상황 또는 예상되는 재고의 증가 가능성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수입장벽 현재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설비의 대상제품으로의 생산전용 능력
(3) 가격(Price)	미국 내 동종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
	대상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어 미국 내 동종상품의 큰 가격하락을 가져오거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a) (4) 산업에 대한 영향 (Impact on the industry)	생산, 판매,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률, 설비가동률 등의 감소 가능성
	현금흐름,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력에 있어 발생 가능한 부정적 효과
	생산량, 매출, 시장점유율, 이익, 생산성, 투자 수익의 감소 가능성, 현금흐름,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조달 능력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5) 판정의 기초(Basis for determination)	
(6) 덤핑마진과 조치가능보조금 순액 및 본질(Magnitude of margin of dumping and net countervailable subsidy; nature of countervailable subsidy)	
(7) 누적평가 (Cumulation)	ITC는 수입 물품이 상호 간 및 국내 동종물품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당해 물품들에 대한 재심사가 같은 날 개시되었을 경우 누적적 평가 시행
(8) 지역적 산업에 대한 특별규칙(Special rule for regional industries)	

자료: 19 USC 1675a(a),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75a>, 검색일자: 2022. 7. 19

□ 덤핑 및 산업피해 판정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덤핑 및 피해의 지속 가능성과 재발 가능성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고,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4) 재심사기간

- ITC는 일몰재심 개시일로부터 95일 이내에 종료재심의 종류를 정하고, 만약 정식일몰재심으로 확정되면 상무부는 조사개시일 이후 11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24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함
 - 긴급일몰재심의 경우 상무부 최종판정은 조사개시 이후 120일 이내에 결정되며, ITC의 최종판정은 150일 이내에 이뤄짐

- 90일 재심 일정은 재심에 참여하는 국내 이해관계자가 없을 때 연방관보에 조사개시공고를 게재한 후 20일 내로 ITC에 사실을 통보하며, 사실통보로부터 90일 내에 반덤핑명령의 폐지 또는 조사정지의 종료에 대한 최종판정이 게재됨⁹⁶⁾
 - 일몰재심사 참여 의도를 통보하지 않은 국내 이해관계자는 재심사에 참가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상무부는 동 재심사기간 동안 당해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상무부로부터 요구받지 않은 의견에 대해 접수 또는 고려하지 않음
 - 만약 상무부가 국내 이해관계자의 응답을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개시공고에 대해 완전하고 실질적인 응답을 제출하는 기타 국내 이해관계자도 부재한 경우, 개시공고에 응답한 국내 이해관계자가 없다고 결론짓고 개시공고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일반적으로 40일 내 서면으로 위원회에 그러한 내용을 통보하며, 개시공고의 게재 후 90일 내 명령의 폐지 또는 조사정지의 종료에 관한 최종판정을 제출함

96) 19 CFR 351.218(c), 351.218(d)(1)(iii)(B)(2), 351.218(d)(3)(i), 351.218(d)(3)(vi), 351.218(d)(4), 351.218(e)(1)(i)(C)(2), 351.218(d)(1)(iii)(B)(3), 351.222(i)(1)(i).

〈표 III-14〉 90일 재심사 일정표

일자	일정	해당 규정
0	재심 요청	§ 351.218(c)
15	국내 이해관계자의 재심사 참가의사 통보	CFR 351.218(d)(1)(i) (조사개시공고를 게재한 후 15일 내)
20	조사개시공고에 응답한 국내 이해관계자가 없음을 통보	CFR 351.218(d)(1)(iii)(B)(2) (조사개시공고를 게재한 후 20일 내)
30	국내 조사대상물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실질적 답변서 제출	CFR 351.218(d)(3)(i) and 351.218(d)(3)(vi) (조사개시공고를 게재한 후 30일 내)
35	제출된 실질적 답변서에 대한 반박 주장 제출	CFR 351.218(d)(4) (상무부에 실질적 답변서 제출후 5일 내)
40	조사개시공고에 응답한 국내 이해관계자가 없음을 결정	CFR 351.218(e)(1)(i)(C)(2) (조사개시공고가 게재된 후 40일 내)
90	명령의 폐지 또는 조사정지의 종료에 관한 최종판정	CFR 351.218(d)(1)(iii)(B)(3) and 351.222(i)(1)(i) (조사개시공고가 게재된 후 90일 내)

자료: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appendix-Annex_VIII-A_to_part_351, 검색일자: 2022. 7. 20.

- 신속일몰재심은 조사개시에서 종료까지 120일 정도 소요됨
 - 신속일몰재심은 이해관계자가 재심사개시에 대해 불충분한 응답을 할 때 이루어지며, 상무부는 재심사개시 후 120일 내에, ITC는 150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 없이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해 최종 판정함

- 응답의 완전성이란 신속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완성도를 의미함
 - 이해관계자들은 상무부의 신속일몰심사 수행에 대해 재심사개시 후 70일 내에 재심사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표 III-15〉 신속재심사(Expedited Review) 일정표

일자	일정	규정
0	조사개시	CFR 351.218(c)
15	국내 이해관계자의 재심사 참가의사 통보	CFR 351.218(d)(1)(i) (조사개시공고를 게재한 후 15일 내)
30	피소 이해관계자의 포기주장 제출	CFR 351.218(d)(2)(i) (조사개시공고를 게재한 후 30일 내)
30	국내 조사대상물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실질적인 답변서 제출	CFR 351.218(d)(3)(i) and 351.218(d)(3)(vi) (조사개시공고를 게재한 후 30일 내)
35	제출된 실질적 답변서에 대한 반박 주장 제출	CFR 351.218(d)(4) (상무부에 실질적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5일 내)
50	조사에 대한 피소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있는 경우 통보	CFR 351.218(e)(1)(ii)(C)(1) (조사개시공고를 게재한 후 50일 내)
70	신속일몰재심의 답변 적합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견	CFR 351.309(e)(ii) (조사개시공고를 게재한 후 70일 내)
120	조사에 대한 피소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답변 제공 발생 시 긴급일몰재심 최종판정	CFR 351.218(e)(1)(ii)(B) and 351.218(e)(1)(ii)(C)(2) (조사개시공고를 게재한 후 120일 내)

자료: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appendix-Annex_VIII-A_to_part_351, 검색일자: 2022. 7. 21.

- 정식재심사는 조사개시에서 종료까지 240일 정도 소요됨⁹⁷⁾
 - 상무부는 일몰재심사 개시공고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및 피소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응답을 접수한 후에 전반적 재심사를 수행함
 - 기한은 상무부가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120일 더 연장될 수 있음⁹⁸⁾

- 정식재심사의 조사대상 기간은 재심사개시 공고의 게재 전 5년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⁹⁹⁾
 - 재심사개시 공고의 게재 전 5년 중 당해 이해관계자가 미국으로 수출한 대상상품의

97) 19 CFR 351.213(h).

98) 19 CFR 351.213(h)(2).

99) 19 CFR 351.218(d)(3)(iii).

연간물량과 연간가치(FOB 가격)

- 덤핑 조사개시공고 게재 전 연도에 당해 이해관계자가 미국으로 대상상품을 수출한 물량과 가치
 - 재심사개시 공고의 게재 전 5년 중 물량을 기초로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자가 대상상품의 대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재심사개시 공고를 게재한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 내 개시공고가 게재된 달 전월이 속하는 2개 분기 중, 당해 이해관계자가 미국으로 대상상품을 수출한 물량과 가치
- 정식재심사의 경우 현지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최종판정이 기초한 사실적 정보에 대해 수행함
- 일반적으로 개시공고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약 120일 내 현지조사를 수행함
- 정식재심사에서 일반적으로 재심사 개시공고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110일 내 예비판정을 제출함
- 상무부에서 정식재심사를 수행하더라도 통상 그 전의 판정에서 산정 공시된 덤핑마진과 동일함
- 상무부의 현지조사 후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해 재심사 예비판정이 제출되면 최종판정을 제출하게 되는데, 만약 재심사가 덤핑마진의 판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덤핑마진을 포함한 재심사 최종판정을 제출 및 연방관보에 게재함
- 그 후 상무부는 반덤핑명령 또는 조사정지의 지속 판정, 반덤핑명령 폐지 또는 조사정지의 종료판정을 종료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7일 내 내려야 하며, 그 후 즉시 연방관보에 판정을 게재함
- 상무부는 정식재심사에서 최종판정을 제출하며 개시공고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240일 내 위원회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함

- 단, 정식재심사가 특별히 복잡하다고 인정되면 최종판정의 제출시한을 최장 90일 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연장 가능한 특별히 복잡한 상황은 상당량의 이슈가 제기된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가 복잡한 경우, 관련된 회사가 다수인 경우, 반덤핑명령 또는 조사정지가 그룹화된 경우 및 과도기 명령에 대한 재심사인 경우 등임¹⁰⁰⁾

〈표 III-16〉 정식재심사(Full Review) 일정표

일자	일정	규정
0	조사개시 결정	CFR 351.218(c)
15	국내 이해관계자의 재심사 참가의사 통보	CFR 351.218(d)(1)(i) (조사개시공고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15일 내)
30	피소 이해관계자의 포기주장 제출	CFR 351.218(d)(2)(i) (조사개시공고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30일 내)
30	국내 조사대상물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실질적인 답변서 제출	CFR 351.218(d)(3)(i) and 351.218(d)(3)(vi) (조사개시공고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30일 내)
35	제출된 실질적 답변서에 대한 반박 주장 제출	CFR 351.218(d)(4) (실질적인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5일 내)
110	예비판정	CFR 351.218(f)(1) (조사개시공고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110일 내)
120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CFR 351.218(f)(2)(ii) (조사개시공고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뒤)
160	의견서 제출	CFR 351.309(c)(1)(i) (정식일몰재심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50일 후)
165	반박서면 제출	CFR 351.309(d)(1)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5일 후)
167	공청회	CFR 351.310(d)(i) (반박서면 제출일로부터 2일 후)
240	최종판정	CFR 351.218(f)(3)(i) (조사개시공고를 게재한 후 240일 내)
330	최종판정(연장)	CFR 351.218(f)(3)(ii)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최장 90일까지 연장가능)

자료: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appendix-Annex_VIII-C_to_part_351, 검색일자: 2022. 7. 24.

100) 19 USC 1675(c)(5)(C).

- 통상적으로 반덤핑조치가 취해진 연도부터 종료재심이 개시되는 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상무부는 재심 판정 시 반덤핑조치 전과 조치 후의 기간의 수입량을 비교해 판정함
 - ITC는 산업피해 조사 시 이해당사자에게 반덤핑조치가 시작된 시점부터 5년 뒤 재심이 개시되는 시점까지의 자료를 요구함

- ITC의 경우 원심에서 적용하는 규정들이 일반적으로 종료재심사에도 적용됨

〈표 III-17〉 미국의 반덤핑재심과 원심 비교

심사종류 구분	재심			원심
	연례재심	일몰재심(Full)	일몰재심(Full)	
목적	예치관세 정산 및 반덤핑관세 예치율 갱신	덤핑조치의 유지/종료	덤핑 존재 여부 판단 (미소마진 초과 여부)	
신청(직권 가능 여부)	수입자, 수출자 (직권 가능)	수입자, 수출자 (직권 가능)	수입자 (직권 가능)	
조사개시	자동 조사개시	자동 조사개시	요건 충족 시 조사개시	
조사대상 기간	1차: 원심 예비판정부터~18개월 2차: 반덤핑부과명령일 직전 1년	ITC: 조치 개시 연도~종료재심 개시 연도 DOC: 원심조사 개시 직전 1년~종료재심사 개시 직전 1년	청원접수 한 달 전 기준 직전 1년	
산업피해조사 (ITC)	미 실시	실시	실시	
기업조사 (상무부)	선택적(3개 차수 연속 생략 금지)	실시 (필요 시)	필수	
미소마진 기준 (de-minimis)	0.5% 미만	0.5% 미만 ¹⁾	2% 미만	
정상가치(NV) 및 수출가격 비교 ²⁾	가중평균 대 개별수출가격 비교 (average-to-transaction comparison)	-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비교 (average-to-average comparison)	
덤핑마진을 변화	가변	현행-연례재심-덤핑률 유지	-	
화폐변환(conversion of currency)	불가	불가	가능	
예비판정 기한	재심 개시공고 후 245일	재심 개시공고 후 110일 내	재심 개시공고 후 160일	

〈표 III-17〉의 계속

구분	심사종류	제심		
		연례제심	일몰제심(Full)	원심
최종판정 기한		재심사개시 후 18개월	재심사개시 후 240일 내(상무부), 360일 내(ITC)	280일
공청회		생략 가능	필수(원심의 조사 최종단계에서의 공청회 절차와 동일)	필수
종료와 철회		가능	가능	불가

주: 반덤핑조사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조사라는 측면에서 제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나, 언론·보고서 등 통상 제소로 표현하여 이를 따름
 선행연구에서 연례제심은 자동개시된다 혹은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두 가지 표현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이는 제심 신청이 없는 경우에 이전에 예치된 관세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를 덤핑마진율을 연례적으로 재확정한 것으로 보고, 본 보고서에는 자동개시로 기재함

1) 미 종료제심 관련 규정(19 USC 1675 또는 19 CFR 351)에서 미소마진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 반덤핑 종료제심사에 미치는 요인을 계량분석한 Michael O. Moore(2006)의 연구에서 de-minimis 상한이 연례제심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0.5%로 설정함을 밝힘. Michael O. Moore, An Econometric Analysis of US Antidumping Sunset Review Decisions,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42, No. 1, 2006, p. 8

2)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비교: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에는 가중평균된 정상가격과 가중평균된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 개별거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 가중평균된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이 있는데, 미국은 원심에서 가중평균된 정상가격과 가중평균된 수출가격을 비교하고, 제심에서는 가중평균된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을 비교함

자료: 미 상무부 『Antidumping Manual』의 Chapter 22, 제심 관련 법령(19 USC 1675, 19 CFR 351.218) 참고하여 필자 작성

3. 중국

가. 개요

1) 근거 법령

- 최초의 반덤핑 관련 조항은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이며, 반덤핑 별도 조례는 1997년에 신설됨
 - 중국이 WTO 가입 이후 반덤핑재심사와 관련해 체계화된 법령을 가진 것은 국무원 반덤핑조례임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했으며, 2002년부터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반덤핑조례를 시행함
- 반덤핑재심 관련 조항은 반덤핑조례 제5장 제48~50조로 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의 기한과 재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반덤핑조례 제48조에 따르면, 반덤핑관세 징수 종결 후 덤핑과 피해의 연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확정한 경우 반덤핑관세 징수기간은 적절히 연장할 수 있음
- 동 법 제49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무부는 재심을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
 -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후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증거에 대한 심사 후 반덤핑관세의 지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음
 - 가격약속이 발효된 후 상무부는 가격약속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음
 -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후 가격약속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음

- 동 법 50조에 따르면, 상무부는 재심 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유지, 수정 또는 취소 건의를 제출할 수 있음
- 조례 외, 규칙 및 규정을 통해 재심사하는데 필요한 세칙으로 재심사 전반에 걸친 실무적 규칙에 관해 규정함¹⁰¹⁾
 - 재심과 관련한 규칙 및 규정으로 반덤핑조사개시잠정규칙, 반덤핑가격약속잠정규칙, 반덤핑신규수출자재심잠정규칙, 반덤핑관세환급잠정규칙, 덤핑및덤핑마진중간재심잠정규칙, 반덤핑조사공개정보열람잠정규칙, 반덤핑표본조사잠정규칙, 반덤핑현지조사잠정규칙, 반덤핑조사정보공개잠정규칙, 반덤핑설문조사잠정규칙, 산업피해조사공청회규칙, 반덤핑행정사건심리규정, 반덤핑산업피해조사와 판정규정,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이 있음
- 특히, 중국의 덤핑판정과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는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에서 다루고 있음
 - 반덤핑산업피해조사 및 판정규정 제49~52조에서 반덤핑재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동 법이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이 삭제됨
-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피해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전 3~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1장 총칙(1~3조)
 - 제2장 피해의 인정(4~18조)은 피해의 정의, 피해확정 시 고려사항,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수입품이 국내 동종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덤핑수입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실질적인 피해위험, 국내산업 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 동종제품의 정의, 동종제품 확정 시 고려요인, 단독범위 확정에 근거한 평가, 국내산업의 정의 및 배제 의견 진술, 증거제출, 산업피해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임
 - 제3장 산업피해조사(19~33조)는 반덤핑조사에 대한 응소, 이해관계자의 범위,

101) 세부 시행세칙은 반덤핑조례의 하위 법령으로 중국법 체계상 대외무역법, 조례, 세칙 순서임.

조사활동 참가 시 제출서류, 산업피해조사 대상범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산업피해 조사방식, 정보제공거부의 경우에 관한 규정임

○ 제4장 부칙(34~37조)

〈표 Ⅲ-18〉 중국 반덤핑 관련 법령 연혁(1994~2019)

제정 연도	법령	비고
1994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반덤핑 개념 최초 도입
1997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	
2001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종료재심사 해당
2002~2003	반덤핑조사개시잠정규칙 반덤핑가격약속잠정규칙 반덤핑신규수출자재심잠정규칙 반덤핑관세환급잠정규칙 덤핑및덤핑마진중간재심잠정규칙 반덤핑조사공개정보열람잠정규칙 반덤핑표본조사잠정규칙 반덤핑현지조사잠정규칙 반덤핑조사정보공개잠정규칙 반덤핑설문조사잠정규칙 산업피해조사공청회규칙 반덤핑행정사건심리규정 반덤핑산업피해조사와 판정규정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제정처가 상무부인 규칙 및 규정
2018	덤핑 및 덤핑마진 기간 재심사 규칙	중간재심사 해당
2019	반덤핑종료재심조사규칙	종료재심사 해당

자료: 각 법령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2) 무역구제기관

- 중국의 무역구제기관은 상무부로, 2004년 개편을 통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이 상무부로 통합됨¹⁰²⁾
 - 2004년 개정 전 대외경제협력부(MOFTEC) 및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가 중국의 반덤핑 조사기관이었으나, 2004년 개정에 따라 조사기관은 상무부로 통합됨¹⁰³⁾
 - 이외에 반덤핑조치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인 관세총서와 결정을 공고하는 기관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있음
 - 국내산업의 조사에 있어서 농업과 관련된 분야는 농업부가 상무부와 공동으로 조사함을 밝힘

- 상무부 부서 중 반덤핑재심사 관련 조사·판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무역구제조사국(Trade Remedy and Investigation Bureau)임¹⁰⁴⁾
 - 조직개편 전 상무부의 수출입공정무역국(Bureau of Fair Trade for Imports & Exports)은 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국(Bureau of Industrial Injury Investigation)이 산업피해 조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5년 조직개편을 통해 수출입공정무역국과 산업피해조사국이 무역구제조사국으로 일원화되어 반덤핑판정 및 산업피해 조사를 모두 수행함
 - 과거 수출입공정무역국은 반덤핑조사처, 무역장벽처, 반보조금 및 긴급수입제한처, 재심처, 수출반덤핑응소처, 사무국 판공실로 산업손해조사국은 종합처, 조사처를 둠

102)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https://cacs.mofcom.gov.cn/article/lf/myji/myjibmgz/202101/167756.html>, 검색일자: 2022. 8. 5.

103) 반덤핑조례 제18조.

104) 기존 중국반덤핑 관련 보고서에는 반덤핑조사 관련 업무 부처를 수출입공정무역국과 산업손해조사국으로 표기했으나, 이는 상무부 조직개편(2015)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조사·판정은 무역구제조사국으로 일원화됨. 무역구제조사국 홈페이지, <http://gpj.mofcom.gov.cn/article/cs/>, 검색일자: 2022. 8. 5.

나. 중간재심사

- 중간재심사 관련 규정은 중국 덤핑마진 기간 재심사 규칙(倾销及倾销幅度期间复审规则)으로 2018년 덤핑마진중간재심사잠정규칙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적용 중임¹⁰⁵⁾
- 덤핑 및 덤핑마진 기간 재심사 규칙 제36조에 따라 2018년 5월 4일부터 덤핑 및 덤핑마진에 관한 중기심사에 관한 잠정규칙(외교경제협력부 명령 제23호[2002])은 폐지함¹⁰⁶⁾
- 중국 중간재심사 관련 가장 최근의 선행연구는 2007년으로, 덤핑마진중간재심사잠정규칙을 적용했으며, 동 규칙 폐지 후 중국의 중간재심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전무함¹⁰⁷⁾

1) 신청주체 및 개시요건

- 중간재심 신청주체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기관(총칭하여 국내산업), 관련국(지역)의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국내수입업자임¹⁰⁸⁾
-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 관련 국가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국내수입자는 모두 상무부에 중간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국내산업이란 중국 국내 동종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그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의 총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함
- 국내산업의 중간재심사 신청은 반덤핑원심과 관련된 전부 또는 일부 국가의 모든 수출자, 생산자, 또는 일부 수출자, 생산자를 지명하여 재심사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

105) 중국상무부 홈페이지, <https://cacs.mofcom.gov.cn/article/lf/myjj/myjjbmgz/202101/167756.html>, 검색일자: 2022. 8. 5.

106) 중국 상무부,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8/content_5313916.htm, 검색일자: 2022. 8. 5.

107) 주요 연구는 김정수·서동균, 「중국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 『국제통상연구』 10권 2호, 2005 및 이규철,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그 절차법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2005년 7월, 마광,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국제법평론』 2007-1(통권 제25호) 연구가 있음.

108) 덤핑 및 덤핑마진 기간 재심사 규칙 제3조.

- 중간재심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¹⁰⁹⁾
 - 법령에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조사기관의 재량에 의한 재심사개시 가능성이 큼

- 만약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중간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 12개월 이내에 중국에 조사대상상품을 수출한 적이 있어야 함
 - 재심사개시 요건의 수출이라 함은 일정한 수량과 정상가격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수준임

- 중간재심사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¹¹⁰⁾
 - 검토 요청은 신청자의 기밀 유지 요청 부분과 공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제출하며 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함

- 재심신청자는 검토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짐¹¹¹⁾
 - 신청자의 이름, 주소와 기타 관련 정보
 - 신청 전 12개월 내 신청자의 국내판매에 대한 정보
 - 신청 전 12개월 내 신청자의 중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정보
 - 덤핑마진의 계산에 필요한 다양한 조정 및 덤핑마진의 예비 계산
 - 정상가치, 수출가격 및 덤핑의 증대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
 - 신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

- 만약 재심신청자가 국내산업이고 원심에서 반덤핑조사신청자와 동일하다면, 산업 대표성을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음¹¹²⁾
 -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관련 정보

109) 덤핑 및 덤핑마진 기간 재심사 규칙 제3조.

110) 덤핑 및 덤핑마진 기간 재심사 규칙 제5조.

111) 덤핑 및 덤핑마진 기간 재심사 규칙 제6조.

112) 덤핑 및 덤핑마진 기간 재심사 규칙 제9조.

- 원심에서 반덤핑조치의 수준과 비교하여 정상가치, 수출가격 및 덤핑 범위의 변화
 - 신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
- 특히, 신청 전 12개월 이내에 중국에 조사대상상품을 수출한 적이 있어야 조사개시요건이 성립됨
- 수출은 일정한 수량과 정상적인 수출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수량은 조사대상상품의 정상적인 상업거래량에 따라 확정해야 함

2) 원심절차의 적용 여부

- 중국의 재심제도는 기본적으로 원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재심 관련 규정이 미비한 편임
- 중간재심에서는 원심과 달리 예비판정이 필요 없으며, 반덤핑조사정보공개잠정규칙에 따라 자료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상무부는 초보조사결론을 내린 후 반덤핑조사정보공개잠정규칙에 의거해 근거사실 및 이유를 발표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최소 10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논평과 보충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¹³⁾
- 중간재심사 경우 기존 덤핑관세의 폐지·수정·유보가 가능함
- 가격약속이 관세에 대해서 대체되거나 또는 관세가 가격약속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으며, 개별 회사의 관세 세율이 인하되거나 반덤핑조치의 형태, 수준, 이 밖에도 조치 적용 상품 범위가 명확화되거나 공동체 생산이 없을 시 조치가 폐지될 수 있음¹¹⁴⁾

113) 김석민, 「중국의 반덤핑재심규정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2006, p. 560.

114) 마광,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국제법평론』 2007-I(통권 제25호), p. 105.

- 재심개시 요건 중 직권개시와 관련한 요건은 정당한 이유라고만 적혀 있어 중국 상무부의 직권에 의해 개시될 때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통해 집행당국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조사의 경우 원심에서 정해진 덤핑마진, 즉 반덤핑관세율에 대해 수출자의 중간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음¹¹⁵⁾

3) 덤핑 및 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 덤핑과 피해조사는 수출자가 신청인일 경우 수출가격과 덤핑마진을, 국내산업이 신청인일 경우 조사대상상품의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마진을 조사하는 등 신청 주체에 따라 다름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인일 경우 조사대상상품의 정상가격, 수출가격과 덤핑마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함
 - 덤핑 및 덤핑마진 기간 재심사 제2항에 따르면, 중국의 중간재심의 정의는 반덤핑 정책의 유효 기간 내에 반덤핑 정책의 발효로 인해 변동한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에 근거하여 원래 형식과 수준에 따라 계속 반덤핑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 진행하는 재심사임
 - 국내산업이 중간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대상인 관련국의 모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조사대상상품의 정상가격, 수출가격과 덤핑마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
- 중간재심사에서 덤핑 및 산업피해 판정의 고려요소는 피해의 분석과정에서 추정할 때 가격과 물량 등임
 - 중간재심사제도는 계약법리에 대한 사정변경의 원칙과 유사하지만 WTO의 반덤핑 협정 제11.2조를 참조하여 제정함

115) 현용훈,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조사 시 자가 제조 중간품의 제조단가 불인정 관련 연구」, 『무역구제 연구』 통권 60호, 2020. 12., p. 13.

- 가격효과가 있었는지 판정해야 함
 - 상당한 가격하락
 - 가격억제

- 상무부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덤핑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출자 또는 생산자, 상품유형 또는 거래가 너무 많아 때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덤핑마진의 단독 확정 또는 전부의 유형 또는 거래를 조사하는데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덤핑조사의 적시적인 완성이 방해받는 경우에 해당함

- 상무부가 직권으로 중간재심사를 결정한 경우 중간재심사에 관해 공고하며, 공고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조사대상상품에 관한 기술
 -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명칭 및 그 소속국 명칭
 - 재심사개시 일자
 - 재심사 조사대상기간
 - 신청서에서 덤핑마진이 어느 정도 변동하였거나 이미 제거되었다고 주장한 근거에 관한 기술
 -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표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기한
 - 조사기관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향
 - 이해관계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책임
 - 조사기관의 연락 방법

- 상무부가 아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중간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조사대상 상품의 정상가격, 수출가격과 덤핑마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함
 - 중국 반덤핑법은 정상가치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해관계인 또는 상무부 직권으로 종료재심사를 신청·개시하지 않는다면, 중간재심사·반덤핑조치의 집행은 종료됨

4) 재심사기간

- 중간재심사는 일반적으로 재심사 입건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함
 - 조사기관은 반덤핑조례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관세에 대하여 계속, 수정 또는 취소를 결정함
 - 한국산 폴리에스테르필름사건의 경우에도 중간재심사 조사개시에서 최종판정까지 12개월 소요됨

- 심사대상기간은 일반적으로 재심의신청이 제출되기 전 12개월임

- 중간재심 신청은 반덤핑조치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임
 - 예외적인 경우, 조사기관의 허가에 따라 상기 요건 이외의 시간에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중간재심 신청은 상무부의 조사개시공고 후 1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을 넘으면 추가 자료접수는 없으며 상무부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판정을 내림
 - 상무부는 국내산업의 중간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근무일 기준 7일 내에 공개문서 및 비밀자료의 공개요약문을 관련 국가의 중국주재 대표기관에 발송해야 함

-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중간재심사의 신청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함

- 중국 상무부는 재심사기간 만료 전에 반덤핑세의 유보, 수정 또는 취소에 관한 공고를 공시함
 - 재심사의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집행되고 수급 효력을 갖지 않음
 - 단, 중간재심사의 예비조사 결론 및 근거한 사실과 이유가 공개된 후, 재심사 신청인은 재심사 신청을 취하할 수 없음

- 중간재심사기한 만료 전의 15일 내에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에 반덤핑관세의 유보, 수정 또는 취소를 건의해야 함
 - 상무부는 재심사기한 만료 전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이를 공고함

- 재심기간 중 재심절차는 반덤핑조치의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시함¹¹⁶⁾
 - 재심에 관한 반덤핑조례규정은 WTO 반덤핑협정과 대체로 동일하지만, 필요한 기간 및 정도 내에서 규정한 점은 재량행사 여지가 많음
 - 특히 반덤핑관세의 징수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48조는 미국이 5년이라는 일몰조항을 도입한 것과는 대조됨
 - 반덤핑세의 징수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징수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음¹¹⁷⁾
 - 그러나 재심사에 의해 반덤핑세의 징수를 중지하면 덤핑 및 손해의 계속 또는 재발로 결부된다고 인정한 경우는 반덤핑세의 징수기간을 적정하게 연장할 수 있음¹¹⁸⁾
 - 덤핑 및 덤핑마진의 중간재심사란 반덤핑조치의 유효기간에 심사기관이 반덤핑조치 발효 후 변화가 생긴 정상가액, 수출가격에 의해 종래 방법 및 수준으로 반덤핑조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하는 것을 말함
 - 중간재심사 기간에 기존 반덤핑조치는 계속하여 유효하며 재심사 판정은 판정 공고 일로부터 집행, 소급효과를 갖지 않음

116) 반덤핑조례 제52조.

117) 반덤핑조례 제48조 및 반덤핑종료재심사규칙 초안.

118) 반덤핑조례 제48조 단서.

다. 종료재심사

1) 신청주체 및 개시요건¹¹⁹⁾

- 재심 신청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조사기관의 직권으로도 개시될 수 있음
 - 신청주체인 이해관계자는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임
 - 반덤핑조례 제11조 1항에 따라 국내산업이란 중국 국내 동종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그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의 총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함
 - 조사 신청 및 개시 가능한 조사기관은 상무부임

- 조사는 상무부가 덤핑 및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확정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개시됨

- 종료재심 신청은 반덤핑조치 만료일 60일 전에 해야 함

2) 원심절차의 적용 여부

- 중국은 종료재심 절차에 원심절차를 참고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⁰⁾
 - 원심에서 반덤핑조사 신청 후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응소등록을 통해 예비조사에 따른 예비판정이 진행되고, 이후 국내 실사검증과 본조사에서 산업피해 유무를 최종판정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이뤄짐
 - 종료재심에서 원심에 기반한 국내 실사검증과 산업피해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통보와 공고, 응소, 공청회 신청 등 원심과 동같은 절차를 따름

119) 반덤핑종료재심조사규칙 제4조.

120) 반덤핑종료재심조사규칙 제20조.

- 중국의 한국산 아크릴섬유(Polyacrylonitrile Fiber or Acrylic Fiber) 사례에서 재심 개시가 상무부 직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 조사개시 후 판정까지 절차와 조사 요소 등 원심과 동일함¹²¹⁾
 - 2015년 7월 14일 반덤핑 원심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16년 4월 1일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가 2016년 7월 13일 반덤핑 최종 판정으로 우리나라 기업에게 4.1%의 반덤핑관세가 5년간 부과 결정되었고, 2021년 7월 26일 상무부 직권으로 종료재심이 개시되어 2022년 7월 13일 기존의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판정됨
 - 종료재심을 위한 덤핑조사 설문지 발송, 관련 증거자료 제출 요청, 재심 질문서, 진술의견 청취, 서면의견과 증거자료 접수, 현지조사 등 원심 진행 절차와 같음

- 단, 아래와 관련한 규정은 원심 및 WTO 협정에는 없으며, 중국의 산업피해조사규정에만 있음
 - 국내산업 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의 구체적 설명,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 산업피해조사기간, 반덤핑조사에 대한 응소, 조사활동 참가 시 제출서류, 산업피해조사 대상범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산업피해 조사방식 등임

3) 덤핑 및 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 중국 원심 상 덤핑 및 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WTO 협정을 기본으로 제정됨¹²²⁾
 - 중국은 덤핑 및 피해판정 시 원심을 준용하고 있음

- 중국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 잠정규칙에 따르면, 피해는 실질적 피해, 실질적

121)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7/20160701357821.shtml>, 검색일자: 2022. 7. 20.

122) WTO 반덤핑협정 제3조~제6조는 산업피해조사와 관련된 조항으로 중국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은 덤핑수입과 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 국내산업과 지역경제 통합,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 증거의 서면제출, 방어기회 제공, 표본조사의 허용 등임.

- 피해의 우려, 국내산업의 설립에 대한 실질적 지연으로 유형화되어 있음
- 실질적 피해는 국내산업에 발생한 무시할 수 없는 피해로 물량, 가격, 경제 요소 및 지표 등을 고려함
 - 실질적 피해 우려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한 것으로 실질적 피해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요소임
 - 실질적 지연은 국내산업의 설립 현황, 수요 증가 및 영향 등을 고려함
- 피해판정 시 고려사항은 덤핑수입의 물량, 덤핑수입품이 동종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동 수입품이 국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임¹²³⁾
- 덤핑수입의 물량에서 상무부는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를 고려함¹²⁴⁾
 -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상무부가 수입회원국의 동종상품 가격을 비교해 덤핑수입품에 의해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를 판단함¹²⁵⁾
 - 덤핑수입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설비가동의 잠재적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미치는 영향,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함
- 하지만, 피해판정 시 국내가격이나 생산자가 어느 정도의 영향 혹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 피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음¹²⁶⁾

123) 산업피해조사규정 제5조.

124) 산업피해조사규정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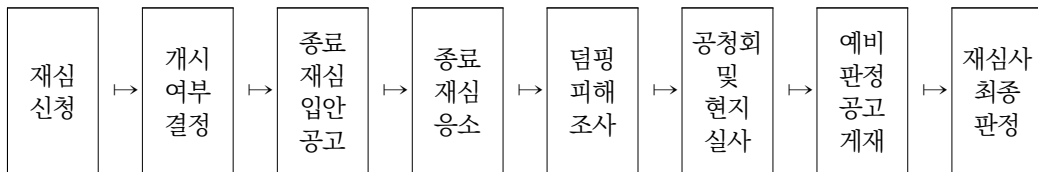
125) 산업피해조사규정 제6조.

126) 김정수·서동균, 「중국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 p. 12, 2021. 4., 마광,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국제법평론』 2007-I(통권 제25호), p. 95.

4) 재심사기간

- 재심사는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종결되어야 함이 원칙임¹²⁷⁾
- 종료재심조사 입안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입안공고에 따라 조사기관에 종료재심 조사에 참가 신청을 함
 - 종료재심 신청은 반덤핑조치 만료일 60일 전에 신청함
- 종료재심 결정에서 반덤핑조치가 지속될 경우, 종료재심 결정공고 규정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실시기간은 5년을 넘지 않음¹²⁸⁾
 - 이해관계자가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종료재심 입안일로부터 4개월 내 조사기관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그림 III-3] 중국 종료재심사 절차도



자료: 반덤핑조례 및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7) 반덤핑종료재심조사규칙 제20조.

128) 반덤핑종료재심조사규칙 제22조.

4. EU

가. 개요

1) 근거 법령

- EU는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반덤핑규정(Regulation (EU) 2016/1036)¹²⁹⁾을 제정하여 덤핑을 규제하고 있음
 - EU 반덤핑제도는 케네디라운드의 반덤핑규약을 기초로 하여 1968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가장 기본적인 반덤핑규정은 EC 반덤핑규정(Regulation (EC) 1225/2009)이며, 이를 개정한 것이 현재의 반덤핑규정임
 - 해당 규정은 2016년 6월 8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이하 유럽의회)에서 제정되어 6월 30일에 관보에 고시하였으며 2016년 7월 20일 발효되었음
 - 해당 규정에서는 덤핑에 대해 EU에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확립된 비교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국제규범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음
 - 수출국은 원칙적으로는 원산지국가로 정의하나 덤핑 된 물품을 단순 환적하는 국가이거나 덤핑물품이 해당국가에서 생산되지 않아 비교가격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중간국(intermediate country)도 수출국으로 간주하고 있음¹³⁰⁾

- EU의 반덤핑규제는 EU 연합국들의 공통통상정책의 하나로 시행되기 때문에 조사 및 부과에 관한 결정이 개별 회원국이 아닌 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무역구제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들(수입의 급증, 산업피해, 피해 위협, 수입증가 및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만족하더라도 공익(Union interest)에

129) EU는 각료회의에도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유럽의회와 각료회의가 협조 하에 보통 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하는 규칙(Regulation)은 번역상 규정이나 법으로써 기능함

130)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3).

반한다면, EU 집행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재심사 시에도 덤핑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익에 반할 경우 최종적으로 조치의 연장이 불가능함

〈표 III-19〉 EU 반덤핑규정 체계

조문	내용
제1조	원칙
제2조	덤핑의결정
제3조	피해의결정
제4조	EU산업의 정의
제5조	절차의 개시
제6조	조사
제7조	잠정조치
제8조	가격인상약속
제9조	조치없는 종결, 확정관세 부과
제10조	소급
제11조	기간, 재심, 환급
제12조	흡수재심
제13조	반덤핑의 우회
제14조	일반규정
제15조	위원회 절차
제16조	현장검증
제17조	샘플링
제18조	비협조
제19조	비밀유지
제20조	공고
제21조	연합공익
제22조	최종조항
제23조	보고서
제24조	폐지
제25조	발효

자료: Regulation (EU) 2016/1036

- EU는 1994년 WTO 출범에 따른 EU 무역구제제도의 개편 이후, 2017년 12월 및 2018년 7월 전면적인 규정 개정을 단행하였음¹³¹⁾
 - 반덤핑규정(Regulation (EU) 2016/1036; 이하 Regulation (EU) 2016/1036)은 현재 EU 반덤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규정(Basic Regulation)이기 때문에, 규정의 개정은 기본규정에 신규조항을 삽입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2017년 12월에는 반덤핑 계산 방식(anti-dumping methodology)을 변경한 규정 Regulation (EU) 2017/2321을 공표하였으며, 2018년 7월에는 무역구제제도를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Trade Defence Instruments)한 규정 Regulation (EU) 2018/825을 공표하였음

- 2017년 12월의 개정에서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만료에 따라, 비시장 경제국가 리스트를 사전 열거하는 방식 대신 중대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 개념을 도입하였음
 - Regulation (EU) 2017/2321에서는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이 크거나 심각한 시장 왜곡이 존재할 경우 비시장 경제국가에 대한 명단을 폐지하고,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해 왜곡 여부에 따라 국가 중립적인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도록 하였음

- 해당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WTO 국가를 대상으로 중대한 왜곡이 있는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동 기업이 제출한 가격과 비용 대신 제3국의 가격과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¹³²⁾
 - 심각한 왜곡의 증명 책임은 EU 집행위원회가 부담하되, 특정 국가 및 분야의 시장 왜곡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였음
 - 심각한 왜곡은 다음과 같은 경우 존재한다고 판단하도록 하였음
 - 국가 소유 기업이거나, 수출국 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이나 지도하에 있는 기업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

131) 조수정, 「EU의 개정 반덤핑규정에 대한 법적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24권 제2호, 2019. 6., pp. 104~105.

132) Regulation (EU) 2017/2321 제1조(1).

- 국가가 기업이 가격이나 비용을 설정할 시 간섭하는 경우
- 수출국 국내공급자를 우대하기 위한 또는 자유 시장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차별적인 공공정책이나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 파산법, 기업법 또는 재산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법의 차별적 시행 또는 불충분한 시행이 존재하는 경우
- 왜곡된 임금이 존재하는 경우
- 공공정책목표를 집행하는 기관 또는 국가에 독립적이지 못한 기관에 의해 재정에 대한 접근이 인정되는 경우

□ 2018년 7월의 개정에서는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의 왜곡된 원자재 및 에너지가 전체 생산비용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¹³³⁾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였음¹³⁴⁾

○ 또한 피해 마진 산정 시 필요한 목표 이윤도 6%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 또한 두 번의 개정을 통해 EU는 높은 노동·환경기준을 준수하는 EU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노동협약과 다자 환경협약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였음¹³⁵⁾

○ ILO 핵심협약 리스트를 Regulation (EU) 2018/825의 부속서에 추가하고, 목표 가격 산정 시 역내산업의 실제 생산 비용에 EU가 당사자인 다자 환경협약 및 ILO 핵심협약에서 초래되는 비용이 반영되도록 함

○ 또한 제3국이 제시하는 가격인상약속 수용 여부 판단 시 제시국의 ILO 핵심협약과 다자 환경협약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그 밖에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 규칙(Regulation (EU) 182/2011)에서는 반덤핑조치에

133)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은 공동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면 반덤핑관세액은 덤핑마진보다 적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134) Regulation (EU) 2018/825 제1조(4)(b)(2a).

135) Regulation (EU) 2018/825 제1조(4)(b)(2d).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될 시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및 이사회(EU Council; 이하 이사회) 반대의견을 의무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¹³⁶⁾

- 기존에 잠정 반덤핑조치는 EU 집행위원회에서, 확정 반덤핑조치는 각료회의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당 규칙에서는 확정 반덤핑조치의 집행권한을 EU 집행 위원회에 부여하였음
- 이렇게 확대된 EU 집행위원회의 집행권한(implementing powers)을 제한하기 위해 Regulation (EU) 182/2011 제15조에서 규정된 자문절차, 심사절차 및 항소절차 등의 위원회절차(Committee procedure)를 Regulation (EU) 2016/1036에 도입하였음
- 해당 규정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집행권 행사를 위해 자문절차(advisory procedure) 또는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 중 하나의 절차를 적용해야 함¹³⁷⁾
 - 심사절차는 일반적인 집행행위(implementing acts), 회원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공동 농업 및 어업 정책, 환경, 안보, 안전, 인간 및 동식물의 보호, 공동통상정책, 조세 등과 관련된 집행을 위한 심사에 적용됨
 - 심사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자문절차를 적용하는데, 심사절차에서는 가중다수결을 적용하고 자문절차에서는 단순다수결을 적용함

2) 무역구제 기관

- EU 집행위원회가 기능적으로 덤핑 및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덤핑관세 부과 또는 가격약속 수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¹³⁸⁾
- EU 집행위원회는 EU의 대외통상정책과 무역구제업무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136) 김세환, 「EU 반덤핑법상 최소부과원칙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통권 27호, 2018. 8., pp. 43~45.

137) Regulation(EU)182/2011 제1조 및 전문(4).

138) KITA,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countryProcedureDetail.do?proNo=221>, 검색일자: 2022. 7. 27.

기관으로 조사개시, 진행 및 종료 등의 본안 절차 과정은 물론 재심사, 부당한 반덤핑 관세의 환급 및 조치의 연기 등 대부분 반덤핑절차에 개입하고 있음

- 이사회는 각 EU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 1인으로 구성되어 덤핑관세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EU 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확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 제17조 제2항에 따라 리스본 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EU 집행위원회의 법안 발의가 없으면 의회 및 이사회는 법률 제정이 불가능함¹³⁹⁾
 - 법률의 집행권한도 원칙적으로 EU 집행위원회에 있으므로 의회에 대한 책임도 EU 집행위원회가 단독으로 지고, 의회는 EU 집행위원회를 불신임 의결하여 EU 집행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두고 있음¹⁴⁰⁾
- EU 집행위원회는 반덤핑사실조사, 반덤핑관세 부과 등과 관련하여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함
 - 자문위원회가 집행위원회의 안건에 반대할 시 이사회에 상정하여 가부를 투표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중간재심사

1) 신청주체 및 개시요건

- 상황변동에 따른 지속적인 조치 부과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중간재심은 다음의 경우

139) 김세환, 「EU 반덤핑법상 최소 부과원칙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통권 27호, 2018. 8., p. 36.

140) KITA,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countryProcedureDetail.do?proNo=221>, 검색일자: 2022. 7. 27.

개시될 수 있음¹⁴¹⁾

- EU 집행위원회의 발의에 따라(직권)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개시될 수 있음
- 최종 조치 부과 후 최소 1년의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경우 개시될 수 있음
- 부과 기간(일반적으로 5년) 해당 조치에 대한 중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¹⁴²⁾
- 수출자 또는 수입자 또는 그러한 중간심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는 연합 내 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중간재심을 개시할 수 있음

□ 무역구제 현대화 개정(Regulation (EU) 2018/825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연합 산업(Union industry)이(업계가) 더 높은 사회 및 환경기준으로 인해 증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중간재심을 시작해야 함¹⁴³⁾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사회적 및 환경적 기준과 관련하여 수출국의 상황이 변경된 경우 중간재심을 개시할 수 있음
- 검토의 범위는 변화된 내용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여 결정되며, 해당 기준에 따른 중간재심 또한 직권으로 개시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반덤핑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가 EU가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 및 의정서 또는 규정의 부속서 Ia에 나열된 ILO 협약에서 탈퇴하는 경우 중간재심으로 시행 중인 조치를 철회할 수 있음¹⁴⁴⁾

2) 원심절차의 적용 여부

가) 절차

□ 개별적인 수출자에 대해 반덤핑조치가 철회되었으나 수출국 전반에 대한 철회가 아닌

141)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6).

142) European Commission, 『TRADE DEFENCE INSTRUMENTS, ANTI-DUMPING & ANTI-SUBSIDY』, 2018, p. 25.

143) EU 집행위원회, Regulation (EU) 2018/825, 전문(12), 2018. 5. 30.

144) EU 집행위원회, Regulation (EU) 2018/825, 전문(12), 2018. 5. 30.

경우, 수출자는 추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재심사에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¹⁴⁵⁾

- 중간재심사 경우 기존 조치의 폐지, 유지, 또는 수정(repealed, maintained or amended)이 가능함¹⁴⁶⁾
 - 가격약속이 관세에 대해서 대체되거나 또는 관세가 가격약속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으며, 개별 회사의 관세세율이 인하되거나 반덤핑조치의 형태, 수준, 이 밖에도 조치 적용 상품 범위가 명확화되거나 공동체 생산이 전무할 시 조치가 폐지될 수도 있음¹⁴⁷⁾

- 수출가격을 구성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관세가 EU에서의 재판매가격과 이후의 EU 판매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지불된 반덤핑관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¹⁴⁸⁾ 상황변동이 없음이 입증될 시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조사에서 적용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가격의 신뢰도를 검토함

나) 미소마진 적용 여부

- 원심에서 적용되었던 미소마진(덤핑마진이 2% 미만의 미소 수준인 경우 조사에서 제외) 적용 여부에 대해 EU의 반덤핑 및 관련 규정에 해당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재심사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Regulation (EU) 2016/1036 제11조에 따라 관련 국가에 대해 수행되는 후속 재심에 따라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개별 업체도 재조사가 이행될 수 있음
 - Regulation (EU) 2016/1036에서는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조사개시 결정 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충분한 증거가 없을 시 시장점유율이 1% 미만 국가의

145)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6).

146)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6).

147) 마광,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국제법평론』 2007-I(통권 제25호), p. 133.

148)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9).

수입상품 합계가 EU 소비량의 3% 이상이 되지 않거나 미소마진이 2% 미만일 경우, 개시를 위한 절차는 즉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⁴⁹⁾

- Regulation (EU) 2016/1036에서는 개별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마진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료되지만, 동 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국가에 대해 수행되는 재심사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음.
- 2018년 개정된 Regulation (EU) 2018/825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있음¹⁵⁰⁾

□ 2012년 EU는 중국 다리미판 사례에서(Dumping-Imports of ironing boards originating in China) 원심에서 미소마진을 적용받은 수출자를 중간재심사 시 현재의 조사에서 배제하더라도 새로운 조사를 개시하여 연합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의 판결에 따른 관행을 만들었음¹⁵¹⁾

□ 중국 업체는 중간재심사에서 WTO 회원국이 초기 조사에서 미소마진 적용 기업에 대한 재심사를 금지하는 Mexico-Beef and Rice 사례에 대한 WTO 상소 기구의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조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¹⁵²⁾

○ 또한 이와 함께 국가가 아닌 개별 회사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재조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EU 일반법원은 WTO의 판결은 덤핑조치 부과 이후에 대한 관세 납부와 그 연장에 대한 재심이므로, 하나의 기업을 상대로 새로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EU 일반법원은 미소마진 적용으로 배제되었거나 영세율을 적용

149)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5(7), 5(9).

150)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9(3), Regulation (EU) 2018/825 Article 1(6).

151) EU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GA/TXT/?uri=CELEX:62011TJ0156>, 검색일자: 2022. 7. 20.

152) EU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GA/TXT/?uri=CELEX:62011TJ0156>, 검색일자: 2022. 7. 20.

받은 업체가 덤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반덤핑조치 이전에 대한 것으로, 조치 적용 후 해당 업체가 덤핑을 할 수 없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또한 반덤핑절차가 일반적으로 개별 회사의 수입품이 아니라 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개시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WTO 반덤핑협정의 어떤 조항도 단일 회사에 대한 새로운 반덤핑조사의 개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함
- GATT 제6조의 1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1조에서는 개별 생산자에 대한 절차의 개시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절차의 개시 및 지시 요건은 생산자의 수와 관련이 없음
- WTO 반덤핑협정의 제5.2조(ii), 제6.1.3조,¹⁵³⁾ 제6.7조,¹⁵⁴⁾ 제6.10조,¹⁵⁵⁾ 제9.2조¹⁵⁶⁾는 절차가 시작될 때 표적이 될 수 있는 생산자의 수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중간재심사의 범위에 넣지 않되 새로운 조사를 개시하여 해당 업체를 조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
- 153) WTO 반덤핑협정 제6.1.3조: 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당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면신청서 전문을 알려진 수출자 및 수출회원국의 당국에 제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관련 이해 당사자도 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정보의 보호요건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함
- 154) WTO 반덤핑협정 제6.7조: 당국은 관련 기업의 동의를 얻고 당해 회원국의 정부대표에게 통보하여 이러한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상세사항을 추가로 입수하기 위해 필요시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부속서 1에 기술된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행해지는 조사에 적용된다. 당국은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조건으로,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관련 기업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동 결과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155)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함.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그 선정 시 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당사자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음
- 156) WTO 반덤핑협정 제9.2조: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가격 약속이 수락된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덤핑이 이루어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당해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의 반덤핑관세를 무차별 원칙에 따라 징수함. 당국은 관련 상품의 공급자를 지명하지만 동일국의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되고 공급자 전부를 지명하는 것이 실행불가능 할 때에는 당국은 관련 공급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2개국 이상으로부터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된 때에는 모든 공급자를 지명하거나,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관련된 모든 국가를 지명할 수 있음

3)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 EU 집행위원회는 덤핑·피해에 대한 상황이 크게 변화했는지, 또는 기존 조치가 피해를 제거하는 데 있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문서화된 모든 적법하고 충분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¹⁵⁷⁾
 -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조치의 지속적인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조치가 제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덤핑 및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낮은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기존 조치가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지 여부에 관한 판단

- EU의 경우 법에서 중간재심에 관한 상세한 내용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된 러시아의 질산암모늄에 대한 부분 중간재심 사례를 살펴보았음

- 러시아의 질산암모늄에 대한 부분 중간재심에서(Regulation (EU) 2018/1722)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조치를 수립한 근거가 되는 환경이 변화했는지, 그러한 변화가 지속적 성격(lasting changes)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였음¹⁵⁸⁾

- 변화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병으로 인한 연합¹⁵⁹⁾ 산업의 구조적 변화, 연합 내의 가스 가격변화, 글로벌 시장 변화로 인한 연합 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였음¹⁶⁰⁾

157)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3).

158) EU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R1722>, 검색일자: 2022. 7. 19.

159) Union으로 칭하고 있어 연합으로 번역하였음

160) EU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R1722>, 검색일자: 2022. 7. 19.

- 연합 산업의 구조적 변화: 수십 개의 중소 규모 생산자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2002년 상황과 대조적으로 투자 및 구조 조정(합병)에 따른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운영 시너지 효과, 물류 효율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연합 산업의 전반적인 비용 구조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정함
 - 연합 내의 가스 가격변화: 러시아는 EU의 가스 가격의 감소를 주장하였으나,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눈에 띄는 하락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내 원자재 가격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 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격의 변화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 러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수요 증가와 우크라이나, 호주 및 인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반덤핑조치 부과 등의 상황은 지속적이며 피해 및 피해 재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음
- 연합 산업의 상황에 대해 연합 내 소비, 대상국인 러시아의 수입량, 수입가격, 가격인하 (Price undercutting)(러시아 수출가, 가격인하, 제3국의 수입량, 가격, 시장점유율), 연합 산업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경제적 요인과 지수를 조사함¹⁶¹⁾
- 피해 분석을 위해 연합 산업의 경제 상황은 거시 경제 지표(생산, 생산 능력, 용량 활용도, 판매량, 시장 점유율, 성장, 고용 및 생산성)와 미시 경제 지표 (평균 단가, 단가, 노동 비용, 재고, 수익성, 현금 흐름, 투자, 투자 수익률 및 자본 조달 능력)을 기반으로 평가함¹⁶²⁾
 - 판매 가격이 수익성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익성, 현금흐름, 투자 수익률 등 재무지표 동향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연합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고려 기간 동안 90% 이상으로 유지되었음

161) EU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R1722>, 검색일자: 2022. 7. 19.

162)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3(5).

- 피해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잉여생산능력, 제3국에서의 러시아수출업자의 행동형태(Behaviour of Russian exporters on third country markets), 러시아 수출가격의 향후 발전 가능성, EU 시장의 매력도를 분석하였음¹⁶³⁾
 - 러시아 생산자들은 반덤핑조치 종료 시 잉여용량을 연합에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잉여량이 조치 종료 시 EU 역내로 반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현재 제3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물량은 연합 시장의 상대적 매력과 러시아와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제3국에서 연합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연합 산업이 마지막 일몰재심 시 조사 결과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 증가하면 피해가 재발할 수 있음
 - 러시아 수출가격의 변화 가능성 또한 피해가 빠르게 재발할 수 있다는 지표이며, 미래의 수출가격은 모든 러시아 수출 생산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판매 경로와 배송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
 - 마지막으로 시장의 크기, 지리적 근접성 및 가격 측면에서 EU 시장은 러시아 생산자에게 매력적이라고 판단함
 - 미래의 수출가격이 러시아 수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매 채널 및 운송 조건을 충족시켜 연합에 대한 모든 러시아의 잠재적 수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러시아는 특히 연합 내 러시아 기업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물량이 연합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EU 생산자는 반덤핑조치 종료 시 러시아 기업이 시설에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덤핑조치 제거 시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치 종료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렸음
 - 다만 피해에 국한된 부분 중간재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러시아산 질산암모늄 수입에

163) EU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R1722>, 검색일자: 2022. 7. 19.

적용되는 반덤핑조치의 수준을 조정하였음

- 한 업체의 경우 2008년 검토에서 덤핑마진을 기준으로 수준을 설정하였으나, 이번 재조사에서 발견된 피해마진은 현재 시행 중인 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부과원칙에 따라 피해마진으로 적용됨

4) 재심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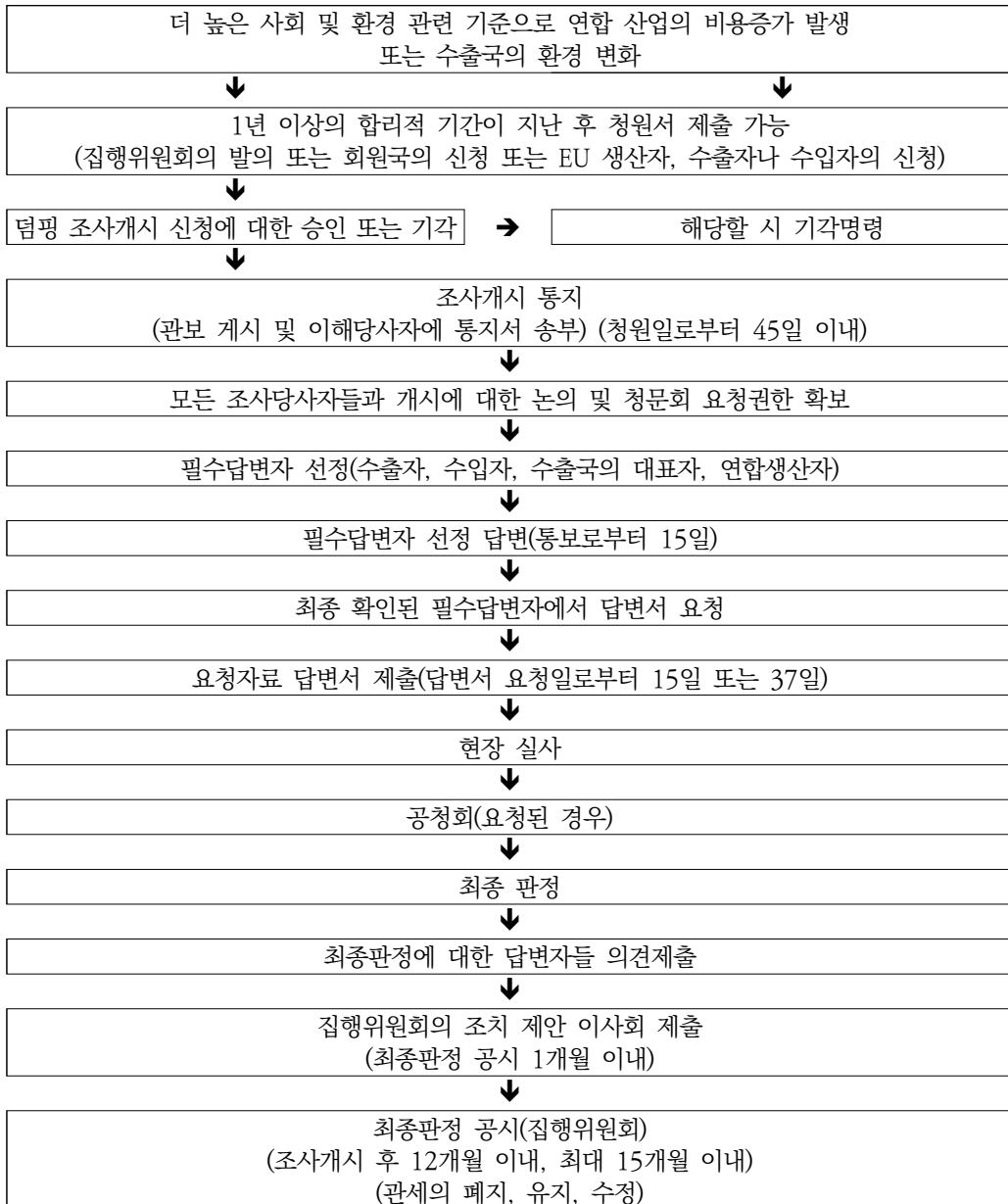
- 중간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통상 종료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시 후 15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¹⁶⁴⁾
 - 중간재심사가 개시되면 최초 조치 적용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토 중인 대책은 그대로 유지됨¹⁶⁵⁾
 - 러시아의 질산암모늄 부분 중간재심에서 검토 조사기간(Review Investigation Period, RIP)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한 것을 보면 통상 12개월의 조사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 그 밖에 2014년 1월 1일부터의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고려기간(the period considered)을 별도로 시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1722)에 명시하였음
- 중간재심의 설정 기한 내에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을 시 반덤핑관세는 기존의 조치대로 유지되며 수정될 수 없음
- 중간재심사 진행 중 기존 조치의 종료기간이 도래했을 시에는 해당 중간재심사가 종료재심사의 조사 범위를 포괄하여 함께 조사해야 함¹⁶⁶⁾

164)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5).

165) European Commission, 『TRADE DEFENCE INSTRUMENTS, ANTI-DUMPING & ANTI-SUBSIDY』, 2018, p. 24.

166)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7).

[그림 III-4] EU 중간재심사 절차도



자료: KITA,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countryProcedureDetail.do?proNo=221>, 검색일자: 2022. 7. 20. 및 EU 집행위원회, <https://eur-lex.europa.eu/eli/regimpl/2022/402>, 검색일자: 2022. 7. 20.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다. 종료재심사

1) 신청주체 및 개시요건

- 최종적인 반덤핑조치는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심사 시 결정되지 않는 한, 덤핑 및 피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재심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또는 그 시행일로부터 만료됨¹⁶⁷⁾
 - 반덤핑관세는 확정반덤핑관세 부과 후 조치 없이 5년이 지났거나 덤핑과 피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심사가 끝난 시점, 반덤핑관세의 종료는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EU 당국의 자체적 판단 또는 연합 산업의 요청으로 개시된 심사에서 결정된 후 만료됨

- 종료재심(expiry review)은 EU 집행위원회의 직권으로, 또는 연합 생산자나 연합 생산자를 대표한 자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고 기존의 반덤핑관세는 동 재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됨¹⁶⁸⁾
 - 재심사가 개시되면 재심사 대상 조치의 최초 적용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재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행이 유지됨¹⁶⁹⁾

- 종료재심의 개시를 위해서는 조사개시 요청서에 조치의 만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의 충분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함¹⁷⁰⁾
 - 덤핑 및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 될 가능성에 대한 증거
 - 피해가 제거된 것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덤핑조치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증거

167)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2).

168)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2).

169) European Commission, 『TRADE DEFENCE INSTRUMENTS, ANTI-DUMPING & ANTI-SUBSIDY』, 2018, p. 24.

170)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2).

- 수출업자의 상황 또는 시장 조건이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덤핑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

○ 원료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의 증거(evidence of continued distortions on raw materials)¹⁷¹⁾

- 2018년 규정 개정을 통해 종료재심 시 원료 왜곡을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증거에 포함하였음

□ 종료재심의 개시 또는 비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 서면절차(written procedure)를 사용하는 경우, 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의장이 결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다수(majority)가 요청할 시 서면절차가 결과 없이 종료될 수 있음¹⁷²⁾

2) 원심절차의 적용 여부

□ 원심의 경우 연합 산업을 대표(belief of the Union industry)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종료재심에서는 연합 생산자를 대표하는(on behalf of Union producers)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료재심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EU의 경우 연합국이기 때문에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7에 따른 샘플링 시 원심의 대상자와 재심의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

○ EU의 경우 연합국으로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상품유형 및 거래가 많을 경우, 조사는 샘플 선택 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사용하여 당사자, 물품 또는 거래의 수를 합리적인 수로 제한할 수 있음

○ 종료재심에서는 생산 및 판매량 등¹⁷³⁾을 기준으로 국내산업의 범위를 새롭게

171) Regulation (EU) 2018/825 Article 1(7).

172) Regulation (EU) 182/2011 Article 3(5).

173) European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2/402, 검색일자: 2022. 7. 21.

설정하기 때문에 재심 대상자와 원심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

- 중국의 특정 알루미늄 호일 종료재심(certain aluminium foil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사례에서 원심¹⁷⁴⁾은 5개 생산자를 국내산업으로 선정하였으나, 재심에서는 연합 생산량의 약 77%와 연합 유사 제품 예상 판매량의 75%를 차지한 3개 생산자를 국내산업으로 선정하였음
- 종료재심도 중간재심과 마찬가지로 EU 반덤핑법에는 미소마진 적용 업체의 재심사 대상 제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미소마진에 따른 원심의 조사종료가 재심사 시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¹⁷⁵⁾

3)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 EU의 경우 법에서 종료재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된 중국의 특정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종료재심 사례를 살펴보았음
- 최근 중국의 특정 알루미늄 호일 종료재심 사례에서는 심각한 왜곡에 따라 기본규정 제2조(6a)에 근거한 정상가격과 이용 가능한 정보로 결정된 수출가격으로 덤핑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¹⁷⁶⁾
 - 원자재 및 투입물의 지원을 비롯하여 중국 금융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에 추가적인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함
 - 전반적으로, 중국의 계획적인 시스템은 자원이 시장의 힘에 따라 할당되기보다 전략적으로 지정된 분야 및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집중되었음
 - 중국 파산 및 재산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며 특히 부실기업의 유지, 토지 사용권 할당할 시 왜곡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음

174) Council Regulation (EC) 925/2009.

175)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9(3), Regulation (EU) 2018/825 Article 1(6).

176) European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2/402, 검색일자: 2022. 7. 21.

-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부문의 임금 비용의 왜곡, 기업 행위자가 자본에 접근하는 등의 왜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정상가격 산정 시 중국의 국내 가격과 비용 대신 제3국의 가격과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조(6a)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대표국을 선정하였음
 - 중국과 유사한 경제 발전 수준(세계은행(World Bank)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중국과 유사한 1인당 국민총소득(GDP)을 가진 국가로 해당 국가에서 검토 중인 제품의 생산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관련 공공 데이터를 가용할 수 있어야 함
 - 정상가격 산정 시 적용 가능한 대표 국가가 둘 이상일 때 적절한 경우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및 환경적 보호가 있는 국가를 선정하도록 함
- 아르메니아, 브라질, 러시아 및 튀르키예를 중국과 유사한 경제수준의 국가로 식별하였으나, 내수시장 왜곡, 데이터 가용 여부 등에 따라 튀르키예를 대표국가로 선정하였음
 - 아르메니아의 경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무 데이터가 없었으며, 러시아의 경우 알루미늄에 대한 수출규제, 천연가스 내수시장 왜곡의 존재하였고, 러시아의 알루미늄 시장을 한 기업이 지배하는 구조였음
 - 브라질의 경우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소송이 진행 중이며, 덤핑 의혹이 있는 중국산 수입품은 브라질 시장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브라질에는 알루미늄 물품(가정용 호일) 생산을 위한 주요 투입물(알루미늄 합금)과 부산물(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한 수출쿼터가 적용되고 있었음
 - 튀르키예에는 판관비 및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재무 데이터를 가진 알루미늄 호일 생산자가 없었으나, 알루미늄 압출 제품이 검토 중인 제품과 매우 유사한 기술적 특성 및 유사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두 제품은 같은 회사 또는 같은 그룹 내에서 생산되고 있어 EU 집행위원회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 분야에서 활동 중인 튀르키예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마지막으로 튀르키예가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적절한 대표 국가였기 때문에 사회 및

환경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힘

- 중국 생산자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된 정상가격과 입수 가능한 사실에 근거¹⁷⁷⁾하여 Euro stat에 기록된 CIF 수출가격을 공장도 수준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중국에서의 해상운임과 보험비용 그리고 국내 운송비용의 적용에 따라 그 가격이 감소하게 되었음
- EU 집행위원회는 덤핑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생산능력과 잉여생산, 다른 시장의 이용 가능성(내수시장 및 기타 제3국시장 수요), 제3국에서의 가격결정 행태, 연합시장의 매력도를 고려하여 덤핑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였음¹⁷⁸⁾
 - 2005년과 2015년 사이 알루미늄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중국 알루미늄 부문에 전반적으로 과잉생산이 있었으며, 중국 내 총 소비가 실질적으로 낮아 중국의 생산자는 수출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음
 - 검토 조사기간 중국에서 태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및 일본과 같은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의 수출가격 수준을 분석했으며, 해당 가격이 연합에 대한 수출가격 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함
 - 알루미늄 호일의 연합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 수요의 15%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가격 수준 면에서 매력적이고 태국을 통해 우회덤핑 행위가 있었던 만큼 덤핑에 대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별도의 재심기간을 두고 덤핑마진도 재확인하였으나 종료재심에서 확인한 덤핑마진은 덤핑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해당 사례에서도 관세율은 Regulation (EU) 2015/2384의 원심 관세율을 유지했음
 - 종료재심에서 조치유지가 결정될 시 원심의 관세율이 적용 유지되기 때문에 재심 시 별도 피해마진을 산정하지 않음

177)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8.

178) European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2/402, 검색일자: 2022. 7. 21.

- 원심에서 최소부과원칙에 따라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낮아 해당 피해마진을 적용했다면 재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왜곡된 원자재 및 에너지가 전체 생산비용의 17%를 차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부과원칙은 재심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¹⁷⁹⁾

〈표 III-20〉 덤핑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요소

덤핑	정상값	심각한 왜곡	국가 정책 및 영향,	
			국영기업,	
			국내산업 차별,	
			금융 분야의 독립성 여부	
		대표 국가(선정기준)	유사한 경제 발전 수준	
			해당 국가에서 검토 중인 제품의 생산	
			대표 국가에서 관련 공공 데이터의 가용성.	
			가능한 대표 국가가 둘 이상일 때 적절한 경우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및 환경적 보호가 있는 국가	
		왜곡되지 않은 비용 설정 시 필요한 자료원		
		생산요소		
수출가격				
덤핑마진				
덤핑의 지속 가능성	생산 능력 및 잉여생산 능력			
	다른 시장의 이용 가능성(내수시장 및 기타 제3국시장 수요)			
	제3국에서의 가격결정 행태			
	EU 시장의 매력도			

자료: European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2/402, 검색일자: 2022. 7. 26.

- EU는 연합산업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피해 지속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관세 부과 증 피해가 있으면 피해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피해가 없으면 재발 가능성을 평가함
- 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을 위해 EU 산업의 총생산량, EU 내 소비량, 중국으

179) Regulation (EU) 2018/825 Article 1(4)(b).

로부터의 수입량 및 시장 점유율,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 및 가격인하, 중국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시장 점유율 및 가격 동향, EU 산업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고려하였음¹⁸⁰⁾

- 연합 산업의 경제 상황은 거시 경제지표(생산량, 생산능력 및 용량 활용, 가동률,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성장률, 고용 및 생산성, 덤핑마진의 크기 및 과거 덤핑으로부터의 회복 정도) 미시 경제지표(가격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무비, 재고, 수익성, 현금 흐름, 투자, 투자 수익 및 자본 조달 능력)로 분류하여 고려하였음
- 전반적으로, 주요 경제지표의 추세는 고려된 기간에 악화하였는데, 특히 생산, 판매량, 시장 점유율 하락은 물론 매출 가격, 고용과 생산성,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¹⁸¹⁾
 - 특히 태국에서 수입되는 우회적인 수입으로 가격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연합 산업이 생산 비용의 증가에 따라 판매 가격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워 약 60%의 수익이 감소하였음
 - 감소하는 투자 수익은 연합 산업의 자본과 투자 유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그러나 연합 산업은 여전히 큰 판매량과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는 연합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취약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판단하여 조치만료 시 피해 재발 가능성을 추가로 조사하였음
- 피해 재발 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중국의 생산능력 및 잉여생산능력(EU 시장의 매력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 수준 및 조치가 만료될 경우, 연합 산업 상황에 미치는 영향, 우회관행에 대해 조사하였음¹⁸²⁾

180) European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2/402, 검색일자: 2022. 7. 21.

181) European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2/402, 검색일자: 2022. 7. 21.

182) European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2/402, 검색일자: 2022. 7. 21.

- 특히 태국으로부터의 우회 관행은 판매량과 점유율에서 연합 산업 손실의 주요 원인이었음
 - 태국에서 우회한 수입품과 경쟁하기 위해 이미 행해진 것처럼 연합 산업이 해당 물품의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함
 - 중국의 상당한 수출량으로 EU 국내산업의 가격을 하락시켜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연합 산업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연합의 이익에 대해 공정한 조건과 투자가 공정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치의 유지는 지속 가능한 가격 수준을 확립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연합 산업의 이익 조사를 위해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유럽연합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지를 검토함
 - 연합 이익의 결정을 이해 연합 산업, 공급자, 수입자, 유통업자 및 사용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평가뿐 아니라, 모든 관련 없는 수입자, 거래자 및 사용자의 평가 또한 조사하였음¹⁸³⁾
 - 연합 산업의 이익: 국내생산자 및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며 덤핑방지관세 지속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공급자의 이익: 원재료 등의 공급자 및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며 덤핑방지관세 지속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수입자의 이익: 수입자 및 그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며 덤핑방지관세 지속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음
 - 사용자의 이익: 수요자 및 그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며 덤핑방지관세 지속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

183) 진성백, 「최근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조사 재심사 산업피해여부 주요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pp. 52~53.

〈표 III-21〉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요소

피해	EU 산업의 총생산량		
	EU 내 소비량		
	대상국 수입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및 시장 점유율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 및 가격인하	
		대상국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및 시장 점유율	
	EU 산업의 경제적 상황	거시경제지표	생산량, 생산능력 및 용량 활용
			가동률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성장률, 고용 및 생산성
			덤핑마진의 크기 및 과거 덤핑으로부터의 회복정도
		미시경제지표	가격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무비
			재고
수익성			
현금 흐름			
	투자		
	투자 수익 및 자본조달능력		
피해 재발 가능성	대상국의 생산능력 및 잉여생산능력 (EU 시장의 매력도)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 수준 및 조치 종료 시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회관행의 존재		
EU이익	EU 산업의 이익		
	관련 없는 수입자, 거래자 및 사용자의 이익		

자료: European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2/402, 검색일자: 2022. 7. 26.

4) 재심사기간

- 종료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통상 종료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시 후 15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¹⁸⁴⁾
 - 종료재심사가 개시되면 해당 조사기간 동안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반덤핑조치는 그대로 유지됨¹⁸⁵⁾
 - 중국의 특정 알루미늄 호일 종료재심에서 검토 조사기간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을 보면 통상 12개월의 조사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평가와 관련된 추세 조사는 2017년 1월 1일부터 검토 조사기간 종료(고려기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음

- 재심을 수행하는 데 수출자, 수입자, 수출국의 대표자 및 연합 생산자는 중간재심을 비롯한 종료재심 모두 검토 요청에 명시된 문제를 진술, 반박 또는 논의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

- 반덤핑 부과의 종료가 임박하였음에 대한 통지는 조치 적용 기간의 최종 연도의 적절한 시기(appropriate time)에 EU 공식 관보에 공지되어야 함¹⁸⁶⁾
 - 조치의 실제 종료 또는 유지를 알리는 통지는 유럽연합 공식 관보에 공지해야 함¹⁸⁷⁾
 - EU 생산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5년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¹⁸⁸⁾, 부과되고 있는 조치의 만료를 알리는 안내문도 함께 게재해야 함¹⁸⁹⁾

184)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5).

185) European Commission, 『TRADE DEFENCE INSTRUMENTS, ANTI-DUMPING & ANTI-SUBSIDY』, 2018, p. 24.

186)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2).

187)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5).

188) European Commission, 『TRADE DEFENCE INSTRUMENTS, ANTI-DUMPING & ANTI-SUBSIDY』, 2018, p. 24.

189)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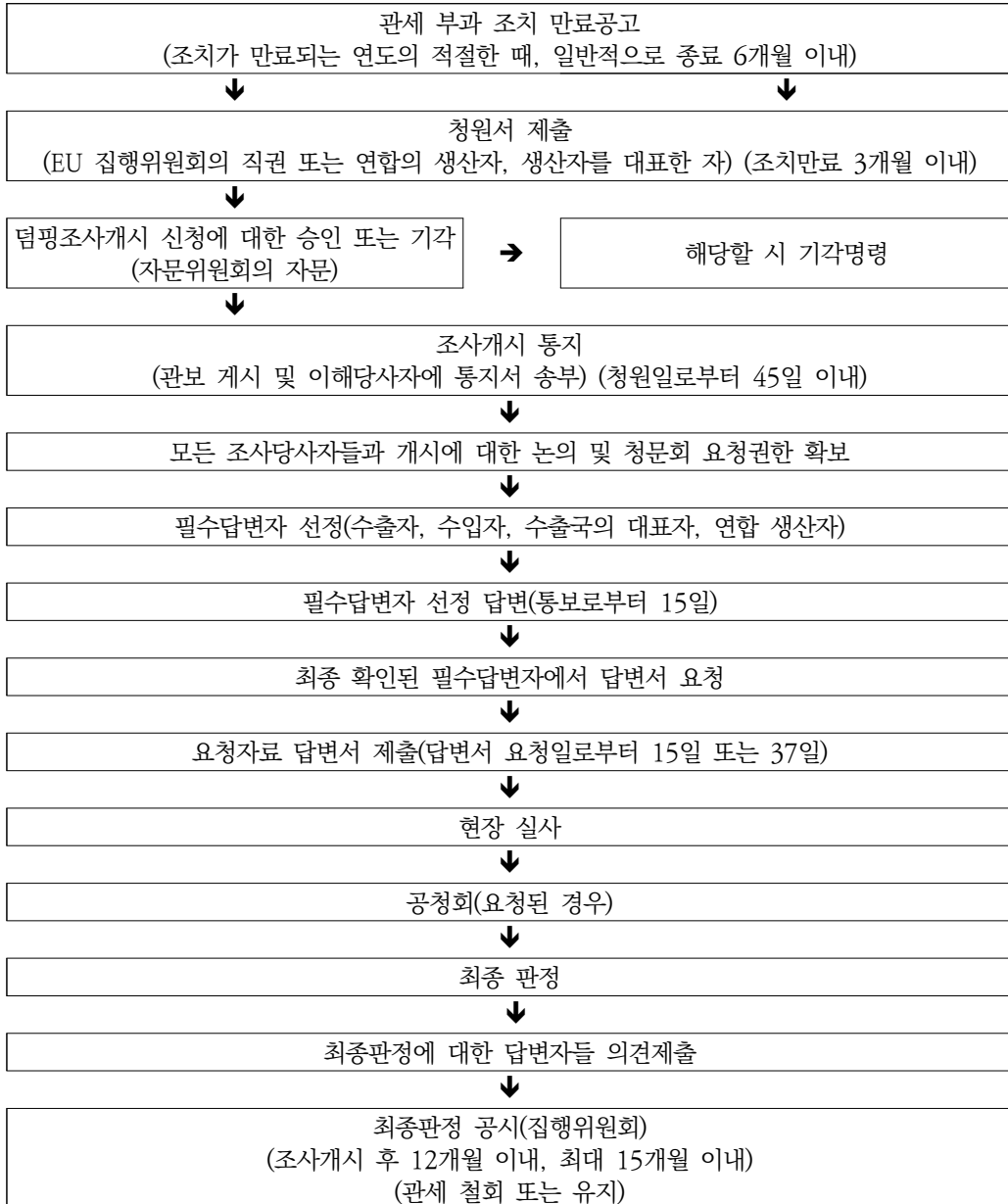
- 기한 내에 조사가 종결되지 않으면 기존의 반덤핑조치는 종료재심과 함께 종결됨¹⁹⁰⁾
 - 종료재심이 중간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개시된다면 중간재심은 종료재심 시작과 동시에 종료되며, 중간재심과 종료재심이 함께 개시될 시 재심의 종료기간은 동일하게 이루어짐

- 종료재심은 시행 중인 관세를 폐지하거나 지속적으로 부과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덤핑조치가 유지된다면 5년간 유효하게 됨¹⁹¹⁾
 - 다만 종료재심은 관세의 수준이나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중간재심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음

190) Regulation (EU) 2016/1036 Article 11(5), (7).

191) European Commission, 『TRADE DEFENCE INSTRUMENTS, ANTI-DUMPING & ANTI-SUBSIDY』, 2018, p. 25.

[그림 III-5] EU 종료재심사 절차도



자료: KITA,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countryProcedureDetail.do?proNo=221>, 검색일자: 2022. 7. 19. 및 EU 집행위원회,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2/402, 검색일자: 2022. 7. 19.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5) 기타

- EU 집행위원회는 제37회 무역구제 연례보고서에서도 2017년 12월 20일 이후 개시되는 모든 신규 조사 및 종료재심에서 관련 국제협약 비준 여부에 관해 확인하겠다고 통보하였음¹⁹²⁾
- EU는 중국산 유기코팅(organic coated) 철강 반덤핑관세 종료재심에 대표국으로 멕시코를 선정할 시 사회 및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비준 여부를 확인하였음¹⁹³⁾
 - 중국의 시장 왜곡으로 인하여 정상가격 산정 시 멕시코와 말레이시아를 대표국으로 선정한 후 사회 및 환경 보호 수준을 평가했음
 - 말레이시아는 8개 ILO 핵심협약¹⁹⁴⁾ 중 3개 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폐지, 차별금지(freedom of association, on abolition of forced labour, and on non-discrimination))를 비준하지 않았음
 - 또한 주요 환경협약 중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음
 - 멕시코는 ILO 협약 중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ight to Organize and to Bargain Collectively)만 비준하지 않았고, 주요 환경협약을 모두 비준하여 최종 대표국가로 선정되었음¹⁹⁵⁾

192)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2019. 3. 27., p. 40.

193) EU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9.116.01.0005.01.ENG, 검색일자: 2022. 7. 20.

194)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국제노동 기준으로 ILO 핵심협약은 4개 분야(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상 차별 금지)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 남녀동등 보수 협약 고용·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의 8가지 협약이 있음.

195) EU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9.116.01.0005.01.ENG, 검색일자: 2022. 7. 20.

5. 인도

가. 개요

1) 근거 법령¹⁹⁶⁾

- 인도의 무역구제제도는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75; 이하 「관세율법」),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2010)을 비롯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반덤핑과 관련된 재심사의 내용은 「관세율법」 Section 9A에서 Section 9B, 「반덤핑관세 시행령」(Customs Tariff(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Antidumping Duty on Dumped Articles and for Determination of Injury) Rules, 1995; 이하 「반덤핑관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표 III-22〉 인도 무역구제 관련법 체계

법	무역구제 관련 내용
「관세율법」 (Customs Tariff Act, 1975)	Section 8A: 수입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 권한
	Section 8B: 세이프가드
	Section 9: 상계관세
	Section 9A: 반덤핑관세
	Section 9AA: 반덤핑관세의 환급
「대외무역법」 (Foreign Trade(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2010)	Section 9B: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의 예외
	Section 9A: 수량제한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시행령」 (Customs Tariff(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Antidumping Duty on Dumped Articles and for Determination of Injury) Rules, 1995)	

196)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epartment Of Commerc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Compendium of Laws & Regulations』, 2018. 1., Index.

〈표 Ⅲ-22〉의 계속

「상계관세 시행령」 (Customs Tariff(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Countervailing Duty on Subsidized Articles and for Determination of Injury) Rules, 1995)
「세이프가드관세 시행령」 (Customs Tariff(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Safeguard Duties) Rules, 1997)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시행령」 (Safeguard Measures(Quantitative Restrictions) Rules, 2012)

자료: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홈페이지, <https://taxinformation.cbic.gov.in/>,
검색일자: 2022. 7. 18.

- 「반덤핑관세 시행령」 제23조(1A)에서 인도의 중간재심(Mid-Term Review), 제23조(1B)에서 일몰재심(Sunset Review)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관세율법」, 「반덤핑관세 시행령」에 대한 해석은 인도 무역구제 총국 업무 매뉴얼인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Manual of Operating Practices for Trade Remedy Investigations)에서 설명하고 있음
 - 인도의 반덤핑시행령에서는 국내산업의 정의,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 반덤핑조치기간 및 재심, 판정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의 대부분은 WTO 반덤핑협정의 관련 조문을 수용하여 국제규범과 합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표 Ⅲ-23〉 인도 반덤핑시행령 체계

조문	내용	조문	내용
제1조	소제목	제17조	최종 결과
제2조	정의	제18조	관세 부과
제3조	조사당국의 지정	제19조	비차별적 관세 부과
제4조	조사당국의 의무	제20조	관세 부과 개시
제5조	조사의 개시	제21조	관세환급
제6조	조사의 원칙	제21A조	실제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지불된 금액 결정
제7조	비밀정보	제22조	기존 조사대상이 아닌 수출업자의 덤핑마진

〈표 III-23〉의 계속

조문	내용	조문	내용
제8조	정보의 정확성	제23조	재심 제23조(1A) 중간재심, 제23조(1B) 일몰재심
제9조	특정국가에 대한 조사	제24조	제3국에 피해를 일으키는 덤핑
제10조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 마진의 정의	제25조	우회덤핑
		제26조	우회판정 조사개시
제11조	피해 정의	제27조	우회판정
제12조	예비조사 결과	제28조	우회재심사
제13조	잠정관세 부과	제29조	반흡수 재심사
제14조	조사종료	제30조	흡수판정조사의 개시
제15조	가격 약속에 대한 조사 중단 또는 종료	제31조	흡수판정
제16조	정보공개		

자료: Customs Tariff(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Anti-dumping Duty on Dumped Articles and for Determination of Injury) Rules, 1995

2) 무역구제 기관

- 2018년 5월, 인도 정부는 무역구제별 조사기관 기관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이하 DGTR)으로 단일화하여 인도의 수입규제 관련 정책이나 개정 사항, 조사 관련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직 개편 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DGAD(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and Allied Duties),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조사는 DGS(Directorate General of Safeguards), 수량제한 형태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DGFT(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담당하였음
- DGTR은 2018년 5월 17일 상공부 상업국의 고시(F.No. I-34(7)/2018-O&M)에 따라 설립된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하 상무국(Department

of Commerce)의 부속 기관(attached offices)임¹⁹⁷⁾

- 부속기관은 DGTR 및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 이하 DGFT)으로 DGFT는 수입 및 수출의 금지 및 통제에서 수출 촉진으로 그 역할을 전환하여 이를 목표로 하는 대외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음¹⁹⁸⁾
- DGTR은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외국이 인도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방어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함
- DGTR은 준사법기관(Quasi-judicial body, 사법기관인 법원에 준하여 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중간재심사 및 일몰심사의 조사당국, 조사기관은 모두 DGTR을 의미함

나. 중간재심사

1) 신청주체 및 개시요건

- 중간재심의 신청서는 반덤핑관세 부과일로부터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42개월 내에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 제출해야 함¹⁹⁹⁾
- 중간재심의 경우 기존 관세 조치가 부과되는 기간에만 개시될 수 있음
- 원심의 결과에 의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간재심을 신청하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상의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반덤핑조치의 만료일에 가까울 경우 일몰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지정하게 되었음²⁰⁰⁾

197)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Department of Commerce), <https://commerce.gov.in/about-us/attached-offices/>, 검색일자: 2022. 8. 24.

198) DGFT. <https://www.dgft.gov.in/CP/?opt=dgft-organization>, 검색일자: 2022. 8. 24.

199)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39조.

200) 외교부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0. 2., p. 30.

- 중간재심은 기존의 반덤핑관세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중단(폐지)할 수 있지만,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재심이 개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함²⁰¹⁾
 - 인도의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많은 상황일 뿐 아니라, 반덤핑관세율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 변동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원심의 제조자인 심사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제출한 이해당사자(국내산업, 다른 인도 생산자 및 수입자, 소비자 또는 조치대상 수출국의 수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대표자)²⁰²⁾의 요청 또는 조사당국의 직권으로 개시될 수 있음²⁰³⁾
 - 중간재심의 경우에는 인도 국내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일몰재심과 달리 해외 수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반덤핑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인도 내 수입자의 신청 또한 가능함
 -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41조에서는 신청서는 국내산업 또는 수출자, 수입자, 사용자 또는 협회가 그 회원을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협회의 신청도 인정하고 있음

- 직권으로 중간재심을 개시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은 다음의 다수 정보원을 사용할 수 있음²⁰⁴⁾
 - 직권에 따른 개시의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편지 또는 진술서
 - 신뢰할 수 있는 인쇄물 또는 전자 매체의 뉴스 보도
 - 당국이 이용 가능한 정보원에 근거하여 분석한 대상물품의 수입 가격 및 국내 가격에 관한 내부정보

- 구성원 또는 소유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산업의 합병·인수·청산·폐쇄 등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직권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²⁰⁵⁾

201) 외교부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0. 2., p. 30.

202)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4장 제4.12조.

203)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6장 제6.3.2조.

204)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53조.

205)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54조.

-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 관계자의 견해(views) 또는 의견(comments)은 DGTR 웹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피드백 또는 정보에 근거하여 조사당국은 중간재심 조사개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²⁰⁶⁾
- 또한 조사당국은 반덤핑관세 조치 시 최종 판정의 관세 부과표(Duty Table)에 관세 부과 조치를 권고함
- 관세 부과표에 생산자/수출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소유구조의 변경으로 인해 덤핑, 피해 등의 지표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름 변경 신청은 중간재심을 수행하여 그 수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예를 들어 DGTR은 한국의 아연 알루미늄 도금 강판에 반덤핑관세를 KG동부제철을 비롯한 한국 철강사에 부과해오고 있었으며, 그중 KG동부제철에 해당 내용의 중간재심을 개시하였음
 - 지분구조의 변화로 동부제철이 KG동부제철로 변경되어 명칭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DGTR은 중간재심의 개시공지를 통해 재심은 지표 평가가 아닌 명칭 변경의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음²⁰⁷⁾
- 인도의 「반덤핑관세 시행령」에서는 공급국의 중간재심 조사개시에 대한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지의 의무는 없음
 - 다만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상 해당 공급국의 대사관에 조사개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사전통지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²⁰⁸⁾
 - 개별 교역협정을 맺은 아래 국가들에는 더욱 이른 기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권장함
- 조사당국은 모든 대상 국가 또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 조사개시 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짐²⁰⁹⁾

206)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55조.

207)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Case No. AD-MTR-11/2021」, 2021. 10. 13., p. 1~3.

208)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6장 제6.7조.

209)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47조.

- 조사당국이 다수의 국가들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 경우 사건의 사실과 가치(merit)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관세를 권고(recommendation) 또는 수정할 수 있음²¹⁰⁾
- 재심사 신청이 정상가치, 수출가격, NIP(Non-Injurious Price; 이하 NIP)²¹¹⁾ 덤핑 마진 또는 피해마진과 같은 지표의 변화에 기인하여 이루어질 경우 필요한 증거뿐 아니라 지표의 변화에 대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함²¹²⁾
- 중간재심 신청에 대해 당국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시 국내산업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종결 이유를 기재하여 조사 종결에 대해 통지함²¹³⁾
 - 중간재심사 신청자는 개별 공청회의 기회를 제공받아 당국에 사건에 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내용과 자료를 검토한 후 재심 개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종결을 위한 구두명령을 신청자에게 전달함²¹⁴⁾
 - 조사 종결 명령서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된 내용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함

2) 원심절차의 적용 여부

- 중간재심 시에는 원심에서 정의된 조사대상 물품²¹⁵⁾(Product Under Consideration; 이하 PUC)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한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함²¹⁶⁾
 - 중간재심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물품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확대될 수 없지만 국내산업이 특정 유형의 품목군을 생산하지 않게 되었을 시 당국은 본래의 조사대상 물품 범위를 좁히거나 특정 유형의 물품을 제외할 수 있음

210)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47조.

211) 인도 국내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중립 가격.

212)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50조.

213)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6장 제6.11조.

214)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45조.

215)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 요청한 물품.

216)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3장 제3.27조.

- 중간재심 수행 방법은 원래의 반덤핑조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신청자는 원심조사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증거를 통해 신청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함²¹⁷⁾
 - 변화된 상황의 지속적 특성(상황이 지속해서 변화하였다는 것)으로 인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함
- 중간재심이 관세의 변경 및 철회의 측면에서 원심과 다른 중요한 특징은 덤핑 및 피해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에 대한 가능성 분석(likelihood analysis)이 필요하다는 것임²¹⁸⁾
- 중간재심 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파악된 경우, 조사당국은 「반덤핑관세 시행령」 제5조 및 무역구제 지침서 제6장(조사개시, 조사개시 통지, 조사 폴더)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총국장의 승인을 받아 개시를 통지해야 함²¹⁹⁾
- 조사개시 통지 시 중간재심의 경우 Demand Order letter와 함께 TRU(Tax Research Unit: 이하 TRU) 및 국세청에도 조사개시 공고의 사본을 송부해야 함
 - 인도국세청은 CBDT(Central Board of Direct Taxes)와 간접세(관세 포함)를 담당하는 CBIC(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로 이루어져 있으나, TRU를 별도로 두어 세무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조사개시 공고는 영어와 힌디어로 발행되며 원본공고는 총국장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사본(영어와 힌디어)은 서명 당일에 관보에 고시해야 함²²⁰⁾

3)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 조사당국이 중간재심 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데 피해분석을 통해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관세 부과 연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²²¹⁾

217)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43조.

218)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48조.

219)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46조.

220)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6장 제6.12.2조.

221)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0장 제10.21조.

- 저가 판매의 효과 분석을 비롯하여 조사대상국으로부터 제3국으로의 수출이 인도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가격이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NIP를 계산하므로, 조사 개시를 검토할 시 피해분석을 피해 마진보다 더 중요시함
- 피해 마진은 관세의 조정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피해를 계산할 시 사용됨
-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에서는 필수사실 기술서 작성 시 피해의 분석에 경제적 지표가 더 중요하므로 중간재심의 경우 피해마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음
 - 필수사실 기술서의 경제적 지표는 시장 점유율, 수익성, 투자 수익률, 가동률, 판매량, 판매 가격, 고용 및 임금, 생산성, 덤핑의 영향, 현금 흐름, 재고 자산, 자본 투자 여력,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성장률, 피해분석과 관련이 있는 기타 경제적 요소 등을 의미함²²²⁾
 - 필수사실 기술서는 4개의 부속서(Annexures)가 포함되며, Annexure-I 일반 사항²²³⁾에서 중간재심의 경우 신청자 및 검토 범위가 별도로 기술되어 있어야 함
-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에서 기술하는 중간재심의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음²²⁴⁾
 - 정상가치, 수출가격, NIP, 덤핑마진 또는 피해마진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한 기존 부과되고 있던 반덤핑관세의 철회/수정
 - 생산자, 수출자의 이름 변경
 - 관세 부과 형태의 변경
 - PUC의 범위 내에서 일부 물품 제외
 - 그 외 최종판정 내용에 대한 정정, 수정(amendment, modification)
- 조사당국은 덤핑, 피해, 인과관계 및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재심을 수행하는 관행을 확립하고 있음²²⁵⁾

222)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6장 제16.13.3조.

223) Annexure-I 일반 사항에는 절차, 조사대상 물품, 국내산업 현황, 중간상황변동재심의 경우 신청자, 검토 범위, 비밀유지, 당국이 관련 있다고 판단한 여러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기록됨.

224)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38조.

225)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36조.

- 재심의 이해 당사자들은 덤핑만 포함하거나 수출업자와 관련된 피해만 포함하는 부분적인 검토 관행을 도입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는 제안 단계에 불과하며 현재는 관행대로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조사당국에 의한 중간재심사 질의 범위는 접수된 정보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관세의 지속적인 부과가 정당한지에 관한 확인으로 제한됨²²⁶⁾
 - 본질적으로 심사 질의는 반덤핑관세 부과 당시 존재했던 조건이 더 이상 계속 부과할 명분이 없을 정도로 변화했는지에 관한 확인으로 제한되어야 함
 - 질의의 범위는 정상가치, 수출가격, 덤핑마진, NIP의 정정,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등 다양한 지표에 관한 확인 등임
-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를 검토하는 경우 조치 철회 후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일환으로 국내산업의 현행 경제 성과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함²²⁷⁾

4) 재심사기간

- 재심사의 경우 「반덤핑관세 시행령」 제17조(최종 결과)에 포함된 그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²²⁸⁾ 반덤핑조치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심사의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²²⁹⁾
- 중간재심사 결과 조사당국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부과조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사당국은 중앙정부에 조치의 철회를 권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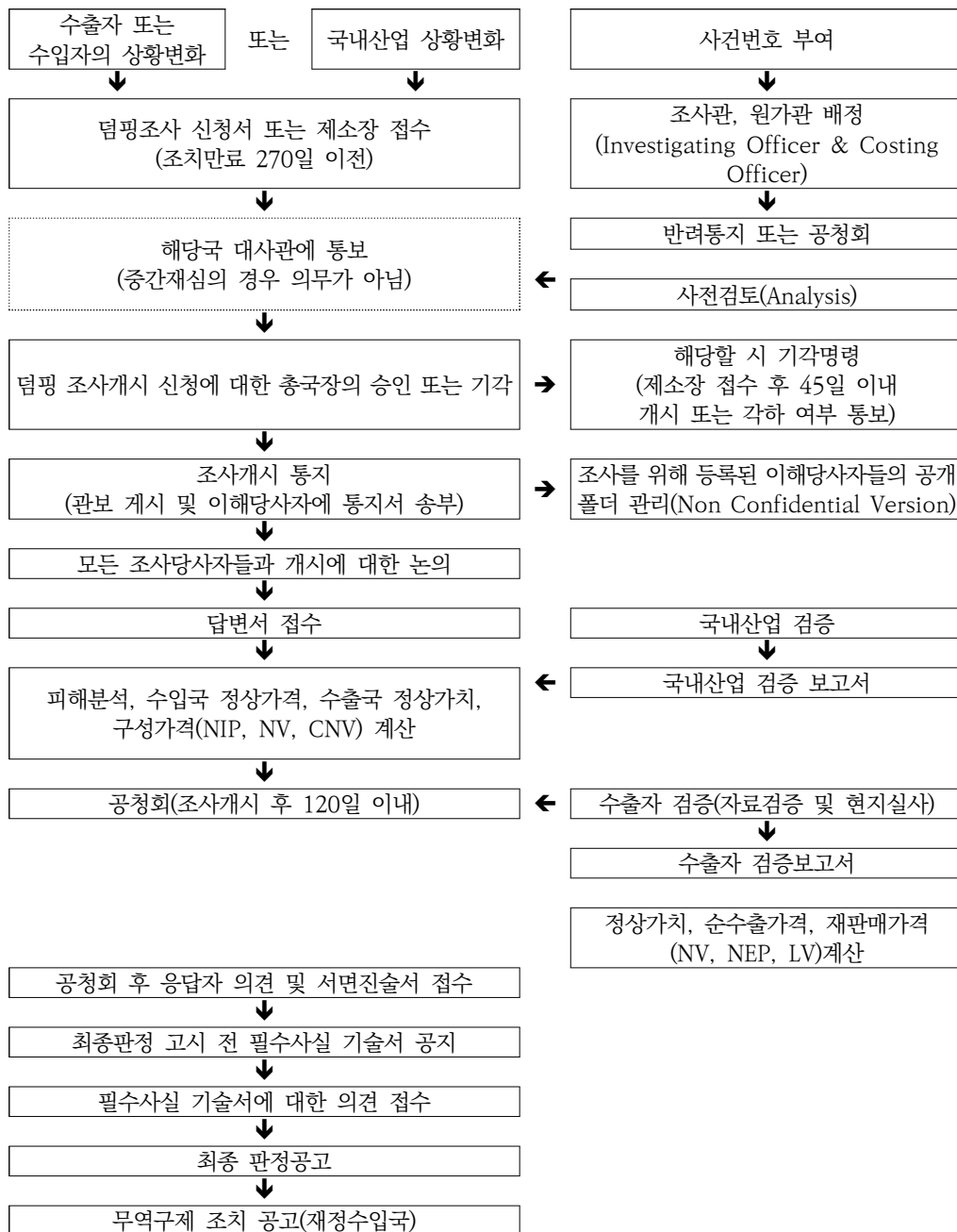
226)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37조.

227)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52조.

228)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10/2021-Customs (N.T.), 2021. 2. 1., pp. 1~2.

229) 「반덤핑관세 시행령」 제23조(2).

[그림 III-6] 인도 중간재심사 절차도



자료: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p. 11

다. 일몰재심사

1) 신청주체 및 개시요건

- 2021년 4월 21일 DGTR은 반덤핑 일몰재심사 일정 개정 관련 공고(「Trade Notice 03.2021」)에 따라 기존 조치 만료일 전 최소 270일 전까지 일몰재심사의 개시 신청을 공지함²³⁰⁾
 - 2017년 12월 DGTR의 공고(「Trade Notice 02.2017」)에서는 국내산업에 의한 일몰재심 신청서는 기존 반덤핑조치의 종료가 이루어지기 기존 조치 만료 최소 27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2018년 발간된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에 따르면 24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³¹⁾
 - 2020년 4월 DGTR의 공고(「Trade Notice 02.2020」)에 따라 일몰재심사 신청은 180일로 다시 변경되었으나, 2021년 공고로 2017년 기준의 270일로 재변경되었음
 - 이는 DGTR이 반덤핑조치의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일몰재심사 최종판정을 더욱 빠르게 종료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정해진 신청기한을 초과한 경우, DGTR은 해당 사례에 따라 신청인이 실질적 어려움 (bonafide hardships)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²³²⁾

- 인도 국내 생산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일몰재심사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²³³⁾
 - 원심을 신청했던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의 대표자²³⁴⁾를 비롯하여 인도의 그 어떤 국내 생산자 모두(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는 PUC 및 동종물품의 주요 부분을 생

230) Government of India Department of Commerce, 「Trade Notice 03.2021」, 2021. 4. 12., p. 5.

231)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2장 제2.5조.

232) Government of India Department of Commerce, 「Trade Notice 03.2021」, 2021. 4. 12., p. 1.

233)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4장 제4.13조.

234)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6장 제6.3.1조.

산하는 인도 생산자 포함) 관세 부과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²³⁵⁾

- 관세 부과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자는 원심 또는 그 어떤 사전 조사의 신청자와 동일할 수도,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국내산업은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중단하는 것이 인도 국내산업에 대해 덤핑과 피해를 재발할 수 있어 반덤핑관세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함²³⁶⁾

□ 일몰재심사 신청은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모든 대상 국가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만 적용할 수도 있음²³⁷⁾

□ 일몰재심사 신청 시에는 「Trade Notice No. 02/2017」에서 정하는 덤핑 및 피해의 지속 가능성 및 재발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다음과 같음²³⁸⁾

- POI(조사시간, Period of Investigation; 이하 POI) 및 직전 회계연도 3년의 기록을 포함하여 제안된 POI 동안 대상 국가의 해당 제품의 총 용량 및 잉여 용량
- 대상 국가의 생산자 및 수출자가 인도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는 수량 및 가격
 - 특히 개별 평가가 수행된 생산자 및 수출자를 위한 개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통합 정보를 제출할 수 있음
- 대상 국가의 생산자 및 수출자의 수출 지향성
 - 특히 개별 평가가 수행된 생산자 및 수출자를 위한 개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통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반덤핑관세 철폐 후 인도 시장이 수출 대상지로 선택된 이유에 대한 정당성 및 인

235)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12조.

236)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15조.

237)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16조.

238)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commerce, 「Trade Notice No. 02/2017」, 2017. 12. 12., p. 2.

도 시장의 매력도

- 일몰재심사의 경우 조사당국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적법한 신청자에 의한 서면 신청에 기초하여 조사가 개시되는 것을 우선으로 함²³⁹⁾
 - 조사당국은 과거 법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당국이 자동으로 일몰재심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과거 관행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였음
 - 일몰재심조사는 조사당국의 필수 요구 사항이나 의무가 아니며 「반덤핑관세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델리 고등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²⁴⁰⁾
 - 조사당국은 사건 별로 판단하여 재심을 개시하거나 개시 요청을 기각하고 있으며, 일몰재심사의 개시는 국내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무역구제조사 실무지침서상 설명하고 있음

- 「반덤핑관세 시행령」에서는 공급국에 대한 일몰재심사 시 조사개시 사전통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²⁴¹⁾
 - 다만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상 해당 공급국의 대사관을 통해 조사개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사전통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일몰재심사 개시를 고려할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신청서에 증명되어 있는 경우, 조사당국은 총국장의 승인을 받아 일몰재심사 개시통지서를 발행해야 함²⁴²⁾

239)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6장 제6.3.1조.

240)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32조(해당 판결에 대해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에서는 Kesoram Rayon v. Designated Authority &Ors W.P.(C) 146/2017; Gujrat Alkalies& Chemicals Ltd. v. Designated Authority &Ors W.P..(C) 147/2017; Grasim Industries Ltd. V. Designated Authority &Ors W.P.(C) 247/2017; TECHFAB India Industries Ltd. v. Designated Authority &Ors W.P.(C) 640/2017; STRATA Geosystems(India) Pvt. Ltd v. Designated Authority &Ors W.P.(C) 641/2017;VVF(India) Limited v. The Director General of Safeguards &Ors W.P.(c) 1847/2017; Strata Geosystems(India) Pvt Ltd &Anrv. Union of India &Anr W.P.(C) 5088/2017; Grasim Industries Ltd vs. UOI &Anr W.P.(c) 5089/2017; Kesoram Rayon v. UOI &Anr W.P.(c) 5095/2017; Aarti Drugs Ltd v. Designated Authority &Ors W.P.(C) 7464/2017(High Court of Delhi)를 예로 들고 있음.

241)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6장 제6.7조.

242)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22조.

- 관세 부과에 대해 1년(또는 그 미만) 연장에 필요한 조치 요청을 담은 개시통지서가 동봉된 DO(Demi Official) Letter를 TRU에 송부해야 함²⁴³⁾
 - 그러나 기존 관세의 부과기간이 수개월 간 유효한 상황에서 일몰재심이 시작된 경우, TRU는 즉시 연장 통지를 발행하지 않고 최종판정을 통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 될 시 통지할 수 있음²⁴⁴⁾
 - 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일몰재심사의 최종결정은 관세 통지(Duty Notification)의 유효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 기존 조치 및 추가 조치 사이에 적용 시차가 없어야 함
 - 기존 조치의 연장 시 해당 조치는 통지 당일부터 적용됨²⁴⁵⁾
- 일몰재심사도 중간재심사와 동일하게 조사당국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시, 국내산업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합당한 종결 이유를 기재하여 조사 종결에 대해 통지함²⁴⁶⁾
- 일몰재심사 신청자는 개별 공청회의 기회를 제공받아²⁴⁷⁾ 당국에 사건에 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내용과 자료를 검토한 후 재심 개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종결을 위한 구두명령을 신청자에게 전달함²⁴⁸⁾
 - 조사 종결 명령서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된 내용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함

2) 원심절차의 적용 여부

가) 절차

- 일몰재심사는 중간재심사와 동일하게 제조자와 당국 모두 PUC의 범위를 변경할 수

243)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23조.

244)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23조.

245)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24조.

246)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6장 제6.11조.

247)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상 중간재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되어있으나, 조사절차 표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이 일몰재심사에도 적용됨을 볼 수 있음.

248)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45조.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간재심사의 경우와 같은 당위성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기존 PUC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예외를 둠²⁴⁹⁾

- 중간재심사에서는 국내산업이 특정 유형의 품목을 생산하지 않게 된 경우 본래의 PUC의 범위를 좁히거나 특정 유형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몰재심사의 경우 범위를 좁히는 것만 가능함

- 일몰재심의 경우 원심과 달리 조사개시 시 TRU가 추가공지(Follow up notification)를 발행하여 필요한 추가 절차를 수행한 후 DGTR 웹사이트에 조사개시 공고를 게재해야 함²⁵⁰⁾

- 조사개시 공고는 영어와 힌디어로 발행되며, 원본공고는 총국장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사본(영어와 힌디어)은 서명 당일에 관보에 고시함²⁵¹⁾

나) 미소마진 적용 여부

- 인도는 반덤핑 원심 조사에서 미소마진으로 판정된 기업까지도 중간재심 혹은 반덤핑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의 조사대상으로 포함해 왔음

- 그러나 해당 관행은 미소마진 결정 업체에 대해 조사 종료를 결정한 WTO의 판결과 반대되므로 협정 위반에 대한 소지가 컸고, DGTR은 2020년 5월, 변칙적인 방법으로 미소마진으로 조사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 새롭게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음²⁵²⁾

- 2015년 개시된 인도네시아·베트남산 합판 사건에서 미소마진으로 판정되어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던 김틴(Kim Tin)사를 2020년 일몰재심사의 대상으로 추가하지 않고 해당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음

249)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3장 제3.28조.

250)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6장 제6.12.3조.

251)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6장 제6.12.2조.

252) 월간통상, https://tongsangnews.kr/webzine/2103/sub1_3.html, 검색일자: 2022. 8. 4.

- DGTR은 Plain Medium Density Fibre board²⁵³⁾에 대한 고시를 통해 (Customs Notification No. 34/2016-Customs (ADD)) 2021년 7월 13일까지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고 있었음
- 인도 국내 업계는 또한 EU의 관행을 인용하여 미소마진 적용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몰재심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반덤핑조사개시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음
 - 해당 관행은 2012년 EU 일반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EU-중국 다리미판 사례와 흡사한 모양새로 기존 관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국내산업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인도 국내 업계는 본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반덤핑조사개시 근거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음
 - 또한 인도 국내 업계는 WTO 패널의 Mexico-Beef and Rice, Ukraine-Ammonium Nitrate 사례에서 개별 당사자에 대해 미소마진이 결정되면 즉시 조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DGTR은 2020년 5월 11일 자로(Notification No. 6/9/2020 - DGTR 11th May, 2020) 「반덤핑관세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킴틴사에 대한 새로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음
- 킴틴사는 인도 국내산업의 주장과 반대로 최초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덤핑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일몰재심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반덤핑조사는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DGTR은 2021년 5월 7일 새로운 반덤핑조사를 종료하였으나, 미소마진이 결정된 킴틴사에 무세를 적용하되(nil duty) 킴틴사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²⁵⁴⁾

253) 목재 폐섬유와 요소 포르말데히드 수지 또는 멜라민 수지를 열과 압력을 가해 접착시켜 만든 복합 목재 제품.

254)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NOTIFICATION TERMINATION ORDER Case No.

- 인도에서는 미소마진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무세를(nil duty) 적용하되, 조사를 종료하지 않는(재심사의 대상으로 업체를 포함할 수 있는) 관행을 유지해오고 있음
 - 중국의 전자계산기, EU,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및 미국의 에틸 헥산올(2-Ethyl Hexanol), 한국 및 중국의 가성소다에도 해당 관행을 적용하였음²⁵⁵⁾
 - 특히 한국산 가성소다의 경우 생산자 및 수출자가 모두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으나, 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 후 종료재심사 시 덤핑 무혐의 받은 2개의 한국산 대상제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 대해서 재조사하였음²⁵⁶⁾
- DGTR은 조사 종료 공지를 통해 특정 당사자에 대해 미소마진이 판정되었을 시, 「반덤핑관세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조사가 아닌 「반덤핑관세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를 밝혔음
- 또한 해당 결정을 통해 조사 종료에 대한 「반덤핑관세 시행령」 제14조(c)(미소마진 결정)의 발동이 개별 당사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사 중인 국가에 관한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미소마진이 결정된 개별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는 태도를 공고히 함²⁵⁷⁾
- 인도의 「반덤핑관세 시행령」 제14조는 WTO 반덤핑협정의 제5.8조(미소마진에 따른 조사 종료)에 근거하여 규정되었음
 -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 및 「반덤핑관세 시행령」 모두 미소마진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를 즉시 종료하도록 요구하지만, 조사의 종료가 조사대상 국가 또는 특정 생산자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둘 다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ADD-OI-08/2020 Dated 7th May, 2021』, 2021. 5. 7., pp. 5~7.

255) De-minimis dumping margin: Termin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7d1245f-67e1-4daa-9f88-0bb655370f0a>, 검색일자: 2022. 8. 9.

256) DGTR, <https://dgtr.gov.in/anti-dumping-cases/caustic-soda-china-pr-and-korea-rp>, 검색일자: 2022. 8. 12.

257) De-minimis dumping margin: Termin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7d1245f-67e1-4daa-9f88-0bb655370f0a>, 검색일자: 2022. 8. 9.

않음²⁵⁸⁾

3) 덤핑 및 피해의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

- 원심과 일몰재심사는 반덤핑관세 부과가 정지되었을 시, 이로 인해 덤핑 및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생하는지 여부 검토를 위한 가능성 분석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²⁵⁹⁾
 - 원심과 덤핑 및 피해의 존재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²⁶⁰⁾

- 다만 일몰재심사는 반덤핑관세 부과 당시 존재했던 조건이 더 이상 계속된 관세 부과에 대한 명분이 없을 정도로 변화했는지 평가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됨²⁶¹⁾

- 조사당국이 일몰재심 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데 피해분석을 통해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관세 부과 연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²⁶²⁾
 - 저가 판매의 효과 분석을 비롯하여 조사대상국으로부터 제3국으로의 수출이 인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되는 가격으로 수출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NIP를 계산하므로, 조사개시를 검토할 시 피해분석을 피해 마진보다 더 중요시함
 - 피해마진은 관세의 조정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피해를 계산할 시 사용됨
 -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에서는 필수사실 기술서 작성 시 피해의 분석에 경제적 지표가 더 중요하므로, 일몰재심의 경우 피해마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음

258) De-minimis dumping margin: Termin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7d1245f-67e1-4daa-9f88-0bb655370f0a>, 검색일자: 2022. 8. 9.

259)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17조.

260)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26조.

261)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18조.

262)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0장 제10.21조.

- 필수사실 기술서의 경제적 지표는 시장 점유율, 수익성, 투자 수익률, 가동률, 판매량, 판매 가격, 고용 및 임금, 생산성, 덤핑의 영향, 현금 흐름, 재고 자산, 자본 투자 여력,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성장률, 피해 분석과 관련이 있는 기타 경제적 요소 등을 의미함²⁶³⁾
 - 필수사실 기술서를 통해 일몰재심사의 경우 조치가 처음 부과된 때부터의 현재까지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덤핑과 피해에 대한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분석 시, 일반적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후 수입국에서의 덤핑 제품 생산, 수요, 덤핑 수입되었던 물품에 대한 요구사항의 패턴 변화, 수출국과 국제시장의 가격 변화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함²⁶⁴⁾
- 제3국 수출에 대한 덤핑 결정, 덤핑 된 수입량
 - 인도 시장의 가격 매력도(price attractive),
 - 수출업체 재고 수준
 - 국내산업별 역량 확대
 - 조치 적용 대상국에서의 대상물품 수요 감소
 - 조치 적용 대상 국가의 수요 공급 격차
 - 조치가 없을 시 가격인하(Price undercutting)
 - 국내산업의 취약성
 - 인도 시장에서 조치대상 국가의 시장 점유율
 - 조치대상 국가의 생산자 제품 이전 가능성
 - 국내산업의 성과 향상 측면에서 관세 조치의 효율성 등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평가할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세부적 예시는 다음과 같음²⁶⁵⁾
- 덤핑평가(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의 가능성 평가)의 경우 조사기간 중 수입물품

263)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6장 제16.13.3조.

264)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17조.

265)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30조.

물량, 덤핑마진 수준, 조치시행 전후 수입량, 수출국 생산능력, 수요, 국제가격, 수출국 정상가치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함

〈표 III-24〉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평가를 위한 검토 지표

덤핑평가
POI 및 POI 후(6개월) 간의 수입물품의 물량 및 가치
국내산업의 실적 개선 측면에서 관세의 효과
조치 시행 전후의 수입량
(수출국)생산자/수출자의 실제 생산
수출국의 생산능력
수출국의 수요
수출국의 과잉생산(해당 시)
생산능력 확대 및 자본적 지출 계획
수출업체의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경로 및 국제가격(비교 가능한 경우)
시장 역학(dynamics)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의 변화
수출업자에 의한 관세 흡수(또는 조치를 회피하는 다른 수단)
수출국의 정상가치
원가 미만의 판매 증거
POI 및 POI 후(6개월) 간의 덤핑마진 수준
소비자 선호의 변화
수출업자의 동종상품 판매에 대한 수출국 국내 이익
무역 개선 조치로 인해 다른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다른 시장의 이용 가능한 정보, 관세 부과 조치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대상 상품이 인도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이유에 대한 입증 가능한 증거와 이유

자료: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30조

-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평가할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세부적 예시는 다음과 같음²⁶⁶⁾
 - 피해평가(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의 가능성 평가)의 경우 인도 산업, 조치 적용 후 생산능력, 시장 점유, 시장 또는 국내산업 운영의 구조적 변화, 재판매가격, 가격

266)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30조.

억제 및 하락, 국내 판매가격 및 수입 재판매가격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함

〈표 III-25〉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평가를 위한 검토 지표

피해평가
인도 산업 개관
반덤핑관세 부과 후 생산능력 및 변화
시장 점유
관세가 부과된 이후 시장 또는 국내산업 운영의 구조적 변화
재판매가격 추세
가격 억제 및 하락
국내산업의 판매가격과 수입의 재판매가격 비교
POI 및 POI 후(6개월) 간 NIP의 재판매가격
다른 피해의 원인
기술, 제품 유형,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 수요와 공급

자료: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7장 제17.30조

4) 재심사기간

- 재심사의 경우 「반덤핑관세 시행령」 제17조(최종 결과)에 포함된 그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²⁶⁷⁾ 반덤핑조치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심사의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²⁶⁸⁾
-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 서면상 근거가 제출될 경우, 사실 판단에 따른 총국장의 승인에 따라 6개월, 9개월, 15개월, 18개월의 기간이 POI로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67)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10/2021-Customs(N.T.), 2021. 2. 1., pp. 1~2.

268) 「반덤핑관세 시행령」 제23조(2).

- 조사당국은 접수된 제소장에 대하여 15영업일 이내에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여 제소자에게 통지해야 함²⁶⁹⁾
 - 제소자는 해당 내용을 통지받은 경우 5일 내에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조사당국은 요청된 일몰재심 조사개시를 고려하기 전에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제소자에게 개인 청문회를 제공할 수 있음²⁷⁰⁾
- 제소장 접수 후 45일 이내 증거의 충분 여부를 파악하여 조사의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²⁷¹⁾, 최종 조사 결과 또한 기존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관세의 조치가 만료되기 최소 45일 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고가 이루어져야 함²⁷²⁾
- 조치기간 만료까지 일몰재심 최종판정이 나오지 않을 시, 1년 이내에서 반덤핑조치기간 연장이 가능함²⁷³⁾
 - 그러나 일몰재심사의 조사기간은 12개월이며, 특정 상황이 존재할 시 조사당국의 승인을 얻어 최대 18개월까지 조사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리 중(Sub judice)임
- 일몰재심사의 경우, 5년의 추가 기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몰 연장은 5년 단위로 진행됨²⁷⁴⁾
 - 5년의 추가 기간은 그 연장에 대한 명령일로부터 산정함²⁷⁵⁾

269)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commerce, Trade Notice No. 02/2017, p. 1, 2017. 12. 12.

270)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commerce, Trade Notice No. 02/2017, p. 1, 2017. 12. 12.

271)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commerce, Trade Notice No. 02/2017, p. 1, 2017.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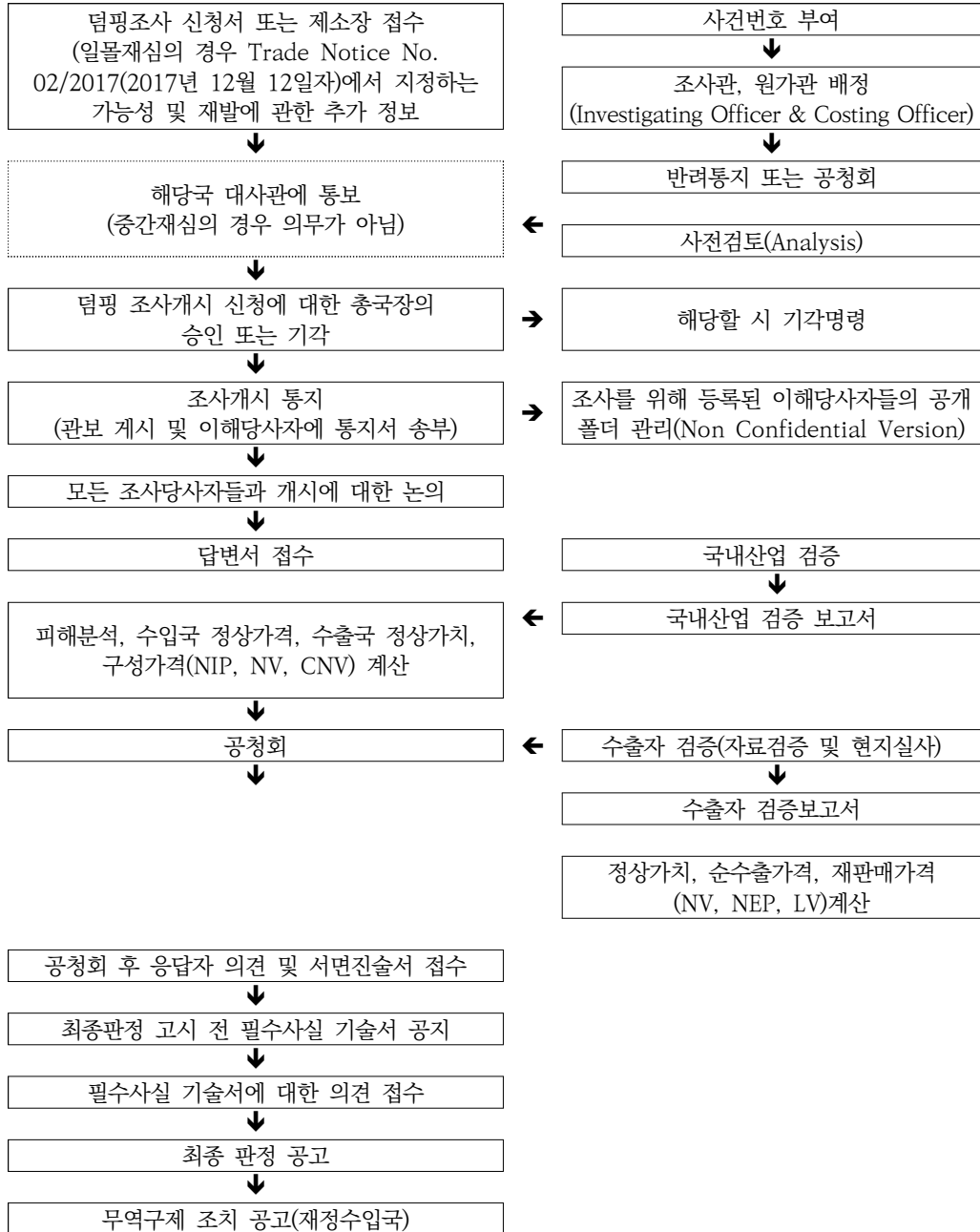
272)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commerce, Trade Notice No. 02/2017, p. 1, 2017. 12. 12.

273) 「관세율법」 9A(5).

274)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제16장 제16.53조, 「관세율법」 9A(5).

275) 「관세율법」 9A(5).

[그림 III-7] 인도 일몰재심사 절차도



자료: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p. 11

IV. 결론

1. 무역구제 지원 강화

- 기업이 재심에 대응할 때 어려운 점은 원심에서 사건의 피해판정 쟁점이 드러나 있고, 이로 인해 덤핑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판정 번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임
 - 원심에서 기업정보, 조사 기준 등 피해판정 요소가 일차적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기업은 재심 대응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 준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

- 특히, 미국의 반덤핑재심제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규정이 복잡하고 재량적 요소가 많은 편으로 국내기업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심은 조사기법에 대한 WTO 대원칙은 있으나, 재심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각국의 재량이 많이 포함된 조사기법들로 덤핑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한 예로, 미국은 질의서 응답에 대한 충분성 여부에 기초해 신속재심사와 정식재심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속재심사로 분류되면 대부분 덤핑으로 판정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
 - <표 IV-1>은 미국이 QV(질의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절차상 규정을 준수했다고 인정하고, 미제출한 기업에 대해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해 증빙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분류한 사례임
 - 일본산 유정용광판 사례에서도 피소 업체가 보충자료를 미상무부가 정한 시한이 지나 접수했다는 이유로 재심에서 제출 자료를 고려하지 않았고, WTO 패널 역시 마감

시한은 조사당국이 일몰재심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수단이라 보고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표 IV-1〉 QV 질의서 제출 여부를 통해 본 중소기업의 재심 대응 현황

순번	회사명	QV 질의서 제출 여부
1	부산커플링	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제출을 거절당함
2	신창산업	미제출
3	산동금속공업	제출(의무답변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 참여 포기)
4	삼영피팅	제출, 의무답변자
5	TITUS 산업, 다선, 동인무역	미제출
6	부광	미제출
7	신우기술	미제출
8	건세고압	제출
9	제오테크	제출
10	SD 하이텍	제출

주: Q&V Questionnaire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출 물량, 금액 정보 등의 자료를 기재해야 함
 자료: 심종선·곽동철, 「개별조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에 적용될 덤핑마진을 산정 관행 비교연구」, 『무역구제연구』 통권 61호, 2021. 5., p. 46

- 이처럼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질의서에 대해 미제출하거나, 제출했으나 기한 미준수 등의 이유로 재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재심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인력, 재정 부족으로 절차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무역구제의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의 재심 진행 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재심 개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 구체적으로 제조요건 확인, 서식 작성, 단계별 절차 등 기업이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사 대상일 경우 대한 상담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무역구제에 대한 설명회나 컨설팅을 제공해 제조 신청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포럼 등을 통해 동종 업체 간 현황을 공유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해 보임

- 현재 반덤핑과 관련한 세미나들이 주로 수입규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무역구제와 관련해 기업에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조사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 정보를 공유하는 조사업무 수행이 필수적임
 - 조사업무는 자료화에 역량을 강화하며, 국내기업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 기업 내 리서치센터나 통상대응팀에서 모니터링 및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 사건 위주로 진행되고 중소기업은 여건이 불리하므로 무역구제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미국 ITC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경제·무역·관세에 관한 조사 연구기능인 것처럼 우리나라 무역위원회 또한 국제무역제도 및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와 연구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ITC는 한국의 무역위원회에 비해 인적 구성이 방대하며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어 신뢰성이 높음
 -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경제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다수 고용하고 있고, 내용 면에서도 교역상대국의 무역 조치에 관한 조사까지 포함하여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미국의 ITC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전체 운용인력은 403명이며, 피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실이 전체인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²⁷⁶⁾

276) USITC, Budget Justification 2022, https://www.usitc.gov/documents/fy_2022_congressional_budget_justification.pdf, 상무부 산하 ITA는 2021년 기준 1,481명임,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2020-02/FY_2021_DOC_BiB-021020.pdf, 검색일자: 2022. 8. 10.

- ITC 전체인력 403명 중 193명이 운영실에서 근무함
 - ITC는 전체인력을 460명까지 증원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 인력 역시 225명으로 증원할 계획을 세움

- 한편,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 위원을 제외한 전체인력은 총 47명이고, 그 중 덤핑 및 덤핑재심 관련 부서인 산업피해조사과 7명, 덤핑조사과 7명 수준임²⁷⁷⁾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와 47명의 무역조사 실로 이루어져 있음
 - 산업피해조사과는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판정, 구제조치 및 구제조치의 재검토,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부서 총원 7명 중 산업피해조사 담당관은 4명임
 - 덤핑조사과는 덤핑사실과 덤핑률을 조사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역구제 지원을 위한 시행인력, 이행을 위한 예산 등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심은 집행기관의 재량적 요소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향후 통상마찰 발생 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역구제를 위한 집행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필수불가결함

277) 인도와 중국은 최신현황 자료 부재로 비교할 수 없었으며, EU는 연합국이므로 비교를 생략하였음.

2. 중간재심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

- 우리나라의 중간재심 현황을 살펴보면, 2008~2021년까지 종결된 재심 중 중간재심 건수는 단 2건에 그치는 등 그 활용도가 낮음
 - 최근 5년간 연평균 반덤핑조사 건수는 6.6건이며, 중간재심은 0.2건, 종료재심은 3.2건임

-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해도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4건 중 중간재심 사례는 없고 모두 종료재심에 해당함²⁷⁸⁾
 - 2022년에 조사개시된 원심 중 조사 진행 건은 2건²⁷⁹⁾, 조사개시된 종료재심 중 조사 진행 건은 2건²⁸⁰⁾이며, 원심 및 재심의 조사 종결 건은 없음
 - 2021년에 조사개시된 원심 중 조사 진행 건은 4건²⁸¹⁾, 조사개시된 원심 중 조사 종결 건은 2건²⁸²⁾이며, 2021년에 조사개시된 종료재심사 중 조사 종결 건은 2건임²⁸³⁾

278) 무역위원회 > 무역구제 > 무역구제조사 진행, 무역구제조사 종결 조사건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www.ktc.go.kr/proInvestList.do>, 검색일자: 2022. 7. 27.

279)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280) 중국 및 인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4차),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덤프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281)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

282)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프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

283)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프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프방지 조치 4차 재심.

〈표 IV-2〉 우리나라 재심 현황(종결 건 기준, 2008~2021)

연도	중간재심	종료재심
2021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2020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 필름
		중국산 H형강
2019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문구류용 원형강)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2차)
		중국산 침엽수합판
		중국산 합판(2차)
		말레이시아산 합판(3차)
2018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4차)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인도산 초산에틸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
2017		중국 및 인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3차)
2016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말레이시아산 합판
		중국산 합판
2015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2014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식유 부분연신사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2013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말레이시아산 합판
2012		미국, 인도, 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식유 연신가공사

〈표 IV-2〉의 계속

연도	중간재심	종료재심
2011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중국, 인도산 PET 필름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태국,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2010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2009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산 염화콜린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인도네시아, 중국산 백상지
2008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자료: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사례 조회하여 저자 작성

- 중간재심의 중요성은 상황변동을 조치기간 중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의 연례재심제도는 중간 변동사항 반영을 통해 덤핑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황변동유형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고 다른 종류의 재심에 비해 상황변동재심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나, 이는 연례재심이 상황변동재심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임²⁸⁴⁾
- 다수의 연례재심 사례에서 덤핑률의 변화가 없는 반면, 아래 〈표 IV-3〉의 변압기 연례재심에서는 작게는 0.89%, 많게는 44.55%의 덤핑률 변동이 발생한 사례도 있음

284) 상황변동재심조사 신청은 원심조사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자동 개시되는 연례재심사를 통해 조사와 판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원심조사 종료 후 24개월 내에는 신청이 제한됨.

〈표 IV-3〉 미국 연례재심 덤핑률 변화(일진전기 변압기 고율관세 부과 사례)

일정	덤핑산정	변화율
원심 반덤핑 최종판정(2012)	29.93%	-
1차 재심 (2017)	29.04%	0.89% 감소
2차 재심 (2019)	40.73%	10.69% 증가
3차 재심 (2020)	37.42%	3.31% 감소
4차 재심 (2021)	52.47%	15.05% 증가
5차 재심 (2019)	7.92%	44.55% 감소

자료: 워싱턴 통상정보, 한국무역협회, p. 2

- 다른 예로, 2021년 해상운임이 급격히 상승했는데 미국은 연례재심을 통해 해당년도의 변동사항을 덤핑마진율에 상향해서 반영하고 예치한 반덤핑관세액을 재산정된 덤핑마진율로 정산함
 - 덤핑마진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이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반덤핑관세를 상향해 추정함
- 즉, 해상운임 급등이라는 상황변동을 연례재심
- 에 반영해 기존 반덤핑조치 중인 생산 업체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를 늘려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해상운임은 2020년 1월 1,542달러에서 2021년 12월 7,019달러로 4.5배 상승했으며, 해상운임 상승 전 덤핑마진율이 20%라고 한다면 해상운임 상승 후 덤핑마진율은 26%로 상승함²⁸⁵⁾
 - 현재 반덤핑재심 중인 한국산 제품의 연간 수출액에 대해 덤핑마진율 6%를 산정해 계산한 금액만큼의 관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임
- 이처럼 중간재심을 통한 변동성 반영은 원심과 달리 미래에 일어날 덤핑 및 피해에 대한 판정이라는 점에서 수출기업에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음

285) 심종선, 「해상운임 급등이 야기할 대규모 반덤핑관세 추정사태에 대비해야」, 『무역구제』 통권 제75호, 2021, pp. 29~36.

- 반덤핑조치 효과가 장기간 고정되는 종료재심은 조치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재심사가 시행되면 덤핑률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실이 생길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에도 덤핑가격에 대해 매년 재검토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동 조항은 매해 덤핑률을 재산정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례재심과 유사하나, 실제 집행에 있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간재심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중간재심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우리나라의 추후 납부 시스템과 조화 가능하며 WTO 대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중간재심의 활용 방안 역시 관련 규정과의 합치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방향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노동 및 환경 관련 재심사 규정의 보완

- EU의 경우 Regulation (EU) 2018/825를 통해 제7조(2d) 규정을 신설하여 ILO 협약 및 EU가 당사자인 환경협약에 근거하여 EU 업체의 준수 비용을 목표가격 산정 시 반영하는 등 노동 및 환경 관련 내용을 적극 규정에 반영해 오고 있었음²⁸⁶⁾
 - ILO 협약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정한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규범임
 - 따라서 ILO 협약 기준은 국제무역과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규범의 준수를 의미함
 - 각 회원국은 ILO의 협약을 자국의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협약의 기준은 회원국 자율에 따라 이루어지나, 비준된 협약은 해당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됨
 - 다자간 환경협약은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200여개의 협정, 협약 및 의정서로 특히 20여개의 협정은 구체적인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목표 가격산정 시 환경 및 국제협약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것을 명문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²⁸⁷⁾
 - 국내 생산물품의 목표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데 정상적인 시장 경쟁 환경하에서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이익과 비용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에 관련된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국내산업이 부담하였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의 이행에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환경 분야의 국제협정, 환경에 관련된 현행 법령 또는 향후 국내산업에 적용될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법령에 따른 환경

286) 정책위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검색 일자: 2022. 8. 22.

287)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1조 제3항.

관련 비용

- 실제 환경 관련 비용의 발생자료와 환경비용 지출의 원인 또는 근거가 된 법규 또는 정책 내용
- 탄소배출권 할당제도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 미세먼지·폐기물·오폐수 등 환경규제의 준수를 위한 투자
- 기타 환경 관련 부담금 등이 지출되었거나 향후 덤핑방지 조치의 적용기간(최대 5년) 동안 지출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비용

- EU 집행위원회는 Regulation (EU) 2018/825에서 사회 및 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목표가격 산정뿐 아니라, 중간재심 개시요건에도 반영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연합 산업이 더 높아진 사회 및 환경 기준으로 인해 증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중간재심을 시작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사회적 및 환경적 기준과 관련하여 수출국의 상황이 변경된 경우 중간재심을 개시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에 대한 예로 반덤핑조치 적용 국가가 EU가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 협정 및 의정서 또는 규정의 부속서 Ia에 나열된 ILO 협약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대해 중간재심의 개시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음
- EU의 해당 규정은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중간재심 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 및 환경 기준 준수 여부가 EU의 중간재심사 조사개시 시 어떻게 적용될지 그 추이 및 사례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규정이 불명확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 외국 정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중간재심사 개시요건에 대해 해당 내용을 일부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규정 명확화 및 보완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4. 미소마진에 대한 변칙적 관행 검토

- WTO 반덤핑협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미소마진의 경우 제11조 재심 규정에서 해당 규정의 배제 또는 적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음
- 특히 최근 미소마진과 관련한 사례에서 인도는 원심의 미소마진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일몰재심을 적용하지 않고 새롭게 조사를 개시하는 변칙적인 관행을 도입하였음
 - 해당 관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인도는 원심의 미소마진 적용 업체에 대해 중간재심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 조사를 개시한 것이 합법하다는 EU 법원의 판례를 예로 제시하였음
 - 2012년 EU 일반법원에서는 중국 다리미판 업체에 대해 원심에서의 미소마진으로 조사가 제외된 수출자를 중간재심사 시 현재의 조사에서 배제하더라도 새로운 조사를 개시하여 연합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
- 비록 해당 조사는 종료되었으나 인도는 WTO 반덤핑협정 제5.8조의 미소마진 적용 업체에 대한 조사 종료의 규정을 일몰재심에 적용하지 않는 관행을 이어갈 것임을 명백히 함
 - 또한 인도는 WTO 반덤핑협정에서 미소마진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를 즉시 종료하도록 하지만, 조사의 종료는 조사대상 국가 또는 특정 생산자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둘 다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 WTO 판례 또한 미소마진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견해를 보여주고 있어 해당 내용의 운영의 경우, 조사당국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2021년 기준의 WTO 재심 관련 분석 보고서상에서는 US - Corrosion-Resistant Steel 사건을 예로 들어 WTO 반덤핑협정 제5.8조의 미소마진 기준을 일몰심사 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Ukraine — Ammonium Nitrate(Russia) 사례에서는 Mexico - Beef and Rice에 대한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의 생산자를 일몰심사 시 제외하지 않은 것은 WTO 반덤핑협정 제5.8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음²⁸⁸⁾

- 따라서 향후 WTO의 판례 및 주요 국가들의 변칙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관찰 및 참고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288) WTO, 『UKRAINE - ANTI-DUMPING MEASURES ON AMMONIUM NITRATE REPORT OF THE PANEL』, 2018. 7. 20., p. 49.

참고문헌

- 고준성, 「반덤핑조사에 있어 재심사 기능의 합리적 운영 방안」, 산업연구원, 2009.
- 김석민, 「중국의 반덤핑재심규정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2006.
- 김세환, 「EU 반덤핑법상 최소부과원칙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7호, 2018.
- 김정수·서동균, 「중국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 『국제통상연구』, 제10권 제2호, 2005, pp. 45~67.
- 김종범,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마광, 「미국 반덤핑법상의 행정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월간법제』, 2006권 제12호, 2006, pp. 65~111.
- 마광·유향란, 「EU 반덤핑법상의 행정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와 무역』, 2006. 11.
- _____,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1호, 2007.
- _____,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국제법평론』, 통권 제25호, 2007.
-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관련 WTO 분쟁사례 분석』, 2010.
- _____, 『무역구제』 2021년 12월 겨울호(통권 제75호), 2021.
- _____,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 _____,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2010.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2.
- 심종선, 「해상운임 급등이 야기할 대규모 반덤핑관세 추정사태에 대비해야」, 『무역구제』, 통권 제75호, 2021.

심종선·곽동철, 「개별조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에 적용될 덤핑마진을 산정 관행 비교 연구」, 『무역구제연구』, 통권 제61호, 2021.

안덕근,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연구소, 2012.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0.

이규철,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그 절차법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2005년 7월, 2005.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인도 무역구제 조사 실무지침서」, 2019. 7.

장근호,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9.

조수정, 「EU의 개정 반덤핑규정에 대한 법적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24권 제2호, 2019.

주현수·진성백,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조사 종료재심 시 산업피해 재발 가능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공정무역연구』, 통권 제56호, 2018.

진성백, 「최근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조사 재심시 산업피해여부 주요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위원회 보고서』, 2016.

현용훈,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시 자가 제조 중간품의 제조단가 불인정 관련 연구」, 『무역연구』, 통권 60호, 2020.

미국, 「19 USC 1675」, 「19 USC 1677」, 「19 CFR 351」.

우리나라,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인도, 「관세율법」, 「반덤핑관세 시행령」.

중국, 「덤핑 및 덤핑마진 기간 재심사 규칙」, 「반덤핑조례」, 「반덤핑종료재심조사규칙」, 「산업피해조사규정」.

Council Regulation (EC) 925/2009

Council Regulation (EC) 1225/2009

Regulation (EU) 182/2011

Regulation (EU) 2016/1036

Regulation (EU) 2017/2321

Regulation (EU) 2018/825

Regulation (EU) 2018/1722

WTO 반덤핑협정

Customs Tariff(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Antidumping Duty on Dumped Articles and for Determination of Injury Rules, 1995.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Manual』 Chapter 22., 2022.

_____, 「Less-Than-Fair-Value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Selection of Respondents for Individual Examination」, 2020.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epartment Of Commerc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Compendium of Laws & Regulations』, 2018.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EPARTMENT OF COMMERCE GOVERNMENT OF INDIA, 『MANUAL of OPERATING PRACTICES for TRADE REMEDY INVESTIGATION』 2018.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2019.

European Commission, 『TRADE DEFENCE INSTRUMENTS, ANTI-DUMPING & ANTI-SUBSIDY』, 2018.

Government of India Department of Commerce, 「Trade Notice 3. 2021」, 2021.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10/2021-Customs (N.T.), 2021.

Michael O. Moore, An Econometric Analysis of U.S. Antidumping Sunset Review Decisions,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142, No.1., 2006.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commerce, 『Trade Notice No. 02/2017』, 2017.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NOTIFICATION TERMINATION ORDER Case No. ADD-OI-08/2020 Dated 7th May, 2021』, 2021.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Case No. AD-MTR-11/2021』, 2021.

WTO, 『UKRAINE - ANTI-DUMPING MEASURES ON AMMONIUM NITRATE REPORT OF THE PANEL』, 2018.

WTO, 『WTO ANALYTICAL INDEX Anti-Dumping Agreement-Article 11(Jurisprudence)』, 202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tc.go.kr/>

무역협회(KITA) 홈페이지, <https://www.kita.net/>

월간통상, <https://tongsangnews.kr/>

정책위키, <http://www.korea.kr/>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홈페이지, <https://gpi.mofcom.gov.cn/>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https://cacs.mofcom.gov.cn/>

ACCESS(미 ITA), <https://access.trade.gov/>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홈페이지, <https://taxinformation.cbic.gov.in/>

DGFT, <https://www.dgft.gov.in/>

DGTR, <https://dgtr.gov.in/>

De-minimis dumping margin: Termin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https://www.lexology.com/>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https://eur-lex.europa.eu/>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Department of Commerce), <https://commerce.gov.in/>

USITC, Budget Justification 2022, <https://www.usitc.gov/>

USITC 홈페이지, <https://www.usitc.gov/>

<https://www.taw.cornell.edu/>

<https://www.commerce.gov/>

관세연구 22-01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비교연구

발 행 2022년 10월 31일
저 자 정재호 · 노영예 · 박지우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세일포커스(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ISBN 979-11-6655-159-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